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및 내실화 방안 마련 연구

책임연구원: 송이은(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연구위원)

위촉연구원: 이지혜(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위촉연구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발 간 사

지역사회 기반의 방과후 돌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42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시작된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공공 영역으로 편입되면서 양적으로 급속한 팽창이 이루어졌으나 질적으로는 그만큼 성장하지 못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내실화와 공공성에 대한 문제는 아동에 대한 양질의 방과후 돌봄에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에 대한 돌봄이 나아가야 할 공공의 역할을 정립함에 있어서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공공성 논의는 빠질 수 없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확인된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공공성 저해 요인 중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사안들을 토대로 종사자 급여체계 확립, 예산항목 분리, 휴게시간 및 공간 보장과 적정 인력 재산정,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비롯하여 운영비 현실화와 급식, 채용, 회계 등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투명성을 강조하고 ‘아동’에 대한 양질의 돌봄을 평가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평가체계 개편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개선을 위해서는 호봉제 실시를 비롯한 급여 체계 마련을 토대로 한 사회복지 시설 간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간의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더해 허가제를 통해 진입장벽을 높이고 공공운영 모델 적용을 확산해 가야 함을 제안했습니다. 인력과 급식은 자치구별 센터 운영 등을 통한 공공급식센터 운영, 공공인력풀 관리 등을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 지역아동센터가 지역기반 아동 돌봄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이 연구를 위해 귀한 자문을 해주신 여러 전문가 여러분들과 서울시 지원단, 인터뷰에 응해주신 관련 종사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연구를 수행해주신 연구자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이 연구가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서울’을 만들어가기 위한 작은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7년 7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강경희

Contents

I 서론_0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3
2.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8

II 돌봄과 공공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_ 11

1. 돌봄의 공공성13
2. 방과후 돌봄의 해외 사례 및 시사점22
3. 국내 방과후 돌봄의 현황29
4. 지역아동센터 실태 및 운영 지원 현황41

III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공공성 강화 및 내실화 방안 조사 결과_ 67

1. 설문조사69
2. 초점집단면접(FGI)108
3. 소결139

IV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공공성 강화 및 내실화를 위한 정책방향_ 141

1.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장단기 방향 모색145
2. 지역아동센터 운영 안정화와 기능 재정립150
3. 종사자 임금 체계 마련과 인력 수준 제고153
4. 지역아동센터 평가 체계 개편160
5. 기타163

참고문헌 _ 169

Abstract _ 174

부록 _ 177

표 목차

표 II-1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 주 대상과 연령	32
표 II-2	부처별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 차이	33
표 II-3	지자체 별도지원금 지원내역	42
표 II-4	급식비 지원 현황	42
표 II-5	종사자 급여 현황	43
표 II-6	기타 인력 현황	43
표 II-7	연도별 토요일, 공휴일 및 야간보호 운영여부	44
표 II-8	시도별 지자체 별도지원금 지원현황	46
표 II-9	지자체 별도지원금 지원내역	46
표 II-10	이용아동 설문조사 조사내용	48
표 II-11	센터장 설문조사 조사내용	49
표 II-12	센터장 사례조사 조사내용	49
표 II-13	추진체계_보건복지부, 서울시, 자치구의 기능 및 역할	51
표 II-14	보건복지부,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 지원 여부	52
표 II-15	세부사업별 지원내역	53
표 II-16	아동 정원 및 법정종사자 수에 따른 지원금	54
표 II-17	서울시 국비 미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항	56
표 II-18	운영비 사용기준	57
표 II-19	지역아동센터 진입·심화평가 배점	59
표 II-20	지역아동센터 표준점검지표	61
표 II-21	지역아동센터 중간점검지표	62
표 II-22	지역아동센터 결산과정	65
표 II-23	감사종류	66
표 III-1	설문조사 주요 내용	70
표 III-2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71

Contents

표 III-3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	74
표 III-4	운영의 내실화와 공공성 강화 상관관계	75
표 III-5	공공성 강화의 주요 요인(1순위, 2순위)	76
표 III-6	운영 공공성 평가의 적절성_보편성	77
표 III-7	운영 공공성 평가의 적절성_회계의 투명성	78
표 III-8	운영 공공성 평가의 적절성_정보의 공개성	79
표 III-9	운영 공공성 평가의 적절성_참여성	80
표 III-10	운영 공공성 평가의 적절성_사회적 책무성	81
표 III-11	센터 운영상의 어려운 정도	82
표 III-12	센터 운영상의 어려움(1,2순위)	83
표 III-13	추가 재정지원이 필요한 항목(1,2순위)	83
표 III-14	센터 운영에서 정부의 역할_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1,2순위)	84
표 III-15	2016년도 총 예산	85
표 III-16	예산항목 개편의 필요성	85
표 III-17	예산항목 개선의 필요성_항목(복수응답)	86
표 III-18	급식비 항목 개선의 필요성	86
표 III-19	정부 통제와 센터의 신축적인 예산 사용의 수준	87
표 III-20	실제운영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의 체계적 운영 정도	88
표 III-21	지역아동센터의 체계적 운영_정기시행	89
표 III-22	지역아동센터의 체계적 운영_재정 투명성	90
표 III-23	지역아동센터의 체계적 운영_서비스 질적 향상 및 운영 내실화에 영향	91
표 III-24	운영의 공공성 강화에 필요한 사항	92
표 III-25	운영위원회 개최여부(반기별 1회 이상)	93
표 III-26	운영위원회 논의사항	94
표 III-27	회의록 기록여부	95
표 III-28	운영위원회 회의 진행 개선사항	96
표 III-29	예·결산 환류 정도	97

표 III-30	지도점검 및 평가결과에 대한 추가관리 필요성	97
표 III-31	업무대비 인력수준의 적절성	98
표 III-32	8시간이상 상근규정 준수 유무	98
표 III-33	아동복지교사 파견의 도움 정도	99
표 III-34	종사자 업무 대비 급여 수준의 적절성	99
표 III-35	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필요사항(1,2순위)	100
표 III-36	종사자 근무지속성 강화를 위한 필요사항(1,2순위)	101
표 III-37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	101
표 III-38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_제도	101
표 III-39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_급여제도 개선방향	102
표 III-40	프로그램 제공 시 어려운 점(1,2순위)	102
표 III-41	양질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정부의 역할_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	103
표 III-42	양질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개선사항	104
표 III-43	지역사회 연계활동의 필요성	104
표 III-44	지역사회 연계활동의 지속성 정도	105
표 III-45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_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	105
표 III-46	기타 의견	106
표 III-47	지역아동센터장 특성	108
표 III-48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특성	108
표 IV-1	소관 부처별 임금실태(전국, 2013)	154
표 IV-2	이용시설 임금실태(노동부, 2016)	155
표 IV-3	사회복지영역 보수수준 및 급여유형 관련법령	156
표 IV-4	종합사회복지관 규모별 운영비 기준액	157
표 IV-5	아동복지법 시행령 상 필수 인력 규정	158
표 IV-6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전담인력 규정	158
표 IV-7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상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159

그림 목차

■ 그림 II-1 ■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강화와 내실화(안)	40
■ 그림 IV-1 ■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및 내실화 정책 목표	145
■ 그림 IV-2 ■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및 내실화를 위한 단기 방향	146
■ 그림 IV-3 ■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및 내실화를 위한 장기 방향	148
■ 그림 IV-4 ■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및 내실화 구성 요인	164
■ 그림 IV-5 ■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홍보 광고	166

연구요약

□ 연구배경 및 목적

- 지역아동센터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소규모 가정형태의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는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비용보조),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함 ((2016.07.기준 지역아동센터 420여개소, 1,025여 명 종사, 11,487여명 아동 이용)
- 지역기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아동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문제, 시설 간 서비스 질 편차 등의 질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 개인이나 단체의 성격을 가진 주체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팽창되는 속도에 비해 운영상의 공공성이 취약함
 - 2004년 895개소(이용아동 23,346명) -> 2005년 1,709개소(이용아동 43,749명) -> 2013년에는 4,081개소(이용아동 109,066명)로 지속적으로 양적인 성장을 해왔음
 - 그러나 질적 성장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상황임. 특히 열악한 종사자 처우, 잦은 종사자들의 이직, 투명한 회계 관리 부족 등이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됨
- 이에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됨. 더 나아가 돌봄권 보장을 통한 아동 영역의 보편적 복지 실현의 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함

□ 연구방법 및 조사결과

-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체 서울시 센터장 422명을 대상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317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제시됨. 이와 함께 초점집단 면접을 통해 센터장과 생활복지사 그리고 공무원으로부터 각각의 공공성, 내실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이를 기반으로 현재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공공성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 개선의 방향성을 수립함

-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구립 운영 확대 방안 마련, 특성별 센터 운영, 급여체계 개선, 제도화 및 매뉴얼화, 평가체계 개편 등이 향후 나아가야 할 지역아동센터의 방향인 것으로 나타남
- 센터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운영주체(개인, 법인, 구립 등)와 센터규모(이용 아동 수)별 응답에는 큰 차이가 없음.
 - 공공성에 대한 조사 결과, 대다수의 센터장은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공성 강화는 내실화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응답함. 그리고 사회적인 책무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중요한 공공성 강화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음. 사회적 책무성을 위해서 종사자 고용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세입세출 관리를 전산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임
 - 지역아동센터 운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조사 결과, 센터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센터장이 다수를 차지하며 가장 큰 원인은 재정 상황임. 추가재정이 필요한 항목은 주로 종사자 인건비와 임대료 부분으로 나타남
 - 필요한 지원에 대한 조사 결과, 지자체는 종사자 처우개선과 충분한 예산 지원을 해야 하며 예산 항목 개편에 대한 요구가 높음. 특히 종사자 인건비 항목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임. 종사자 급여에 대한 호봉제 실시 요구는 기본급 인상에 대한 요구보다 높게 나타남
 - 서울시의 현장점검과 보건복지부의 평가 그리고 결산 및 감사는 대부분 센터들에서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재정 투명성에 도움이 가장 많이 되는 것은 결산(정산)인 것으로 나타남. 예·결산에 대한 피드백은 보통 수준에서 이루어지며 센터장들은 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음
 - 인력 충원의 필요성 역시 요구도가 높음. 종사자 전문성을 위해서는 행정지원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경력을 포괄적으로 인정해야 함. 종사자들의 근무지속성을 강화하려면 급여를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프로그램 제공시 어려

움으로까지 이어지는데 담당자 업무가 과다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한 센터장이 다수임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국 프로그램 질 향상, 운영의 공공성 확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사자에 대한 급여 인상과 행정업무 분리 혹은 감소, 재정의 투명한 운영 및 관리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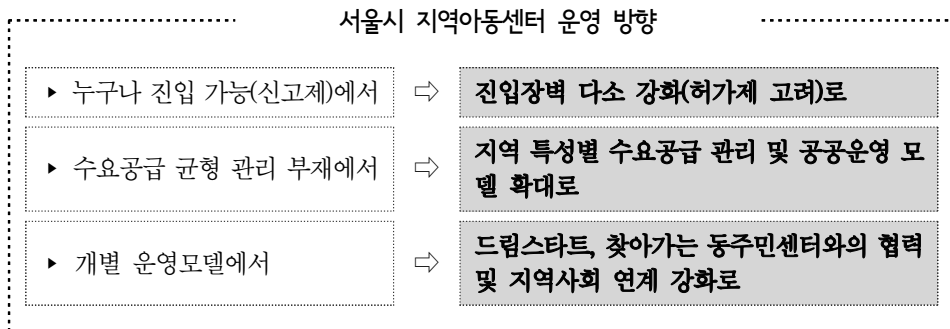
○ 센터장·종사자 FGI 결과 주요 쟁점

- ▶ 인건비와 임대료 문제 / 공간과 임대료 문제 / 적정 인력 수 확보(인력)
- ▶ 구립 전환에 대한 의견과 법인 운영 장단점
- ▶ 급식 투명성 확보 문제
- ▶ 사명감과 긍지 문제 / 수평적인 관계와 투명한 채용
- ▶ 현장 중심의 평가 체계 구축 / 평가자 교육 및 지원단의 지원 강화
- ▶ 학교, 지역사회 연계 및 협의체 활성화
- ▶ 저소득층 아동 비율과 일반 아동 포함 문제 / 센터 기능 다양화

공간문제 · 협소한 공간과 임대료 문제, 노래방 등 주변 환경 규제로 임대료 및 임대공간 유지 어려움	➡	개선방안 · 운영비 지원과 기타 지원금에 대한 임대료 사용 규제 완화, 자치구 차원에서 공간 연계 서비스 제공, 아동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학교, 보건소, 지역기관) 개방을 고려할 수 있음
종사자 처우 문제 · 급여수준, 경력인정, 근로시간 및 휴가, 프로그램 내용상 이질성 등의 문제가 있음	➡	개선방안 · 경력(전문성) 인정과 호봉제 실시, 연령별, 대상별 특화 프로그램과 센터 특성화 강화, 인력 충원과 충원되는 지원되는 임시인력에 대한 전문성 검증 강화, 생활복지사 채용 시 실질적인 공개채용, 인력 운영의 투명성을 통해 종사자들의 갈등과 불만 해소 등이 필요함
평가체계 비효율 문제 · 중복된 행정 평가 과다, 현장 실태 반영 미흡 등의 문제가 있음	➡	개선방안 · 정성평가를 도입과 평가체계의 참여성·투명성 강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 센터장 뿐만 아니라 아동들을 현장에서 돌보는 생활복지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중앙정부, 지자체의 중복되는 행정서류 제출과 정량평가를 축소하고 정성평가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음

□ 정책방안

- 서울시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내실화를 마련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 방향과 개선방안을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종사자 처우, 구립 운영모델의 확산 등을 제안하였음
- 운영 전반 사항을 매뉴얼화 혹은 시스템화 해야 함. 운영 관련 사항은 인력채용, 인력풀 관리, 종사자 처우, 관리, 프로그램 등을 모두 포함함. 그리고 이를 통한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돌봄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함. 구에서 주도적으로 설립하여서 안정적으로 돌봄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음
 - 기존의 개인 시설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충분히 고려하면서 새로운 공공 모델을 지역에 맞게 적용해야 함. 주민센터나 복지관 그리고 학교와 연계하여 공간이나 유희자원을 활용하는 모델을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지역아동센터가 당면한 공간문제(비용상, 면적상)의 해결책이 되어줄 수 있음. 주민센터 연계형은 마을 공동체 사업과 결합하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종사자 이직률 감소 노력을 위해 다각적인 접근을 취해야 함. 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의 사회적인 위치를 제고하고, 종사자 처우와 스트레스 그리고 관련 현상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임. 그리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아동 방과후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특히, 공간적인 환경과 프로그램 그리고

또래환경을 복합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함

- 센터장과 생활복지사의 급여를 여타 사회복지시설 보수지급 기준표에 맞추는 등의 노력을 통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간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간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음. 또한, 직무분석을 통해 다양한 업무와 돌보는 아동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돌봄 인력 기준 적정수를 산정해야 함

○ 아동에게 매우 중요한 급식 관련 공공성은 지금 현재 일부 자치구의 공공급식 시범사업처럼 식재료 공급 등을 공적인 루트를 통하거나 유통망 혹은 현금지급이 아닌 연계방식으로 전환하는 제도 마련을 제안함

○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지도점검 체계의 현장중심 개편이 필요함. 현재의 현장점검 담당공무원에 대한 의존을 보완하기 위해 평가단 구성을 고려하고 이와 함께 지도점검 단계 이전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강화함. 전문성을 지닌 서울시지원단을 확장하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함

○ 기타

- 채용, 자치구 인력풀관리, 급식관리 보수체계 전반적으로 투명성과 형평성 그리고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함. 구립운영모델이나 지역사회 지원 연계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현장점검이나 예산 등에 주민참여 혹은 아동인지적인 영향평가를 고려해볼 수 있음
- 생활복지사들에게는 종사자들에 대한 호칭을 비롯하여 사회적인 인식과 대우 그리고 수평적인 센터 내의 관계, 종사자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등이 아동 돌봄 업무를 지속시키는 추동력이 되기도 하고 업무를 중단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평등하고 공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체계적인 매뉴얼을 보급하여 프로그램의 보편성과 참여성을 확보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종사자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이는 종사자의 전문성 및 종사자 처우 개선과 함께 맞물린 사안인 만큼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함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아동과 관련된 사회 문제들은 여성 경제활동참여, 성평등 등의 주요 사회 의제들과도 긴밀하게 얽혀 있다. 또한, 아동은 보호와 훈육의 대상인 동시에 권리와 참여를 보장 받아야 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차별화되는 대상이기도 하다. 즉, 아동은 개인 차원에서는 전 생애주기에서 불평등이 시작되는 시기이며, 사회 차원에서는 가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저출산 그리고 아동의 인권 보장과 연결되는 복합적인 정책 대상이 된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학령기 아동의 보호, 여성노동력 활동 및 저출산 문제 해결, 사교육비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방과후 돌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서영숙·박진옥·서혜진, 2009).

서울시는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서울시 추진을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삶¹⁾, 건강한 삶²⁾, 안전한 삶³⁾, 함께하는 삶⁴⁾을 중심으로 하는 4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서울시, 2016). 아동 돌봄은 해당 내용들을 아우르는 동시에 아동 대상 정책 지원의

-
- 1) 아동기 역량강화,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실현, 아동의 참여권 보장, 놀이·여가 권리 보장
 - 2) 생활공간 기반 건강관리체계 마련, 발달주기별 건강관리체계 내실화
 - 3) 생활공간 안전 확보, 사회 안전 위협요인 대응체계 구축, 아동안전기반 구축
 - 4) 아동보호 무차별 원칙 실현, 보호·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핵심 분야 중 하나이다. 아동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서는 아동 돌봄 특히 방과후 나홀로 아동들에 대한 돌봄의 사회적인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

아동에 대한 돌봄 특히 방과후 돌봄은 전통적으로 주로 가족관계 속에서 여성들에 의한 무급노동으로 수행되어 오면서 사회정책에서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던 영역이었다. 하지만 후기 산업사회의 가족과 노동시장을 둘러싼 변화 속에서 돌봄은 복지국가 논의의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저출산과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그리고 여성 고용률의 증가 등으로 그 동안 가족이 부담해오던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문제가 부각되게 된 것이다. 이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게 되었고 새로운 사회 위험에 대한 대응은 복지국가 재편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차원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Taylor-Gooby, 2004; 윤승희, 2012 재인용). 특히 이는 노동시장의 고용 불안정, 서비스 경제 확대에 따른 생산성 감소와 저임금 근로 등은 자녀를 둔 근로자 가구의 빈곤 문제를 야기하였다. 그리고 이 또한 국가의 아동 돌봄 개입 정당성을 뒷받침한 강력한 근거가 되었다(류연규, 2013). 즉 현대사회에서 아동 돌봄은 사회 공동의 책임이자 의무이며, 이러한 이유에서 아동 돌봄은 공공성을 지니고 강화되어야만 한다(김선혜, 2015). 결국 돌봄권에 대한 지원은 특정 개인이나 그룹의 이슈가 아니며 보편적인 이슈로써 전반적인 제도와 삶의 개선을 염두에 두고 나아가야 하는 문제이다(장수정, 2010).

방과후 돌봄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관련 복지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관련 시설을 지원하거나 혹은 직접 운영하면서 다양한 돌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2016년 8월 기준 15,700여명이며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외에도 생활시설, 아동그룹홈, 아동학대예방센터, 가정위탁자립지원 등 총 549개소의 아동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다⁵⁾. 이 중에서 특히, 지역아동센터⁶⁾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소규모 가정형태의 방과

5) <http://www.sosc.or.kr/bbs/index2.php>

6) 서울시의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비용보조),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2016년 12월말 기준 서울시에서는 422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1,018명이 이에 종사하고 11,487명의 아동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음(2017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계획)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됨(「아동복지법」 제16조)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내 접근성이 용이하며, 교육과 복지의 통합적 접근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 2012). 이러한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 권리와 안전 보호, 급식 지원,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학교 부적응 해소, 일상생활지도,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를 돕고(교육적인 기능), 아동의 심리, 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 기능 강화를 도모하며(정서적인 기능), 문화체험 및 다양한 문화 경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문화서비스 제공의 기능)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자원 발굴 및 지원강화, 지역사회 내 아동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지역아동센터운영매뉴얼, 2014).

지역기반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 하는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아동 돌봄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시설임에도 지역아동센터 내부의 종사자 처우 문제, 시설 간 서비스 질 편차 등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성효순, 2016).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결과적으로 아동의 성장 환경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최근의 한 국내 연구에 따르면 아동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회정책은 다양한 진로 보장 환경 조성, 여가 보장, 가족관계의 질적 변화 등과 함께 아동을 둘러싼 사회 전반에 걸친 대대적 변화이다(이봉주·김선숙·안재진·유조안·유민상·최창용·이주연·김윤지·박호준, 2016). 아동의 방과후 돌봄 공백을 지역사회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역시 아동이 처한 중요한 환경적 요인 중 하나이며 돌봄에 대한 영향력 측면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현재 취학아동 돌봄의 한 축인 지역아동센터의 중대한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는 지점이 바로 팽창되는 속도에 비해 운영 주체의 공공성이 취약하다는 점이다(이태수, 2012). 법인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의 성격을 가진 주체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특성으로 인해 지역아동센터는 공공성과 지속성, 투명성 측면에서 상당히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아동의 돌봄을 사회적 책임의 원칙 하에서 풀어가려 할

1항 11호)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터는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매년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및 실시 결과를 시군구청장에게 매년 3월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함

때 지역아동센터 운영주체의 공공성 부재가 이를 어떻게 발목을 잡을지 심각히 검토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이태수, 2012) 지역기반 돌봄의 대표적인 시설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은 매우 중요하다.

한편, 방과후 돌봄에 대한 공백은 취약계층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가구, 특히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과 맞벌이가정 등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현상에 비추어 본다면, 현재까지 선별적으로 지원되어왔던 정부의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과 방식을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전환해 나아가야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동에 대한 돌봄노동을 제도적으로 사회화한 OECD 국가들에서 이미 여성의 고용률이 증가되었다는 연구 결과(장지연, 2010)를 고려해 볼 때, 일·가정 양립과 아동의 보호권, 돌봄권, 교육권 등 아동의 권리 이행의 효과를 동시에 거두기 위해서 초등학생에 대한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지만(김지경·김균희, 2013)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감소는 사회서비스 대상의 보편성과 질의 저하를 야기한다(Haque, 2001). 그동안 방과후 돌봄에 대한 정책효과는 미흡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접근성의 제한, 시장서비스 이용,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 등과 함께 서비스의 대상이 저소득 및 취약계층 등으로 한정되었다는 점이 주요 원인이다(송혜림·조영희·정영금·고선강·김유경, 2010). 장기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역기반 방과후 돌봄 대상을 모든 아동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보편적 돌봄⁷⁾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욱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이를 강화시키면서 나아가야만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전국적으로 2004년 895개소(이용아동 23,346명)였던 것이 2005년에는 정부지원으로 1,709개소(이용아동 43,749명)로 증가하였고 2013년에는 4,081개소(이용아동 109,066명)로 급증하면서 지속적인 양적인 성장

7) 돌봄의 공공성을 담보한다는 것은 대상의 보편성과 질이 담보되는 서비스 제공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됨. 대상의 보편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비록 공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공공성을 담보했다고 할 수는 없음.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그 대상이 저소득층으로 제한된다면 이러한 공적 서비스가 공공성을 담보했다고 보기 어려움. 이러한 공공성 담보의 3가지 원칙은 첫째, 현금지원대상의 보편성을 담보해야하고, 둘째, 소득계층과 관계없이 누구나 재정적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담보(돌봄수급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되어야 함(윤홍식, 2012)

을 이뤄왔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전문인력의 부족, 운영비와 프로그램의 내용과 같은 센터 간의 질적인 격차 그리고 프로그램 효과성 등에 있어서 전문성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의 지역아동센터 역할이나 위상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지 못하며, 공공성을 담보한 지역 기반의 아동 돌봄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상황이다(류무순, 2013). 지역아동센터는 가정과 밀접한 위치이며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만큼 지역아동센터 중심의 지역 사회 기반 방과후 돌봄에 대한 질적 성장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⁸⁾. 이를 위해 지역기반 돌봄 기능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시설인 서울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관련 실태를 조사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강화와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종사자 처우, 프로그램 그리고 재정부터 전달체계까지 지역아동센터 전반에 대한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연구의 핵심 고려 사항으로 한다.

8) 서울시의 지역아동센터는 2016년말 기준으로 422개소이며 시비 지원은 2005년 96개소에서 2006년 97개소, 2007년 180개소, 2008년 214개소, 2009년 279개소, 2010년 296개소, 2011년 323개소 2012년 349개소, 2013년 382개소 그리고 2017년 415개소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옴

2.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

1) 연구 방법

이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문헌을 검토한다. 기존의 서울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현황 및 문제점을 공급 측면에서 검토한다. 그리고 공급에 있어서 운영의 문제점들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공공성 강화 방안 논의를 검토한다. 특히, 서울시 내부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아동센터 현황과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례들을 검토한다.

둘째,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한다. 이러한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실태 파악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 시기는 2017년 3월이며, 조사 대상은 422개의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센터 센터장이다. 전수조사를 목표로 하되 최종 설문 회수는 설문 대상자의 2/3 이상을 확보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설문조사에서는 센터의 규모나, 특수지역아동센터 여부, 토요일운영 여부 등에 대한 구분 없이 서울시의 모든 센터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설문조사 내용은 공공성의 필요성과 개념, 재정 지원을 포함한 운영에 관한 사항 전반, 종사자 처우, 근무환경,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셋째, 초점집단 인터뷰(FGI)를 실시한다. 서울시 지역아동센터의 주요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공립과 민간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운영 실태를 검토하고 여기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및 운영 효율화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종사자의 처우 문제, 역할 분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운영 효율화와 관련된 주요 요인들을 비교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및 내실화 방안 마련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다. 아동, 복지, 가족 정책 분야의 정책·행정·학술 전문가들로부터 연구내용 및 체계, 주요 지표,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와 내실화 방안 마련 내용의 적절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위해 착수 자문회의, 중간평가, 최종평가를 기본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관련 자문을 추가적으로 진행한다.

2) 연구 추진체계

본 연구의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단 계		주요 내용		
1단계	계 획 설 계	▶연구목적, 내용, 추진방법 등 계획 수립	- 연구목적, 내용, 추진방법 등 계획 수립	연구방향 설정 및 주요연구내용 도출
		▶연구방향 및 설계 적절성 및 타당성 검토	- 학계 전문가, 현장 활동가, 서울시 담당자, 재단 내부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 연구방향 및 설계 적절성, 연구방법 타당성, 연구내용의 적절성 등	
2단계	자 료 분 석	▶관련 정책 검토	- 관련 정책 검토를 통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안 모색	정책 현황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 특성 분석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및 내실화 주요 요인 파악	-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 및 특성 파악	
3단계	조 사 연 구	▶조사내용 구성 및 개별문항 자문	- 조사내용 구성 및 개별문항 등 자문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및 내실화 강화를 위한 정책적 필요사항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및 내실화 방안 마련 조사	-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설문 조사 - 초점집단면접(FGI) 조사	
4단계	정 책 방 안 도 출	▶정책 방향성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	- 정책 방향성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및 내실화 방안 도출
		▶정책방안 및 추진과제 발굴	- 정책방안 및 추진과제 발굴	
5단계	결 과 보 고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및 내실화 방안 마련 연구」 제작 및 발간	- 연구보고서 작성	최종 연구보고서 제출

II

돌봄과 공공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돌봄의 공공성
2. 방과후 돌봄의 해외 사례 및 시사점
3. 국내 방과후 돌봄의 현황
4. 지역아동센터 실태 및 운영 지원 현황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I

돌봄과 공공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돌봄의 공공성

사회복지 기관과 관련한 공공성은 기관 운영의 공공성, 기능의 공공성, 돌봄 수행 결과의 공공성으로 구분 가능하다. 특히, 운영의 공공성은 기능과 결과까지 연결되며 운영 전반의 내실화와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1) 돌봄의 사회화와 국가의 역할

돌봄은 다른 사회제도에 비해 개인의 욕구를 해결하는 영역으로 여겨져 왔으나 현대사회로 올수록 보편적인 시민의 기본권 실현으로 확장되어 왔다. 돌봄이 공익 추구의 속성을 지녔다는 사회적 합의는 돌봄이 사회복지 영역으로 편입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에 따라 돌봄은 국가차원에서 관련 복지를 제공하고 재정을 지원한다. 이는 돌봄의 사회화로 이해할 수 있으며 시민의 기본권으로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돌봄의 사회화를 통해 사회적 연대감 혹은 사회통합을 달성하게 된다(정은수·임효연, 2017). 보편적인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다른 사회제도와 비교하여 돌봄은 상대적으로 개개인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것을 보편적인 시민의 기본권 실현이라는 목적으로 확장시켜 일반적으로 개별적인 욕구에 따라 규정되고 제공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회연대성 원칙에 기반을 두어 보편적인 시민의 기본권의 실현으로 확장된 것이 바로 돌봄을 사회화 한 것이다. 이는 시민의 기본권으로서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며 궁극적

으로 이를 통해 사회적 연대감 또는 사회적 통합을 달성하도록 한다(정은수·임효연, 2017). 돌봄이 사회화 되면서 개인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며 국가가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된다(길은배, 2016). 이는 핵가족화, 이혼·별거 등에 따른 가정해체, 다양한 배경을 갖는 가족의 등장, 가족가치관의 변화, 가족 구성원의 유대감 약화 등으로 가족 내에서 수행되어온 자녀양육 및 돌봄 기능이 약화되자(김정원·김유정, 2006), 더 이상 자녀양육의 문제를 개별 가정의 책임으로 국한시킬 수 없으며 국가와 사회가 자녀양육과 돌봄에 개입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확대된 데에 따른 것이다. 즉 사회·경제 구조의 거시적 변화에 영향을 받은 가족 및 구성원들의 변화와 미래사회의 인적자본인 아동의 양육과 보호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이 결합되면서 자녀양육지원정책에서의 양육과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김지경·김균희, 2013).

특히 아동 돌봄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인한 가족의 돌봄 기능 약화 또는 돌봄공백(care deficit)이다. 아울러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 가운데 저출산 고령화 위험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여성과 아동의 삶을 넘어 전체 국민에게 중요한 복지정책 기제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주장은 돌봄서비스가 국가의 보편적 복지로 자리 잡아야 함을 암시하며, 동시에 공공성 강화에 대한 정당성을 나타낸다(김선훈, 2015). 아동 돌봄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으로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인한 가족의 돌봄 기능 약화 또는 돌봄 공백(care deficit)이 가장 자주 언급되지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미래 노동력에 대한 투자 중요성 또한 아동 돌봄에 대한 국가 개입의 이유로서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선진산업국가에서 나타난 저출산 지속현상과 이와 관련한 복지국가의 부양 부담 폭증 역시 아동 돌봄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한 요인이다(류연규, 2013). 결국 돌봄이 사회화 되었다는 것은 돌봄이라는 문제는 개인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며 국가가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된다(정은수·임효연, 2017).

2) 공공성과 돌봄의 공공성

공공성은 논쟁적 개념이다(홍성태, 2008: 73)¹⁾. 서양의 경우를 보더라도 공공성은 각

시대와 구성원의 요구 및 사상가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되고(최태연, 2008: 26) 철학에서의 논의 역시 공공성에 대한 규정은 매우 다양하다. 현대철학으로 논의를 한정지어도, 롤스(J. Rawls)의 자유주의적 공공성, 샌들(M. Sandel)의 공동체주의적 공공성, 하버마스(J. Habermas)의 의사소통행위적 공공성 등이 존재한다(최태연, 2008: 37-41). 공공성의 사전적 의미는 웹스터 사전을 준거로 살펴보면 다음 6가지의 내용을 포괄한다(임의영, 2003: 27).

-
- ①-1. 모든 사람 내지 국가 모든 영역의, 또는 이와 관련된 혹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의 혹은 정부와 관련된
 - ①-2. 공동체 내지 국가의, 또는 이와 관련된 혹은, 이에 봉사하는
 - ②-1. 인류 일반의 내지는 인류 일반에 관련된, 보편적인
 - ②-2. 일반적인, 대중적인
 - ③ 사적인 일과는 대립되는 것으로서 회사 혹은 공동체의 이익에 관련된
 - ④ 일반적인 혹은 국가적인 복지에 헌신하는
 - ⑤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접근 가능한 혹은 공유된
 - ⑥-1. 일반적인 시야에 노출된
 - ⑥-2. 개방된, 잘 알려진, 현저한
 - ⑥-3 인지할 수 있는
-

이러한 ‘공공성’은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사적 이해를 넘어 형성되는 국가 혹은 사회 공유의 특성을 의미한다.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는 공공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한계는 시대적 맥락에 따라 언제든지 확장되고 축소될 수 있으며 그 이면에 잠복하는 공공성

-
- 1) public의 어원은 라틴어 ‘pubes’로 개인의 행동이 타인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나 스스로의 입장에서 벗어나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인 성숙성을 의미. 이에 반해 private은 박탈을 의미하는 라틴어 privatus에서 유래함. 박탈은 부족 혹은 모자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상태를 의미(임의영, 2003: 26).

: public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바의 사회적 동물(zoon politikon)을 내포함.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스스로 고양되기 위해서는 polis안에서 생활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와 동일한 맥락임. 영어로 public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기록에 의하면 이는 ‘사회 내의 공동선’을 의미함. 그리고 17세기 말이 지나면서 public과 private은 오늘날 사용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변화함. private은 어떤 사람의 가족과 친구로 한정되는 보호된 생활영역을 의미한 반면, public은 여러 사람에게 개방된 것을 의미함(임의영, 2003: 26).

: public 개념은 공동선, 사생활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많은 사람들과 관련된 것이라는 의미를 지님

개념 역시 특정한 실체로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합의가 전제될 경우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은재호, 2008).

공공성이라 하면 공익을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공익은 공공성의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공익은 다수의 이익이든 소수의 이익이든 경제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가치 함축적 개념일 때 공공성은 가치 함축적 모습은 물론 가치중립적 모습도 지니고 있다. 공익 이론가들 중에는 공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은 공공성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공공성은 공익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이다(백완기, 2007).

공공성의 이러한 속성 때문에 공공성은 공공정책의 핵심적인 특성으로 여겨지고 있다. 공공정책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사회공동체 자체의 보존과 발전이며, 공익 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즉 공익의 증대를 위하여 집단적인 사회적 과정을 통해 공공정책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위목적의 기준에서 공공성은 서비스의 실질적인 내용 구성이 공익에 합치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즉 사회서비스 영역들이 공공의 이익과 얼마나 일치하는가, 얼마나 실현하는가, 행위의 결과로서 성과가 그러한 공공의 이익실현을 대변하는가가 공공성의 확보를 보여주는 중요한 측면이 된다(양성욱·노연희, 2012).

1990년대까지도 한국에서 공공성이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990년대 초까지 공공성은 대체로 ‘방송공공성’이라는 제한적 용어로 사용되었는데 즉 방송이나 언론의 공공성을 민주주의라는 맥락에서 논하였고, 김영삼 정부 등장 이후, 규제완화와 시장개방이 추진되면서, 공기업의 사영화에 대항하는 맥락에서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강화되었다(홍성태, 2008: 75). 국내에서 공공성이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위기 이후이다.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에 따라 국가축소와 시장 확대가 추진되면서 민주주의의 위기와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었는데 공공부문의 민영화 논란뿐만 아니라 노동, 교육, 주거, 환경, 언론 등에 이르는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공공성의 위기’라는 논제 아래 논쟁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홍성태, 2012: 159-160).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한국에서의 공공성 논의는 주로 규범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성은 보통 목적어로 사용되며, 실현, 확보, 강화해야할 공공의 가치로 인

식된다(홍성태, 2012: 160). 예를 들어 신진욱(2007)은 공공성을 논하며 책임성과 민주적 통제성, 연대와 정의, 공동체 의식과 참여, 개발과 공개성, 세대 간 연대와 책임을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공적인 것은 공공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즉, 공적 관계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공공성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공성은 그 자체로 ‘공동체의 조화’를 내용으로 하는 이념이다. 조화를 이루기 위한 조건은 개인이나 소수집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토론과 설득을 통한 ‘합의’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는 공공성 실현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 따라서 공동체의 조화로서 공공성의 이념은 윤리적으로 ‘사회정의’ 혹은 ‘공익’을 의미한다(임의영, 2003). 공공성 개념은 그 자체로 주어진 특정 상황과 맥락에서 공동체의 집단적 합의를 채워 넣는 용기이며, 정치적 투쟁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은재호, 2008). 공동체적인 삶에 참여함으로써 공공성이 실현되며(공동적 공공성), 공공성은 “공동체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구현하고자 하는 평등주의적 가치”로 정의할 수 있다(임의영, 2009, 2010).

이렇게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유지되기 위해 공공성은 필수적으로 요청되는데 특히 공동체주의는 가치의 중립성을 거부하고 개인을 넘어서는 공동체의 특정한 도덕적 가치가 개인에게 내면화됨을 주장하면서 개인의 사익 추구가 아니라 공동체 자체의 이익인 공익(公益)이 공공성의 내용을 구성한다(김동노, 2014). 따라서 돌봄의 공공성 역시 주요 요인은 ① 공익(공민주의) ② 공동체 가치실현(평등주의), ③ 참여(민주주의)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돌봄의 공공성은 공동체성, 지역기반, 지역공동체, 공익 등의 요소가 필수적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맞벌이 가구와 같은 일반 가구의 아동 돌봄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있다(김영란·황정임, 2011). 아동 돌봄에서 ‘공공성’이 갖는 의미는 2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아동 돌봄’ 자체가 공공성을 띠는 의미로서 개인적이거나 사사롭지(privateness) 않으며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로서의 ‘공공성’(publicness)의 의미일 수 있다(안현미·김송이, 2011). 다른 한편으로는 아동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동 돌봄 서비스가 시장에서 사적으로 공급되고 소비되는 재화 혹은 서비스(private goods)가 아닌 공공재(public

goods)의 속성이 있으며 공공재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공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재화(서비스)라는 의미로 사용 가능하다(류연규, 2013). 돌봄 수요가 있는 모든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돌봄의 공공성 관점에서 볼 때 서울시 돌봄 지원체계는 보편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다. 법정저소득층 아동을 포함하여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우선 지원은 필요하나, 급증하는 일반 가구의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용 대상자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명목상이 아닌 실질적 수준에서 일반 가구 아동 가운데 돌봄 욕구가 큰 아동들을 적극 발굴하고 이들에게 공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에 변화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박애리 외, 2012). 돌봄의 공공성 강화는 공적 서비스 공급의 확대와 더불어 질적 개선이 동반될 필요가 있는데 서울시 역시 아동 돌봄에 대한 공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며, 특히 비저소득 일반 가구 아동의 돌봄공백이 상당하고 이들을 위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돌봄서비스 공급 확대가 시급한 시점인 것은 분명하다(박애리 외, 2012).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같은 돌봄 수요계층이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돌봄 욕구가 있고 사적인 돌봄 자원이 부족한 아동에게 적절한 방과후 돌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공립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을 기본적으로는 일반아동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돌봄서비스의 공급확대가 요구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확대 적용은 저소득 아동과 같은 취약계층의 보호가 우선적으로 담보되는 상황 속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현재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를 민간지역아동센터가 담당해온 점을 고려하여 돌봄수요 총량의 증가를 통해 민간지역아동센터의 확대와 안정적 운영지원을 통한 공공성 확보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시설의 설치와 선정에 있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뒷받침된 전문성과 투명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박애리 외, 2012). 또한 이러한 사회서비스 제공의 공공성은 주체 문제와 함께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은 물론 지역민들의 참여를 통한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윤홍식, 2012).

돌봄 기능을 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공공성의 경우 정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정을 지원하고, 재정 지원이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투자되는지 관리하며,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아동돌봄 및 교육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수요자 정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적절하게 개방하여 운영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유희

정·김은설·유은영, 2006).

3) 방과후 돌봄의 기능과 공공성

돌봄 중에서도 방과후 돌봄은 21세기 들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공적 돌봄 영역의 큰 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방과 후 돌봄은 사교육이 보편화되고 가정의 양육 기능이 약화되는 상황 속에서 학교가 교육뿐만 아니라 돌봄의 기능까지 담당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김민호, 2006). 특히 20세기 후반 학교는 교육 공간만이 아니라 ‘삶의 공간’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방과 후 활동을 학교의 본래적 기능을 확대·분화하는 ‘학교혁신’, 그리고 학교와 지역의 협력을 강조하는 ‘지역혁신’의 맥락에서 바라보면서 ‘지역사회 기반 방과후 활동 운영 및 지원 체제’를 방과후 학교 발전을 위한 대안적인 모델로 제시되기도 했다(김민호, 2006). 방과후 돌봄 정책에 대해 Gilbert & Terrell(2005)이 제시한 급여의 대상, 전달체계, 자원 등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인구학적 조건이 충족되면 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분, 공공 중심의 전달체계가 구성된 부분, 공공재정의 투입이 이뤄지고 있는 부분 등 기존의 사회복지정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정책의 적절성, 통합성, 지속적, 책임성 등이 담보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김광혁, 2014).

학교와 함께 방과후 돌봄을 책임지는 대표적인 기관이 바로 지역아동센터이다. 돌봄 서비스 연계정책에 적극적으로 조응하여 사회적 가치를 계승하는 한편, 다른 돌봄 기관들을 차별성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점인 지역아동센터는 ① 도시빈민층의 형성과 공부방의 비제도화기(1960-96년) ② 신도시빈민층의 형성과 제도화기(1997-2003년) ③ 제도화 이후 시기(2004년~현재)를 거치면서 발달하였다(김치영·김선미, 2014). 이러한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의 정체성 확립과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 제도화이후 지역아동센터는 양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뤘지만 신규 시설의 경우 지역아동센터의 본질에서 벗어난 개념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에 관련 이론적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김치영·김선미, 2014).

결국 공공성은 공공의 보편적인 필요성을 담보하고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돌봄에 대한 수요가 시민들의 복지와 안녕에 기여해야 하고 돌봄에 대한 욕구를 보편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합리적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방과 후 돌봄에 대한 공공성 강화의 주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이때 특수한 욕구를 지닌 집단의 이익을 반영해야 하고, 돌봄 제공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원하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일방향적인 제공이 아닌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 가능한 양방향적인 돌봄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4) 방과후 돌봄과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프로그램의 실태를 사례 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조사 한 연구 등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한 방과후 돌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방과후 적절한 보호와 생존의 권리를 위협받고 있는 취약 아동들을 포함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하며, 방과후 프로그램의 교육목적 및 내용에 대한 재고찰을 통해 우리 사회의 상황에 보다 적합한 목적 및 내용을 설정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부모를 대상으로 방과후 취약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교육,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교사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상승의 필요성이 제기 된 바 있다(김정원·김유정, 2006). 또한, 특정 집단에 주목한 연구도 있는데 빈곤아동에게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진행된 국내 실태조사(노병일·김현채, 2005)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직장에 있는 시간 동안 아이를 다른 곳에 맡기기 힘든 상황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24시간 보호에 대한 욕구도 적지 않았지만 대다수는 단기 보호 및 주말 보호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한 편이다. 또한, 이용자들은 지역아동센터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아동센터가 방과후 돌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며 지역사회중심의 아동보호는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지역아동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하지만 방과후 기관들 간의 협력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흡한 평가를 받는다. 즉, 지역아동센터가 여타 방과후 돌봄과의 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은 편이지만 지자체별 방과후 돌봄 협력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의 장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서혜전·김진숙·최운옥, 2014).

이러한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에게 보살핌을 제공하는 편안한 안식처”로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가장 주된 이유는 지역아동센터가 설립 신고제로 운영되면서 대부분 소규모 시설을 갖춘 개인이 운영하고 있어 내실을 갖추지 못한 채 양적으로만 팽창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적 측면에서의 영세성으로 인해 대부분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막대한 정부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체계적인 관리·감독 및 지도·점검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규모 결정의 기준이 되는 정부의 상대평가 제도가 외형적 성과지표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아동센터가 내실을 기하기보다는 외형에 신경 쓰도록 구조화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부당·부정 수급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설립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영세한 지역아동센터의 난립을 막아야 하며 법인전입금이나 자체재원을 적극 조달할 수 있는 센터가 들어서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함과 동시에 정부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윤향미·조문석·오재록, 2013). 결국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의 연계 및 협력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과 근거법 제정, 방과후 돌봄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제도 및 연수제도 마련, 방과후 아동지도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방과후 돌봄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문적 평가제도 확립,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과후 아동지도 기관과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서영숙·박진옥·서혜전, 2009)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담보를 위해서는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지역아동센터만이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공공성·책임성·전문성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서비스 향상을 모색(김치영·김선미, 2014) 하는 것이 지역아동센터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며 이에 더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여 관련된 단체들 간의 각종 갈등을 조정하고 전체시설을 대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시스템을 마련(김치영·김선미, 2014)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급여의 대상과 관련하여 대상

자의 자기결정권과 서비스의 지속성 또는 서비스 제공 기관의 현실적 운영문제가 충돌하는 부분, 정책 대상의 제한성, 이용대상을 둘러싼 분배 방법 등에 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김광혁, 2014).

2. 방과후 돌봄의 해외 사례 및 시사점

취학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교육을 비롯한 양육비용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비용은 전적으로 개별 가족들이 짊어지게 된다. 국가의 방과후 돌봄 서비스 부재와 고비용 사교육 중심의 현 상황은 저소득 계층에게 돌봄 접근성을 더욱 제한하고 이는 교육, 정서, 안전 등 돌봄 수혜에 있어 불평등을 낳는다. 따라서 시민권 차원에서 보편적인 돌봄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하는 필요성은 점점 커지게 된다(장수정, 2010).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시장실패, 분배적 정의 그리고 사회권적 관점으로 검토할 수 있다(장지연, 2011). 먼저 아동 돌봄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경제학적 견해는 시장실패와 분배적 정의 두 가지에 근거한다(Duncan, 1996).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보고 키우는 것은 그 아동과 가족의 후생을 넘어서는 사회적 가치를 지니지만 돌봄을 시장에만 의존할 경우 적정한 수준의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이는 주로 외부효과(externality)로 인한 시장실패 때문이다. 두 번째로 분배적 정의의 경우 개별 부모들이 시설을 이용한 아동 돌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경우 돈이 없어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분배적 정의의 측면에서 해소되어야 한다. 외부효과의 존재와 분배적 정의는 결국 돌봄에 대한 지원은 부모가 얻는 이득을 초과하는 사회 전체의 이득을 낳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써 돌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권적 관점에서 본다면 누구든 사회적으로 용인될만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고, 이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따라서 아동과 노인, 그리고 장애인과 환자는 누군가로부터 보살핌을 받으면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결국 힘이 없으면 죽어야하는 정글의 법칙을 채택하지 않는 것이 복지국가이기에 복지국가에 관한 이야기는 곧 시민권에 관한 이야기로 귀결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자면, 어린이나 노인, 그리고 장애인은 보살핌을 받을 권리라는 측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된다. 복지국가는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사회의 구성원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국가이다. 현대사회에서 돌봄의 문제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사회적 위험이며, 복지국가 체계 내에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이다(Arkesey & Kemp, 2006). 의존의 위험(risk of dependence)에 공동으로 대처하여 누구든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조직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국가에 부여하고 있는 것이 현대의 복지국가이고 복지국가는 돌봄의 문제를 포함해서 디자인되어야 한다.

특히 방과후 돌봄은 부모가 무리 없이 양육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관련 양육 조건과 연결된다. 소자녀 중심인 핵가족 사회에서 비공식적인 관계를 통한 돌봄 지원을 받기도 어려운데다 학교 이후 취학아동에 대한 방과후 서비스가 부분적인 현실 하에서 일하는 부모들은 각자 개별적으로 해결하거나 상품화된 돌봄 서비스에 장기간 의존하게 된다. 이는 지속적이고 다양한 질적 서비스가 담보된 방과후 서비스의 보편화가 절실한 이유이고, 지역사회 중심으로 한 돌봄 서비스 지원이 더욱 더 필요한 이유이다.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질 높은 방과후 서비스의 보편화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통한 방과후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도 동시에 필요하다. 예를 들면, 어린이 마을학교, 돌봄 공동체, 어린이 도서관 마을 도서관과 같은 것을 중심으로 돌봄 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면 많은 아이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방과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장수정, 2010). 이는 아동의 기본권 보장, 평등할 권리를 포함하여 돌봄권, 교육권 등 아동의 인권 보장을 가능케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결국 양질의 방과후 돌봄 보장은 공공의 이익에 광범위하게 부합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는 방과후 돌봄에 대한 복지적인 성격과 공공성이 강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의 방과후 돌봄에 대해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스웨덴²⁾

스웨덴에서 방과후 돌봄은 학령아동돌봄(Childcare for school children). 부모가 일을

2) 참고: 김수동, 2008; 김수동·김정주, 2004; 김재인·이향란, 2004; 김재인·이향란, 2005; 이향란, 2006; 조미숙, 2006; 황선준, 2013

하거나 학업을 하는 동안 학령기 아동(6~12세)에게 제공하는 교육적 집단 활동을 의미한다. 방과후 돌봄을 설립주체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공립과 민간으로 구분 가능하며 이 때 공립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공립에서 제공하는 방과후 돌봄은 지방정부의 책임 하에 운영된다. 민간이 제공하는 방과후 돌봄은 1990년대부터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로부터 공립과 동일한 수준의 재정적 지원을 받기 때문에 부모의 부담은 공립과 동일하며 대부분 협동조합 형태이다.

한편, 방과후 돌봄을 운영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교육적 돌봄, 여가시간의 집 그리고 개방형 여가활동으로 구분된다. 먼저, 교육적 돌봄(Pedagogisk omsorg)은 이전에는 가정 돌봄이라고 불렸으며 2009년부터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는 대체로 어느 한 가정이 방과후에 자신의 자녀를 돌봄과 동시에 다른 아동도 돌봐주는 여러 형태를 일컫는 개념이다. 이는 주로 유아들이 많이 이용하나 학령기 아동도 이용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매우 적은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다음이 여가활동 센터(Fritidshem, 영: leisure-time center)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학령기 아동돌봄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직장을 다니거나 학업 중인 부모를 둔 학령기 아동과 특수아동이 대상이다. 이는 주로 학교 건물에 위치하고 의무교육 체계와 밀접히 연결되며 6~1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다. 마지막 유형은 개방형 여가활동(Öppen fritidsverksamhet, 영: open leisure-time center)인데 이는 등록제로 운영되지 않고 개방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공식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로 1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개방형 여가활동 센터는 1990년대 초까지 비교적 잘 보급되었으나 이후 경제위기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 이 업무를 중단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이용률이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스웨덴의 방과후 돌봄의 구체적인 실행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지만 국가적 수준의 통일된 교육과정 차원에서 방과후 아동 돌봄의 프로그램 목적 및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의 긴밀한 연계성을 보인다. 또한 스웨덴은 비용상한제를 실시하여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 감독과 지원이 잘 이뤄지고 있다. 각종 아동관련 통계 수집 및 체계화된 방법을 통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민간 방과후 시설에 대해 국공립 방과후 시설과 같은 수준의 지원과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다.

2) 미국³⁾

미국은 다양한 형태의 운영모델과 다양한 재정적 지원체계를 통해 아동·청소년과 학부모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까지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함으로써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고 학업성취 능력 향상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서 방과후 돌봄은 학령기 아동돌봄(school-age child care, SACC)이라는 개념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학교 외 교육(out-of-school education)으로도 제시하고 있다. 학교와 학부모에 의해 보호될 수 없는 시간동안에 학령기의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6~14세까지의 아동이 대상이나 청소년 문제 예방을 위해 그 이상의 청소년까지 대상을 확장하여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통합된 방과후 아동돌봄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 대신 연방정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21세기 지역사회학습센터 프로그램(21st Century Community Learning Centers Program, 21st CCLC)이 그 예인데 이 프로그램은 특히 빈곤수준이 높고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방과후 아동돌봄시설은 공립과 사립으로 나눌 수 있다. 대다수는 민간(영리기업 및 비영리단체)에 의해 설립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① 초등학교 ② 각종 종교 기관 및 단체 ③ 민간기업 ④ 비영리 민간단체 ⑤ 민간인 주도 사설 방과후 아동돌봄시설 ⑥ 방학을 활용한 목적별 단기 방과후 아동돌봄 ⑦ 센터 중심의 방과후 아동돌봄 등으로 구분 가능하다.

3) 영국은 초등학교 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과 전후 클럽(Out of School Clubs)을 운영하고 있음. 이 방과전후 클럽은 학교가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사회 기관이나 개인을 통해 운영되기도 함. 방과전후 클럽의 범위는 방과후 클럽(after school clubs), 방과 전 클럽(breakfast clubs), 그리고 휴일 클럽(holiday clubs)과 방학 중 놀이 프로그램 (playschemes) 모두를 포함함(www.outofschoolalliance.co.uk)(길은배, 2016).

미국의 대표적인 방과후 프로그램인 ‘21세기 지역사회 학습센터’(21st Century Community Learning Center)는 대부분 학교시설 또는 학교 밖 시설을 이용하여 운영되고 있음.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의 방과후 돌봄 사업과 큰 차이가 없으나, 질 높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인증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표준을 정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와 큰 차이점임. 이러한 표준은 전미방과후시간협회(National Institute on Out of School Time: NIOST)와 전미방과후아동보호연합회(National School Age Child Care Alliance: NSACA)의 공동 연구와 현장실험 결과를 통하여 정해짐. 미국 국가 수준의 표준은 인간관계, 실내 및 실외환경, 활동, 안전, 건강 및 영양, 운영 등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길은배, 2016)

3) 일본⁴⁾

일본의 방과후 돌봄은 일정의 시설에서 학교와 부모가 보호할 수 없는 시간동안 초등학교 아동을 돌보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정책의 주요대상은 여전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1~3학년)으로, 청소년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 대상의 프로그램은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소수의 지역사회 기반 활동들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주로 아동 대상의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일본의 방과후 돌봄은 과거에는 민간이 주로 담당했으나 최근 들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실시되는 추세이다. 대표적인 정책이 ‘방과후 아동 종합플랜’이다. 이는 2014년 7월 31일 초안이 마련되었으며 2007년부터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의 기존 사업을 통합·연계시킨 ‘방과후 아동플랜’을 한층 더 통합하고 확장한 정책이다. 2007년 이전 문부과학성은 교육적 측면을 중시하는 ‘지역아동교실’을 운영했고 후생노동성은 돌봄적 측면을 중시한 ‘방과후 아동교실’을 별도로 운영한 바 있다. 이 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 지역아동교실: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안심한 아동의 활동거점을 계획하고 지역의 참여를 얻어 다양한 체험과 교류활동 등 추진
 - 방과후 아동교실: 맞벌이 가정 등 보호자가 주간에 부재중인 가정에 있는 아동에 대해 방과후나 여름방학 중에 적절한 생활의 장을 제공하여 건전한 육성 도모
-

2007년 시행된 ‘방과후 아동플랜’은 ① 방과후 아동교실 ② 방과후 아동클럽(방과후 아동건강육성사업)으로 구성된다. 방과후 아동교실은 지역아동교실을 계승한 것으로, 주로 초등학교 1~3학년에 다니고 있는 10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하면 그 이상의 연령도 포괄한다. 한편 방과후 아동클럽은 방과후 아동교실을 계승한 것으로, 보호자가 노동 등에 의해 주간에 가정에 없는 초등학교 1~3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하면 그 이상의 연령도 포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7월 31일 ‘방과후 아동플랜’을 더 통합·확장한 ‘방과후 아동 종합플랜’이 작성되었다. 이는 맞벌이 가정 등에 존재하는 ‘1학년의 벽’을 깨고 차세대 인적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방과후 아동교실과 아동클럽을 통합적인 방향으로 체계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모든 학령기

4) 참고: 김수동, 2007; 김수동, 2008; 김수동, 2013; 김수동, 2015; 김수동·김정주, 2004; 김재인·이향란, 2004; 김재인·이향란, 2005; 이성한, 2012; 조미숙, 2006

아동이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하면서 방과후 시간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적 목표는 첫째, 2019년까지 방과후 아동클럽을 확대하여 30만 명 이상의 아동을 새롭게 포괄(기존 90만 명 → 120만 명)하고 신규 개설되는 방과후 아동클럽의 80% 이상을 초등학교에 설치한다. 둘째, 초등학교에 위치한 2만 개의 방과후 아동클럽과 아동교실을 통합형 또는 제휴형으로 운영하되 최소 절반은 일체형으로 운영한다. 그리고 광역지방단체와 기초지방단체는 ‘방과후 아동 종합플랜’ 하에서 상세한 사업 계획을 작성한다.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은 ① 학교 시설을 이용한 방과후 아동클럽과 아동교실 촉진형, ② 방과후 아동클럽과 아동교실 통합형(동일한 초등학교 안에 두 가지 모두를 동시에 운영), ③ 방과후 아동클럽과 아동교실 제휴형(학교시설이 모자랄 경우 유치원이나 다른 지역사회시설을 이용하여 운영), ④ 학교·가정과 방과후 아동클럽 및 아동교실 간의 긴밀한 제휴, ⑤ 사적시설을 이용하여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것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본은 방과후 아동지도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법안을 제정하였고, 방과후 아동지도정책의 종합성과 다양성 지향한다. 중앙정부는 정책적 지침을 마련하고 예산을 투입하며 지방정부는 이를 현장에서 실행하기 위해 내부규정 또는 조례를 제정해서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돌봄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행정 체계 일원화 및 관련부서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이 특징적이며 차등돌봄료를 실시한다. 또한, 아동과 학부모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함으로써 맞춤형 돌봄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으며 아동의 안전 보장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규정한다.

4) 독일⁵⁾

독일의 방과후 돌봄은 주로 학교 시간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게 보호와 교육을 제공하고 인격적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주로 초등학생과 중등 1단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6~14세까지) 한국의 고등학교 격인 중등 2단계 학생을 위한 돌봄 프로그램이나 방과후 프로그램은 전혀 실시되지 않는 상황이다. 독일의

5) 참고: 김수동, 2007; 김수동·김정주, 2004; 김재인·이향란, 2004; 이민희, 2013; 조미숙, 2006

방과후 돌봄으로는 먼저 학교 내 프로그램이 있다. 이는 온종일 학교(Ganztagsschule, GTS)라고 지칭한다. 독일학교는 전통적으로 반일제로 운영되었으나 1990년대 말부터 여성의 사회진출이 대폭 증가하면서 교육과 돌봄의 요구가 높아졌다. 2000년에 학생들의 교육수준 향상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온종일 학교가 해결방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는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따라서 독일의 온종일 학교는 방과후 학교와 돌봄 교실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초등학교와 중등 1단계 학생 대상이다.

온종일 학교는 ① 의무형 온종일 학교(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참여) ② 부분 의무형 온종일 학교(취약계층 학생이나 이주민 학생 등 일부만 의무로 참여) ③ 개방형 온종일 학교로 구분되며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여부를 결정한다. 온종일 학교의 프로그램은 첫째, 학습지원 관련 프로그램, 둘째, MINT(수학, 정보학, 자연과학, 기술) 관련 프로그램, 셋째, 언어, 인문학 관련 프로그램, 넷째, 음악, 미술, 실생활, 직업예비교육 관련 프로그램, 다섯째, 여가, 스포츠, 건강, 사회성 학습 관련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실시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숙제 돌봄, 학습지원 프로그램, 음악, 미술,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이다.

온종일 학교 프로그램의 비용은 주마다 다양하지만 약 60%의 학교가 유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소외계층의 경우에는 지자체나 타기관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온종일 학교는 학교 외부의 다양한 외부 기관, 협회 등과 협력을 강조한다.

두 번째 방과후 돌봄으로는 호르트(hort)라는 학교 외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6~14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호르트는 아동들을 위한 주간 보호기관이다. 부모들이 직업 또는 여러 사정으로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경우에 훈육, 돌봄,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로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이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아동, 학업 부진아, 이상 행동 아동 등이 대상이며 학교와 긴밀한 협력 하에 학교 기능을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호르트에서의 일과는 점심식사시간, 학습시간, 자유시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생활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그리고 학부모가 호르트 참여비, 급식비, 프로그램참여비를 부담해야 한다. 경제적 능력에 따라 정부로부터 비용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온종일 학교가 확대되면서 호르트는 감소추세에 있으

며 일부 호르트는 학교와 협력하여 학교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독일은 이처럼 제도적 차원에서 복지적 측면과 교육적 측면을 하나의 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고 아동 간, 교사 간, 아동과 교사 간, 기관과 학부모 간 그리고 기관과 지역사회 간의 다양한 파트너십이 강조되고 있다.

이상의 해외 사례를 종합해 보면 해외 방과후 돌봄은 최근 온종일 학교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공공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과후 돌봄 기능을 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우리나라에는 지역아동센터와 학교 방과후 돌봄이 있다. 학교 방과후 돌봄과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성격은 상이하면서도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해외의 방과후 돌봄에 비해 민간 비중이 큰 편이며, 공공의 기능보다는 개별적인 자생적 성격이 강한 편이다. 해외 국가들은 점점 공공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고 그 안에서 지역사회 연계와 학교 연계가 공고해지는 추세이다. 그에 비해 민간에서 시작된 우리나라 지역아동센터는 제공되는 돌봄의 성격이 개별 센터 특성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를 위해 운영 전반 사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3. 국내 방과후 돌봄의 현황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제공은 근거법이 상이하고 행정적으로도 중앙정부(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청소년위원회 등), 지방정부(보육팀, 아동팀, 청소년팀 등), 일선 실시 기관(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초등학교, 청소년공부방, 청소년아카데미, 민간공부방) 차원에서 분화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서비스나 수혜대상에서 큰 차별성이 없어 비효율적인 전달체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김미숙, 2006). 현재 3개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 돌봄을 접근성, 기능성, 효율성 측면에서 평가한 결과에 대한 연구에서도 접근성 측면에서 방과후 돌봄 기관에 대한 지역 배치를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재정에 관한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권윤희, 2006)⁶⁾.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3개 정부부처

6) 한편 에스핑 안데르센이 분류한 네 가지 유형의 복지국가를 대표하는 스웨덴, 독일, 미국, 일본은 담당

간의 역할분담, 지자체와 교육청의 업무 협력, 드림스타트센터의 역할 및 서비스 제공 기관 간의 업무분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할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김광혁, 2014).

1) 교육청과 여성가족부의 방과후 돌봄 서비스⁷⁾

현재 아동청소년을 위한 대표적인 방과후 돌봄서비스로는 초등돌봄교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들 수 있다. 이들 세 돌봄서비스의 공통점은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시간의 일정 부분 이상 지속적으로 교육, 보호, 문화, 상담,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각 사업의 주무부처가 다르고, 사업의 역사, 구체적인 서비스 대상 특성과 프로그램 내용, 운영기관의 수 및 이용자 수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1) 방과후 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 활동으로, 학교 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교육활동이 방과후 학교 혹은 초등돌봄교실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방과후 학교 지원센터, 2017). 우선 방과후 학교는 돌봄서비스를 전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방과후 시간 동안에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부분적인 돌봄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를 대신하여 수업시간 외에도 학교는 방과 전·후, 주말, 방학 중에도 학생들을 보호하는 ‘돌봄’의 기능, 학교교육을 보충하는 ‘채움’의 기능, 정규교육 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 ‘보탬’의 기능, 아동 및 청소년의 상담·치료를 통해 인성을 개발하는 ‘살림’의 기능, 지역사회 교육 및 문화 센터로서 지역공동체의 질

부처와 국가의 개입 정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아동돌봄서비스를 위한 근거법이 존재하고 전달체계가 하나의 정부기관으로 통합되어 있어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방과후 돌봄의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간 역할 분담 및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와 민간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김미숙, 2006).

7) 참고: 조영희, 2012

적 향상에 기여하는 ‘만들’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학교는 교육 뿐 아니라 삶의 공간으로써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김민호, 2006)⁸⁾.

우리나라의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방과후 학교’에 방과후 돌봄의 기능을 적용한 방과후 교실을 추가함으로써 초등학교에 도입되기 시작하여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돌봄이 시행되게 되었다. 그 후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에 대한 명칭(방과후 교실, 초등보육교실, 종일돌봄교실 등)도 ‘초등돌봄교실(엄마표 온종일 돌봄교실)’로 통일되었다. 이렇게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배경에는 학부모들의 자녀 방과후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을 가장 선호한다는 조사결과(노성향·조선하·박지희, 2007)와 함께 공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점과도 관련 된다(김홍원·진미경·김연석·김새봄·최은아, 2008).

그러나 학교 제도의 기능은 상당히 한계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학교 내부 차원에서 보면 학교 교육 확대에 대한 폐쇄적인 사고, 방과후 학교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학내 여건 미비, 교육 행정체제 차원에서 보면 일방적인 성과중심 인센티브 부여 방식으로 인한 형식적인 운영, 중복·유사사업의 추진, 지역사회 차원에서 보면 우수 강사 유치 부족, 지역사회의 인사 참여 및 재정지원 부족, 이해집단의 반발로 인한 방과후 학교 법률 재개정 추진의 어려움 등이 주요 한계로 지적된다(김민호, 2006).

(2)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2005년 ‘방과후 청소년 생활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기초조사로 청소년 방과후 실태조사를 거쳐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기본계획을 세워 운영모형을 설계하는 단계를 밟아 시행된 비교적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기획된 사업이다. 초등 4학년부터 중학 3학년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성 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방과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체험 및 학습 프로그램, 청소년 생활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정책지원 사업이다.

8)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21세기 지역사회학습센터>, 일본의 <지역-사회연계협력>, 프랑스의 <마을이 아이를 가르친다> 사업 등 학교-지역 간 협력 사업을 핵심적인 교육정책으로 채택하는 것이 전세계적인 추세이다(김민호, 2006).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방과후 부모의 관리 없이 혼자 방치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이 문제행동에 노출될 위험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경제적 양극화로 인해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빈곤가족 청소년들의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지면서 경제적 수준에 따른 학력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사회적 심각성 속에서 청소년 교육지원과 보호를 위한 공적서비스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면서 2005년 2월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방과후 청소년 생활지원 종합대책’이 제시되었고, 2005년 9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었다. 특히 사업 운영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청소년들로 하여금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의·권리·의무·책임을 배울 수 있는 전인적 성장발달을 도모함을 목표로 삼는다(송혜림·조영희·라휘문·김유경, 2011).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바탕으로 전국의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관련시설을 기반으로 시작한 방과후 공적 서비스 체계로서, 2005년 7월 처음으로 46개 지역에서 2,350여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작되어 2006년 전국적으로 확대, 현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의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25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⁹⁾.

표 II-1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 주 대상과 연령

구분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방과후 학교			주 대상 (모든 학생)											
초등돌봄교실			주 대상 (저소득, 맞벌이 가정)											
지역아동센터	일부		주 대상 (빈곤해제 가정)						일부대상					
방과후 아카데미							주 대상 (저소득 가정)							

출처: 이태수(2011).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 정책 토론회」 p.14 재인용 및 일부자료 수정
조영희(2012). 아동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 현황과 가족정책적 과제

9) ‘방과후 나홀로 청소년’을 위한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간의 기능
체험을 통한 건강한 놀이·문화를 체험하고 실천하는 기능
보호자·청소년·지역사회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
정규교육으로 부족한 인성 및 창의성 개발 지원 기능

Ⅱ 표 II-2 Ⅱ 부처별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 차이

구분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소관부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원대상	초등 1~2학년 초등돌봄교실 3학년 이상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만 18세 미만	초등4학년~중등3학년
지원내용	보호, 교육 및 일부 급·간식 지원	보호, 학습지도, 급식, 상담, 지역사회 연계 등	체험 및 특기적성 교육, 급식지원 등
지원형태	- 무상프로그램 1개: 무상(학 부모가 요구하는 별도 프로 그램은 유상) - 급·간식비: 수익자 부담 ※ 교육비 지원대상은 전부 무상	전액 지원 (저소득 이외 아동은 프로그램비용 부담)	- 지원형: 전액지원 - 일반형: 수익자 부담
운영주체	학교	법인, 개인 등 민간, 지자체	청소년 수련시설
근거법	초·중등교육과정 고시 2015-74호	아동복지법 제52조, 제 59조	청소년기본법 제48조2

※ 아이돌봄서비스(여성가족부) 안내: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 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적용)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2017). 2017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Ⅱ 표 II-2 Ⅱ 에 지시된 바와 같이 현재 방과후 활동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3개 부처 담당 하에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즉, 3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각각은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형태, 운영주체, 근거법에서 구분된다. 이상의 현황과 관련하여 정부의 각부에서 중복 운영되고 있는 방과 후 사업을 통합할 수 있는 청소년 방과 후 종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특별법’에 근거하여 방과 후 지원 사업을 각 중앙부처가 효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중앙정부청소년방과후지원협의회’ 종합적인 운영을 위한 실질적 조직으로 중앙에는 ‘한국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센터’, 지방정부 간 연계를 위한 ‘지방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센터’ 등을 통해 체계적인 방과후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김호순·강동균·이필만, 2014).

2) 보건복지부의 방과후 돌봄 서비스 :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및 기능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복지를 제공하며 교육적인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욕구를 반영하여 정서적인 안정을 지원하고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결국 지역아동센터는 아동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건강한 가족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는 지역사회 돌봄 기관으로 기능한다(성효순, 2016). 특히 이용 시설 중 가장 양적인 팽창이 많이 이루어진 기관이면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다는 특성 상 곳곳의 많은 아동들을 포괄할 수 있기에 방과후 돌봄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지역아동센터가 양질의 방과후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핵심 조건은 재정의 안정화와 종사자 처우이며 이는 결국 지역아동센터의 내실화로 이어진다. 지역사회 기반의 방과후 돌봄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지역아동센터가 제 기능을 함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미국의 ‘21세기 지역사회학습센터’ 사업은 방과 후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를 부모의 개별적인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특히 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주요 파트너의 비중을 보면 지역사회조직(community-based organization)이 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김민호, 2006).

지역기반 돌봄 기관의 운영 관련 개선 요구사항들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공공성 강화와 내실화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돌봄이 공공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대상의 보편성이 있어야 하고 제공되는 돌봄의 질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공공의 욕구를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저소득 등 특정 집단에 제한적이고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공공성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윤홍식, 2012). 이는 재정상태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재정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은 인건비 절감이나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축소를 통해 만성적 재정적자를 해소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종사자에게는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이 구조화된다. 다른 한편으로 복지대상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서비스가 없거나 저급한 서비스가 주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설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기본급여 인상 및 모든 시설종사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단일 임금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모든 수당에 대한 수급권을 인정하면서 종사자의 법정정원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채구묵, 2003; 2011).

특히, 보수수준 현실화는 시설에서의 근무에 공지와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결국 돌봄의 질 향상으로 연결된다.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종사자들의 직제방안이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종사자들 간 직제차등이 없다면 업무의 하달에도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승진에 대한 기대를 가지기도 힘들다. 종사자들 간에도 조직적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시설에도 직제를 둬으로써 종사자들이 경력을 쌓아 실무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김양희, 1995).

아동 돌봄 시설 종사자들은 또한 시간과 인력의 부족이 많이 호소한다. 과반수 이상의 아동 돌봄 시설들은 연계를 위한 사업비가 부족한 상황이고 최소한의 자원이 확보된 상태에서만이 서비스 대상자들의 복합적 욕구를 보다 잘 충족할 수 있다. 아동 돌봄 시설들이 기본적인 서비스를 실천하는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 개선되어야 한다(박미정, 2011). 종합사회복지관은 종사자의 근무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과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종사자의 충원, 급여 등 보수수준과 전문적 재교육 기회제공, 안식월 등의 ‘휴’를 제공하기도 한다(이동수, 2009). 이와 같이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개인시설의 법인화를 유도하고 법인시설에 운영비 전액을 재정 지원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공립 지역아동센터를 소외지역, 낙후지역, 밀집지역 등 방과후 돌봄 미충족지역에 적극적으로 설치함으로써 방과후 아동의 방임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이태수, 2012).

또한, 일부 사회복지관에 국한된 이야기 일 수 있지만 사회복지관(정부의 위탁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비영리민간으로써 공적 서비스 제공의 주체가 됨)의 종사자들이 시민들의 이해에 민감하기 보다는 자치단체의 이해에 더 충실하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아렌트(Arendt, 1996[1958])와 하버마스(Habermas, 2001[1962])에게 있어 공공성의 핵심은 주체의 문제이기 보다는 모두에게 열려져있는 공론장으로써 공공영역 존재였다. 결국 시설 운영에 학부모의 적극적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아동 돌봄 시설 운영의 민주성을 보장해야한다(윤홍식, 2012).

한편, 아동 돌봄 중에서도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네트워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관 중심의 형식적·산발적 사업과는 달리 지방자치단

체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구성된 민·관 협력의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은 보다 더 안정적인 지역사회 안전망·육성망 조성을 가능케 한다¹⁰⁾.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가 가능할 수 있는 요소로는 ① 각 참여기관들의 담당 실무자 간 인적 네트워크와 친밀도 ② 각 기관의 기관장 및 동료실무자들 간의 협력과 지원 ③ 지방정부의 민간 네트워크 과정에 대한 이해와 지지 ④ 네트워크의 개별기관들의 공동의 목표 설정 및 공감대 형성 ⑤ 기능과 역할에서 보완관계를 갖는 기관들의 네트워크 구성 등이다(김정율·권일남, 2009).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지역기반의 방과후 돌봄이라는 특성이 중요한 만큼 여러 주체들의 연결망과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3) 분석의 틀

국가 재정의 지원을 받으며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는 공공성 실현이 매우 중요하다. 공공성은 단지 공적인 것에 제한되지 않고, 공적인 것이 지향하는 가치, 영역, 주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김정수 외, 2009). 공공성이 담보되는 서비스라고 명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 경우는 보편성을 전제로 국가가 재원을 부담하고, 국가가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위탁형식으로 비영리 민간이 서비스제공을 대행하는 경우이다(윤홍식, 2012). 즉, 공적 재정을 지원¹¹⁾ 하는 지역아동센터는 공공성이 중요한 항목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기관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재정 중 정부보조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¹²⁾. 센터들은 대부분이 정부보조금으로 기

10) 대표적인 사례인 「강서푸른이학교」는 방과 후 학교를 기본 형태로 하면서 여러 아동·청소년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지역사회학교로서, 강서청소년회관을 중심으로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강서청소년자활지원단, 강서지역아동복지센터, 강서구정신보건센터,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의 기관이 운영권소사업을 구성하여 강서구 주민생활지원과와 함께 추진됨. 기본적인 방과 후 학교의 형태는 초·중 등생을 위한 「푸른이자치학교」와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 중학생을 위한 「글로벌스쿨」이며, 지역의 아동·청소년문제에 접근하고 지역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특화사업은 「평생교육지원센터」가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저소득계층이 많고 슬럼화되어 있는 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관계기관의 판단에 의거한 것임

11) 지역아동센터의 재정(정부보조금, 지방비, 후원금, 자체수입으로 구성)에 대한 정부보조금은 기본운영비와 추가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음. 특히 지방비는 급식비를 지원하며 그 외에 지자체별 별도 추가지원금이 지급됨. 그 외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간기업체, 공공기관, 개인, 사회복지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후원금을 지급함(지역아동센터의 재정은 이와 함께 자부담, 잡수입, 차입금, 이월금과 그 외의 수입으로 구성됨)

12) 2015년 기준 지역아동센터 연간 총 수입 8,230만원 중 정부보조금 수입 평균 5,553만원

본운영비를 지원받고, 특성에 따라 추가 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절반가량 된다. 또한 정부지원금 뿐만 아니라 지자체로부터 별도 지원금을 받는 센터가 대다수이다¹³⁾.

이러한 지역아동센터는 운영·기능·결과 등 공공성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하지만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하는 지점들이 많은 상황이다.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은 중장기적으로 지역아동센터 관련된 전체적인 공공성 강화와 지역사회 돌봄 기능 강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보편적 복지로서의 방과 후 돌봄 영역 공공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서울시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공공성 강화와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공공성을 논함에 있어서 운영의 공공성으로 연구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연구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서울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내실화 방안 마련을 모색하려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의 서울시 지역아동센터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한다. 그리고 운영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지역 기반 아동의 돌봄권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기능 정립 방안을 도출한다.

한국에서 공공성 논의는 주로 규범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성은 보통 목적어로 사용되며, 실현, 확보, 강화해야 할 공공의 가치로 인식된다(홍성태, 2012). 예를 들어 신진욱(2007)은 공공성을 논하며 책임성과 민주적 통제성, 연대와 정의, 공동체 의식과 참여, 개발과 공개성, 세대 간 연대와 책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공공성’은 크게 7가지의 의미로 정리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다. ① 국가의 공공정책이 공식적으로 지향하는 가치→사회구성원들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책임과 역할, ② 공공재 이미지(시장원리가 적용되지 않고 모든 이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 ③ 기업의 사회적 책임, ④ 사회운동이 내거는 사회정의와 공익(공공성을 정의와 공익의 차원에서 제시하고 대중에게 호소), ⑤ 언론매체에 투영된 공적 성격과 공개성, 의사소통 기능, ⑥ 행위양식의 규범(개인들의 사회를 이루고 유지하며, 그 안에서 자율성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규범적 가치), ⑦ 행위자의 공적인 책임성(정치인과

13) 2015년 기준, 95.4%가 정부 지원을 받으며 기본운영비 외에 거점형 지원센터 5.2%, 특수목적형 지원센터 14.1%, 토요운영 지원센터 42.2%가 추가지원을 받음. 정부보조금 외 지자체 별도지원금을 지원하는 센터가 90.2%임

관료, 공공업무 관장기관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모습 기대) 등이다. 이렇게 국내 연구에서 도출되는 7가지의 공공성 용례 중에서 이 연구는 ①과 ②에 초점을 두고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공공정책과 공공재라는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아동센터가 지속가능한 지역 사회 기반의 돌봄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들, 아동이 평등할 권한, 기회의 평등 등을 보장하고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을 견지한 지역아동센터 발전 방향 모색은 서울시 아동 정책 전반의 공공성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의 실질적인 내실화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운영의 공공성 확보이다.

지역아동센터가 결과적으로 이용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경우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양질의 인력 확보와 프로그램의 내실화이다. 그리고 이는 또다시 재정운영, 전달체계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허브 기관에서의 종사자 인력풀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인건비를 포함한 종사자 처우 및 근로환경 문제를 중점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아동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지역아동센터의 질은 종사자들의 특성과 함께 지역아동센터 교육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의 수요와 욕구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공공성 달성과 내실화 방안 마련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¹⁴⁾ 내용과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에 아동친화성이 반영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특히 프로그램의 질은 지역아동센터의 주요한 평가 항목이며 이는 정부 지원금 규모와 지원 지속 여부에 반영되는 만큼 핵심적인 항목이다¹⁵⁾.

또한, 돌봄의 공공성 확보와 아동친화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공립과 민간위탁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재정립 필요성을 살펴봐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공립

14) 기존의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은 보호프로그램(위생지도, 생활지도 안전지도 등), 교육프로그램(학습지도, 숙제지도, 예체능교육, 특기적성교육), 문화프로그램(문화체험, 캠프, 견학, 공연관람 등), 복지프로그램(사례관리, 아동상담, 부모상담 및 교육 등), 지역연계프로그램(자원봉사 및 후원자 모집·관리, 지역의료기관 연계 서비스 제공 등)으로 구성됨

15) 2015년 지역아동센터 평가 결과 프로그램 영역은 80.2점을 기록했으며 보호프로그램 83.8점, 교육프로그램 76.6점, 문화프로그램 81.1점 그리고 정서지원프로그램은 79.2점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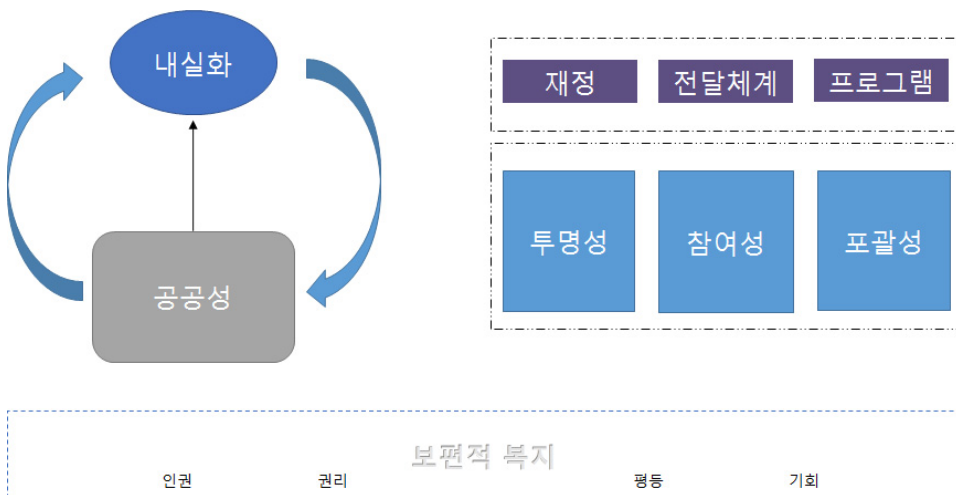
지역아동센터의 허브 역할, 컨설팅 역할 등을 포함하여 지역아동센터 전반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전달체계 효율화와 재정운영 그리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평가와 관리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내실화를 도모하여 일정 이상 수준의 운영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개인시설의 법인화 유도 및 국공립 지역아동센터의 설치·확충은 민간의 영리부문 확대를 제어하고 국공립을 비롯한 비영리부문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제도적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단, 국공립, 법인시설의 설치 및 확충을 위한 재원의 규모 및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또한, 관리감독기관의 지위와 권한과 함께, 운영 및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문 회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이충권, 2012).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서울시 지역아동센터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성을 제고한다.

이러한 주요 고려 사항들을 바탕으로 하여 이 연구는 서울시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실현과 운영의 내실화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 거버넌스를 활용한 공동체 가치 수립을 통해 대안을 모색한다. 지역 기반 돌봄은 국가, 지자체, 지역 공동체, 가정의 협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역시 공익과 공유라는 가치를 강화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권을 보장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된 영역(재정, 종사자 처우, 프로그램 내용, 전달체계)에서 공공성과 내실화 그리고 운영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한다.

2000년대 중반부터 돌봄 영역에서 사용되기 시작된 '공공성'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들이 강조된다. 즉, 공동체적 가치와 이익, 국가의 책임, 형평성, 서비스 내용의 질, 공공재정의 투입, 공공전달체계 등이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의 비전과 목표, 공익 실현, 국가 예산 투자, 공적 서비스 비중 확대, 고용 구조 개선, 표준화된 프로그램, 품질 관리의 책임, 시설 운영의 사회적 책임(예산회계 등), 공적 관리 감독, 보편적 돌봄 제공, 이용의 평등성, 공개성 등을 공공성의 주요 구성요소로 들 수 있다(백선희, 2011). 이 연구에서는 이를 근거로 하여 운영에서의 투명성, 참여성, 보편성(포괄성) 등을 공공성 확보의 핵심 요소로 고려한다.

먼저, 투명성(공개성 포함)은 재정 운영에서 특히 강조된다. 특히, 회계 항목의 구성,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 운영 등에 적용되어야 하며 정보공개 정도와 활용, 회계관리

시스템 및 모니터링 현황 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참여성과 접근성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과정에서의 전달체계에 관련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생산과 소비의 모든 당사자들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 아동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 교사, 담당 공무원 등이 시설 운영과 관련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결정할 때,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가 시민들의 이해에 복무하는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다(윤홍식, 2012).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고 지역사회와의 밀접도, 접근성(거리, 교통 등) 그리고 지역사회의 수요와 이들이 주요 대상으로 삼는 아동 집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공립센터와 민간센터의 역할 및 관계를 재정립하며 장기적으로 민관 거버넌스의 구축을 고려한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은 보편성, 포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하고 내실화를 도모한다. 이때 프로그램 내용의 표준화 정도, 프로그램 콘텐츠, 관련 매뉴얼 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고려하고 센터 간의 프로그램 내용의 질 차이 정도도 조사 및 분석 대상에 포함한다. 이를 위한 전문 인력 유지 필요성과 전문 인력 풀의 중앙 집중 관리 필요성 그리고 업무환경 및 만족도와 종사자의 업무 지속 의향 정도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한다.



■ 그림 II-1 ■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강화와 내실화(안)

이 연구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 가치 실현의 장으로써의 지역아동센터 강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돌봄의 공공성 실현과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내실화 방안을 도출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아동과 부모의 기본권인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노동권, 돌봄권 등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의 재정립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연구는 아동친화도시의 구축 기반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건강한 가족의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 도출에 기여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은 중요해질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의 발전 방향을 탐색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작업이 된다.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사회 돌봄의 한 축으로써 기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운영에 있어서의 내실화뿐만 전반적인 아동 복지 정책에의 긴밀한 연계가 중요하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한 아동 인권 확보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염두에 두고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강화와 내실화 방안 마련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4. 지역아동센터 실태 및 운영 지원 현황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재정, 인력, 프로그램 그리고 전달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보건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사업복지사업법」 제43조의 2의 제1항).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평가¹⁶⁾가 주기적으로 실시되며 해당 결과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반영된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정 흐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서비스 수준에 따라서 차별화 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지자체의 별도지원금은 종사자처우개선비(종사자 교육 및 의료비 등)와 프로그램비가 주요한 항목이며 그

16) 평가는 진입평가와 심화평가로 크게 구분되고 시·도별 교차평가를 원칙으로 함

외에도 시설개보수비, 간식비, 차량운행비, 인건비(아동복지교사 제외) 등이 있다. 재
정에서 특히, 인건비와 프로그램비 등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이러한 재정 운영을 투명
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항목을 분리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지
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표 II-3 지자체 별도지원금 지원내역

(단위: 개소, %)

구분	센터수	비율
전체	4,102	206.7
종사자처우개선비(종사자 교육 및 의료비 등)	2,582	62.9
그 외 항목을 지정하지 않은 지원금	2,172	52.9
프로그램비(학용품비, 교재비 등)	1,501	36.6
시설개보수비	1,138	27.7
인건비(아동복지교사를 제외한 종사자인건비)	837	20.4
간식비(급식비를 제외한 간식비)	144	3.5
차량운행비(차량주유비 등)	122	2.7

지자체로부터의 지원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지자체 별도 지원금 항목 중에서 종사자처우개선비를 지원받는 센터는 2,582개소
(62.9%)이고 그 외에 항목을 지정하지 않은 지원금을 받는 센터는 2,172개소(52.9%), 그
리고 프로그램비를 지원받는 센터는 1,501개소(36.6%)이다. 급식비의 경우는 대부분의
센터가 지원을 받으며 2015년 서울시 기준으로 아동 1인당 한 끼 평균 지원금은 4,025
원이다. 이렇게 지역아동센터는 중앙 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광역단위, 기초단위) 다
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II-4 급식비 지원 현황

(단위: 개소, %, 원)

구분	전체 센터수	급식비지원센터		급식비미지원센터
		지원기관	평균 지원금	
전체	4,102(100.0)	4,054(98.7)	3,866	48(1.3)
서울	414(10.1)	409(10.0)	4,025	5(0.1)

출처: 보건복지부(2015). 2015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서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핵심 요인인 재정 지원 현황을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에 더해 종사자 처우 문제를 비중 있게 고려하여 지역아동센터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지원금 안에 종사자와 관련된 항목이 매우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지원금이 목적에 맞게 기능하는지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 종사자의 월평균 급여를 살펴보면 2015년 기준 1,316,358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회복지사 급여 기준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표 II-5 종사자 급여 현황

(단위: 명, 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센터장	생활복지사	센터장	생활복지사	센터장	생활복지사	센터장	생활복지사	센터장	생활복지사
종사자	3,523	4,625	3,743	4,864	3,891	5,082	3,957	5,216	4,092	5,298
월평균 급여	1,046,834	1,104,756	1,145,121	1,079,390	1,267,889	1,151,196	1,388,502	1,229,308	1,486,263	1,316,358

* 급여를 받는 종사자에 대해 월평균 급여를 산정함

** 월평균 급여는 개인이 부담하는 4대 보험 및 세금 포함한 급여임

*** 종사자 및 월평균급여 계산시 25명(센터장10명, 생활복지사 15명)이 오류값 입력으로 제외함

출처: 보건복지부(2015). 2015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서

종사자 급여와 이와 관련된 재정 문제는 양질의 돌봄 제공과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또한, 보호자의 경제활동 등으로 인해 돌봄 수요가 존재하는 토요일, 공휴일, 야간 시간대 보호 제공 역시 종사자 처우와 재정 문제가 매우 연관성이 높다. 이러한 종사자 안에는 센터장과 생활복지사 외에도 자원봉사자, 강사, 영양사 등 다양한 직종이 공존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인력 지원과 급여 지원에 대한 투명성 문제도 공공성 강화와 재정 투명성을 위해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다.

표 II-6 기타 인력 현황

(단위: 명, %)

구분	정부지원인력								민간지원 인력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강사		영양사	
	전체		아동복지 교사		공익근무 요원		기타일자리 지원 사업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전체	14,006	100	6,607	100	2,047	100	5,352	100	1,632	100	95,519	100	15,026	100	483	100
서울	1,360	9.7	717	10.8	248	12.1	395	7.4	170	10.4	12,254	12.8	1,745	11.6	678	14

출처: 보건복지부(2015). 2015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서

표 II-7 연도별 토요일, 공휴일 및 야간보호 운영여부

(단위: 개소,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센터수	비율	센터수	비율	센터수	비율	센터수	비율	센터수	비율
토요일 운영여부	전체	3,985	100.0	4,036	100.0	4,061	100.0	4,059	100.0	4,102	100.0
	매주운영	989	24.8	2,041	50.6	2,104	51.8	1,963	48.4	1,899	46.3
	격주운영	861	21.6	278	6.9	204	5.0	146	3.6	105	2.6
	행사시	1,649	41.4	1,190	29.5	1,243	30.6	1,319	32.5	1,399	34.1
	월 1회	154	3.9	108	2.7	108	2.7	103	2.5	81	1.9
	운영안함	332	8.3	419	10.3	402	9.9	528	13.0	618	15.1
공휴일 운영여부	전체	3,985	100.0	4,036	100.0	4,061	100.0	4,059	100.0	4,102	100.0
	운영함	249	6.3	154	3.8	138	3.4	93	2.3	66	1.6
	행사시	2,492	62.6	2,399	59.5	2,522	62.1	2,226	54.8	2,462	60.0
	월 1회	5	0.1	5	0.1	5	0.1	5	0.1	7	0.2
	운영안함	1,239	31.0	1,478	36.6	1,396	34.4	1,735	42.8	1,567	38.2
20시 이후 운영여부 (야간보호)	전체	3,985	100.0	4,036	100.0	4,036	100.0	4,059	100.0	4,102	100.0
	운영함	2,177	54.6	2,095	51.9	2,093	51.5	2,160	53.2	1,874	45.7
	운영안함	1,808	45.4	1,941	48.1	1,968	48.5	1,899	46.8	2,228	54.3

* 토요일, 공휴일, 야간보호는 정부예산 지원여부와 상관없는 지역아동센터 실제 운영현황임

이상의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바탕으로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강화 및 내실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기존의 실태조사에서 도출된 시사점과 현재 서울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그리고 이에 대한 서비스 질 및 평가 현황을 개괄한다. 운영 현황은 재정 지원에 대한 부분과 종사자 처우 등으로 구성되며 서비스 질 평가는 보건복지부의 평가와 서울시의 현장점검(지도점검)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지역아동센터 기존 실태조사 결과¹⁷⁾

기존에 수행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실태 조사가 다양한 편은 아니며 그동안 이루어진 몇몇 실태조사의 경우에도 지역별로 지원현황과 실태가 상이하기 때문에 실태조사 내용과 실태파악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후에 서울시에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는 함의를 도출하도록 한다. 실태조사 중에서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는 전국의 지

17) 보건복지부, 2015; 박신규 외, 2012; 조성숙 외, 2015

역아동센터 전반적인 상황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이다. 먼저 운영현황의 경우 2012년 주5일 수업제로 전환된 이후 매주 토요 운영을 하는 센터는 두 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격주로 운영하는 센터는 오히려 급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역 아동센터가 학교 방과후의 돌봄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학교의 주5일제와 동일하게 운영형태가 바뀌어가는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에서의 급식서비스는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에서 학기 중의 석식 및 방학 중의 중·석식을 제공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방과후 돌봄의 일환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주된 서비스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급식비 지원은 지방비 예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시도 및 시군구별 지원 기준 및 지원정도는 다르지만, 매년 급식비 지원 개소 수 및 지원금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지역별 편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한편 매년 지역아동센터 개소 수 증가와 비례하여 이용아동수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2014~2015년은 이용아동수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별관리아동으로 장애아동, 다문화가정아동, 새터민가정아동 역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다문화가정아동이 79.2% 정도 차지하고 있다. 이용아동들의 특성을 통해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사회 내 돌봄 사각지대 아동들을 위한 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 내실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종사 현황의 경우 센터장 및 생활복지사 모두 40대 이상의 중장년층 비율이 높아 중장년층 여성의 고용진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활복지사의 현 지역아동센터의 근무기간은 2년 미만이 과반수 이상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종사자들의 근무여건을 살펴보면, 센터장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9.5시간, 생활복지사는 9.0시간으로 나타났으며, 토요일운영여부에 따라 주6일 운영센터가 44.6% 정도로, 주6일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종사자의 급여수준은 센터장 월평균 149만원, 생활복지사 월평균 132만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생활복지사들의 높은 이직률과 낮은 근로지속기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의 지원금과 긴밀히 연결되는 재정현황의 경우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결국 종사자(사람)에 의해 제공되는 것으로 센터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비중이 가장 높으며, 대부분의 센터에서 정부보조금을 통해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체를 비롯한 공공기관, 단체 등의 사회공헌활동이 높아지면서 지역아동센터에도 외부기관으로부터의 후원금 수입이 센터 운영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비록 센터 간 편차는 크지만,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외부자원 연계를 통해 프로그램비 또는 강사 지원 등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8】 시도별 지자체 별도지원금 지원현황

(단위: 개소, %, 원)

시도	전체 센터 수	지자체 별도지원금 지원				
		센터 수	시도 비율	전체 센터 수 대비 지원 비율	1개소 당 평균지원금	월평균 지원금
전체	4,102	3,700	100	90.2	7,973,861	664,488
서울	414	379	10.2	91.5	8,915,406	742,951

【표 II-9】 지자체 별도지원금 지원내역

(단위: 개소, %, 중복응답)

구분		센터 수	비율
지자체 별도 지원금 내역	전체	4,102(100.0)	
	종사자처우개선비(종사자교육 및 의료비 등)	2,582	62.9
	시설개보수비	1,138	27.7
	프로그램비(학용품비, 교재비 등)	1,501	36.6
	간식비(급식비를 제외한 간식비)	144	3.5
	차량운행비(차량주유비 등)	112	2.7
	인건비(아동복지교사를 제외한 종사자인건비)	837	20.4
	그 외 항목을 지정하지 않은 지원금(냉·난방비, 추가지원금 등)	2,172	52.9

대구의 지역아동센터 실태 조사에서는 대구지역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별(보호, 교육, 문화, 정서지원, 지역사회 연계) 운영현황을 고찰하고 운영 실태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에 대한 집단 간 평균차이검증을 통해 프로그램의 운영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변수를 파악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별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대구지역 전체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에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을 중심으로 한 면접조사(개별, 집단면

접)를 수행하였다.

양적 조사 결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1일 평균 초과근무시간은 4.25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열악한 업무환경으로 인한 업무스트레스는 평균 23.67(총35점)이었으며, 문항 중 ‘업무에 매달리다 보면 가족과 함께 있을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문항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73.0%로 가장 높았다. 또한 근로지속의사 총 6문항에 대한 평균은 18.87점(총 30점)으로 매우 낮았다. 한편, 예산출처를 살펴보면, 정부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의 전체 평균은 60.9%였으며, 2/3이상의 지역아동센터가 기관운영을 위한 정부지원금 비율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정부보조금 추가지원의 가장 많은 유형은 토요운영지원(43.8%)이었으나, 42.4%의 지역아동센터는 추가지원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개 세부영역별로 지역사회 연계활동 결과에 대한 센터장의 주관적 평가를 분석한 결과, 지역사회 연계활동이 가장 필요하다고 평가하는 영역은 교육프로그램의 성장관리 영역이었고, 이용아동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는 영역은 문화프로그램의 체험활동영역과 참여활동영역이며, 가장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는 영역은 성장관리영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질적 조사 결과를 보면, 먼저 프로그램별 운영 애로사항의 경우 보호프로그램 운영 시 급식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 및 차량운전 인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5대 안전교육과 건강검진 관련해서는 학교와의 연계 강화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프로그램 수행 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과 연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정서지원프로그램 수행 시 원활한 상담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확일적이고 명문화된 지침이 하달되어 안정적인 정서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는데 대구광역시 혹은 구·군 단위의 장애아동 전담센터가 설립·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운영지침과 평가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인력 규모에 비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세부 영역별 프로그램의 양이 방대하여 프로그램 수행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정서지원영역은 명확한 수행기준이 없어 현장의 실정에 맞도록 융통성 있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종사자 인건비 충당을 위한 예산이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고, 지출시 운영비와 인건비가 분리되지 않아 보수체계 정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이 조사에서는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중요하게 제시하였다. 즉 지역사회 연계활동에서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와 지역아동센터 협의체와의 역할이 명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나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에서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위한 운영지침 및 자원연계 리스트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지원될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예산 중 지역사회 연계를 위해 배정된 예산은 없고, 지역사회 연계활동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 기준 및 업무의 명확한 기준과 일관성이 없어 지자체지원금 중 대외활동비 및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예산 항목을 설정하고 예산지침을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를 위해 후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제도 마련을 요청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먼저,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 및 일관된 평가기준 마련,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확대, 특수목적형 장애아동 전담센터 설립·운영, 지역아동센터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가 필요하고 지역아동센터 차원에서는 재정원천의 다양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활동 강화, 종사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필요, 업무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 필요, 지역아동센터 연합회·협의체 정비 및 역할 강화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공적 방과후 돌봄 서비스 현황 고찰을 통해서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중복성과 차별성을 정리하고 지역아동센터 수요·공급의 적정성을 분석함과 동시에 센터의 전문성 강화와 질적 수준 제고를 반영할 수 있는 운영개선 방안을 제시한 전라북도 지역의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의 경우에도 설문조사와 사례조사를 병행하였다.

표 II-10 이용아동 설문조사 조사내용

조사영역	조사내용
일반문항	성별/학년/학교/지역
이용현황	이용경험/이용기간/횟수/프로그램/이용하고 싶은 프로그램
만족도 및 평가	이용의 전반적 만족도/서비스 적절성/편의성과 접근성
이용아동의 생활실태	가족형태/가족 수/가족의 경제수준/학교성적

이 조사에서는 먼저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만족도와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과 개선 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 제작하여서 초등학교 3학년 이

상 이용아동 530명 대상으로 514부를 수집하였고, 센터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지원금을 받는 254개소 센터 중 156부(61.4%)를 수거(전수조사)하였다.

표 II-11 센터장 설문조사 조사내용

조사영역	조사내용
이용아동 및 종사자 현황	1일 이용인원/아동현황/교사 처우/운영시간/월 이용료
운영 및 프로그램현황 개선방안	프로그램 현황/중점프로그램/역점프로그램/센터기능에 대한 인식/센터운영의 전반적 만족도/운영의 어려움/향후의 발전 방안

사례조사는 16사례를 조사하였는데 방과 후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동이 많은 지역을 1차적으로 선정하고, 거점 및 특수목적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하여 센터장 중심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표 II-12 센터장 사례조사 조사내용

조사영역	조사내용
운영개요	운영기간/주체/운영상의 문제점
프로그램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특징과 차별성/방과 후 학교와의 관계
이용대상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특성/향후 이용대상의 확대 문제
지역아동센터의 정체성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기능/프로그램의 발전방향/ 거점과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기능
발전방안	지역아동센터와 지역사회의 네트워킹/수요자 중심의 지역아동센터로의 변화/일반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료 부담 문제

조사 결과 먼저 방과 후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중복성과 차별 문제가 제기되었다. 중복성의 경우 저소득층 아동 대상, 초등학생 중심 운영, 지원서비스의 유사성 문제가 있었고 차별의 경우 공간 구성의 차이, 지역아동센터의 가족관리 지원, 운영추진체계와 예산의 차이, 인력 구성의 전문성에 있어서 차별이 있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수요·공급 적정성을 분석하였는데 지역아동센터 필요개소수가 최소 17개에서 최대 294개로 분석되었다. 단기에 인프라 확대보다는 지역 돌봄서비스 현황 파악 하에 수요가 필요한 아동에게 공급하는 구조로 가야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지

역사회의 방과 후 돌봄지도 구성안을 모색하고 전체 방과 후 돌봄서비스 수요·공급 파악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아동과 센터장을 통한 운영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아동보호와 정서지원 기능을 최우선으로 선택하고 지리적 접근성이 용이하나 물리적 환경 만족도가 낮으며 운영비 지원 확충과 인력의 전문화 요구가 높음이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위의 실태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아동센터는 가장 먼저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기능 재조정이 필요하다. 방과 후 돌봄서비스 수요·공급을 파악하여 지역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기능 조정 필요하다는 것이 주된 결론이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지역 적합형 운영모델을 개발하여 도시형, 농촌형, 거점과 특수목적형 정비와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지역사회의 방과 후 돌봄을 위한 지원네트워크를 수립하고 그 외에 지역아동센터의 관리와 평가체계 재정비, 인력의 전문화 강화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2) 운영 지원 현황

(1) 지역아동센터 추진체계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정부의 서비스 정책이나 민간의 서비스 프로그램을 현실화하기 위한 실현과정으로, 사회복지 대상자의 선정, 자격요건의 판정, 급여내용의 성격에 관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통로이다(김미숙, 2006: p7~8).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돌봄 서비스 제공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 지자체 협조 등의 역할을 하는 지역아동센터는 ■표Ⅱ-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여러 주체들과 연관되어 있으며 지원 기능이 분산되어 있다. 따라서 예산 지원부터 평가 및 점검까지 모든 프로세스에 다양한 주체들이 균형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특히 그 중에서도 지원단은 구성원이 장기간 근속 가능한 환경이기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으며 전체 지역아동센터와 정부의 역할 및 기능을 조정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를 위해 주목할 만하다.

표 II-13 추진체계_보건복지부, 서울시, 자치구의 기능 및 역할

항목		기능 및 역할
보건 복지 부	아동권리과	-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평가 기본계획 수립 - 운영지침 마련, 국고보조 등 사업 총괄 - 아동복지교사 예산지원·사업총괄 및 평가 - 방과후돌봄서비스 추진 기관간의 서비스 연계·조정 등 - 시설정보시스템 개편 및 관리총괄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 종사자 인력 교육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등 시설운영 지원 - 연구개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및 표준화 모델 개발·보급 - 지역아동센터 발 및 시설 평가사업 운영 - 시도지원단 사업조정·평가 및 아동복지교사 운영지원 - 시설정보시스템 관리지원 및 중앙지원단 전산시스템 관리 - 지역아동센터 홍보 및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서울 시	가족담당관	-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계획 등 수립 -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예산 지원 -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 지역아동센터 아동돌봄도우미 총괄 운영(뉴딜일자리) - 방과후돌봄서비스 추진 기관간의 서비스 연계·조정 등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등 시설운영 지원 - 지역아동센터 홍보 및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 조사연구사업 및 정보관리 및 데이터 관리·운영 - 아동복지교사 및 아동돌봄도우미 교육 지원 등 - 특성화 사업개발 및 지원
자치구 담당부서 또는 드림스타트센터		- 자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계획 수립 - 지역아동센터 신고 및 관리·운영지원 - 자치구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신청·확인 -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예산 지원,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 등 - 아동복지교사 채용·노무관리·사용 등 제반 업무 - 지역아동센터 아동돌봄도우미(뉴딜일자리) 채용 및 파견 등 - 자치구 방과후 돌봄서비스 추진 기관간의 서비스 연계 및 조정 등

출처: 서울시(2017). 2017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계획

(2) 지역아동센터 재정 지원 현황

이러한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근거¹⁸⁾로 하여 국비 30%와 시비 70%로

18) [부록 5] 참조

구성된 지원금이 지급된다. 재원과 관련되어 공공재원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거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부담 비율과 예산 수준의 적정성이 정책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김광혁, 2014). 주체별 재정 지원 여부 현황은 다음의 표Ⅱ-3과 같다. 특히 25개 자치구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인적, 물적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목별 지원 여부는 일관되지 않다.

Ⅱ 표 Ⅱ-14 Ⅱ 보건복지부,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 지원 여부

항목		보건복지부	서울시	자치구
기본운영비		○	○	
특성별 운영비	특수목적형	○	○	
	토요운영	○	○	
우수지역아동센터		○	○	
아동복지교사파견		○	○	
평가 및 평가단 운영		○	○	
시도지원단 운영		○	○	
종사자 처우개선비			○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보조(국비 미 지원)			○	△
아동행사비 지원			○	△
공립형센터 기본운영비 50% 추가지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포인트			○	
임대료				△

출처: 1) 보건복지부(2017). 2017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2) 서울시(2017). 2017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계획
 3) 서울시(2017). 지역아동센터관련 지자체 자체사업 현황

2016년 기준 관련 예산액은 35,724,527천원이며 이 중에서 국비가 9,536,080천원 그리고 시비가 26,188,447천원이었다. 특히 2012년부터 서울시에서는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의 시비 지원(100% 시비)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는 2011년 전국 지역아동센터교사협의회(준)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종사자 처우개선 요구가 추동력이 되었다. 2011년 10월 14일 진행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을 위한 기자회견'(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는 전국 지역아동센터교사협의회가 2주간 진행한 서울지역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대상 서명운동 결과가 발표되었다. 2011년 기준 종사자 1,127명 중

844(74%)가 서명에 응했으며 처우개선비 지원에 대한 종사자들의 요구가 매우 강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문 자격증을 갖춘 고학력 전문가들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급여가 현실과 맞지 않고 근무시간과 업무량은 그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이 기자회견에서 강조되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지역아동센터는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평균 근무기간은 2년이 채 안됐으며 또 다른 설문조사(121명의 종사자 대상) 결과에서도 저임금, 낮은 처우, 열악한 근무환경, 과도한 업무 및 근무시간 등의 이유로 인해 지속적으로 근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사를 종사자 73명(60%)이 내비쳤다¹⁹⁾.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²⁰⁾에 근거하여 교사들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금의 현실화와 적정 수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지원 내역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15 세부사업별 지원내역

세부사업		금액(천원)	재원
기본 운영비		24,834,511	국비 30% 시비 70%
특성별 운영비	특수목적형	448,495	
	토요운영	596,735	
우수지역아동센터 ²¹⁾		969,120	
아동복지교사과건		4,569,600	
평가 및 평가단 운영		41,676	
시도지원단 운영		326,800	
합 계		31,786,937	

19)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23109>

20) 제7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사업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3.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21) 「2017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제4장 지역아동센터 예산지원 및 절차(p.67)에 따르면,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산이 4,562백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상반기 「우수 지역아동센터 운영방안」이 확정된 후 지원내용 확인을 통해 예산 파악 필요함. 현재 합계에서 추출된 값임

세부사업	금액(천원)	재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3,000,000	시비 100%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보조(국비 미 지원)	163,200	
아동행사비 지원	368,000	
공립형센터 기본운영비 50% 추가지원	242,34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포인트	164,050	
합 계	3,937,590	

기본운영비는 24,834,511천원으로 2017년 1월 기준으로 406개소에 지원되었다. 지원 금액의 경우 아동 정원 및 법정종사자 수에 따라 월 4,188~5,871천원이 차등 지원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표 II-16 】 아동 정원 및 법정종사자 수에 따른 지원금

신고정원 아동규모		법정종사자	'16년 지원 기준액
10~19인 이하 규모	도시	2명	4,188천원
	읍면	2명	4,340천원
20~29인 이하 규모	도시	2명	4,409천원
	읍면		4,561천원
30인 이상 규모		3명	5,871천원

기존 10인 미만 시설(도시, 읍면)은 전년 운영비 기준의 물가인상률 3% 범위(2,552천원) 내에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결정한다. 2017년 기준 서울시에에는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가 61개소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가 224개소이다.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에는 월 610,000원을 지원하며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에는 월 220,000원을 지원한다.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는 2012년부터 지원이 실시되었다. 이는 학교의 주5일제 전환에 따라 토요 돌봄 수요가 증가되면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다양한 사회집단에 대한 돌봄 수요 증가에 따라 장애, 다문화, 새터민 아동의 특수 전용시설을 운영하거나 특수 아동 비율이 높은 센터에 대해서도 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하였다²²⁾. 이때, 시군

22)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에는 별도로 448,495천원이 지원되었는데 지원개소는 61개소이며 지원금액은 개소당 월 610천원임. 시군구별 지원 시설 수 및 시설 프로그램, 센터규모를 감안하여 차등 지원

구별 지원 시설 수 및 시설 프로그램, 센터규모를 감안하여 차등 지원하되, 단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 3 만원 추가지원 가능하다. 특이사항은 2017년부터 새로운 지원 항목이 신설되었는데 우수지역아동센터에 총 596,735천원이 지원된다. 2017년 상반기 내에 평가지표, 평가방식, 지원대상 등 지원방안을 지자체 및 관련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인 상태이다. 그러나 우수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차등적인 지원은 해당 예산을 일반 지원금으로 성격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하는 상황이며 따라서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에 대한 합의점은 앞으로 해결해가야 할 쟁점 사안 중 하나이다.

또한,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4,569,600천원이 지원되는데 지원대상은 아동복지교사 355명이며 지원금액은 1인당 월 평균 1,120천원이다. 지역아동센터 평가비의 경우 41,676천원이 지원된다. 지원개소는 진입 및 심화평가 대상 시설 92개소이고 시설당 453천원이 지원된다. 이에 더해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운영지원금이 326,800천원으로 이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사용되며 총 5명(단장 1명, 종사자 4명)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중요하게 논의되어 온 종사자 처우개선비²³⁾에 대한 지원금은 시비 100%로 운영비 지원시설의 센터장 및 종사자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다. 시비가 100% 투입되는 또 다른 항목으로 국비 미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63,200천원이 있다. 지원개소는 국비 미지원 시설 10개소(2017년 1월 기준)이며 지원 금액은 정원에 따라 차등지원 된다²⁴⁾.

하되, 단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 15 만원 추가지원 가능함. 한편, 토요일에 운영하는 토요일영 지역아동센터에는 224개소에 개소당 월 220천원이 지원되며 총 596,735천원이 지원됨

23) 지원금액은 1인당 월 250천원이며 총 3,000,000천원의 시비(산출기초: 1,000명 $\times$ 250,000원 $\times$ 12개월)가 투입됨

24) 그 외에도 지역아동센터 행사비(368,000천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50% 추가지원(242,340천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포인트 지원(164,050천원)도 시비 100% 지원임. 지역아동센터 행사비의 경우 지원 기준 월 현재 운영 중인 전 지역아동센터(미지원 시설 포함)가 대상이며 지원 금액은 이용 아동 1인당 16천원 상당임. 또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50% 추가지원의 지원대상은 구립지역아동센터 중 자치구의 신청에 의해 자치구별 1개소 지원이며 시설 유형당 기본운영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원됨.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포인트 지원은 시 복지정책과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포인트 공통 지원기준」을 준용함

표 II-17 서울시 국비 미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항

유형별	정원	상근종사자	개소수	기준액(월)	비 고
소규모형	19인 이하	2인	3	1,500천원	설치 신고일에 따라 시설별 지원개시일 상이
표준형	29인 이하	2인	3	1,600천원	
확대형	30인 이상	3인	4	2,000천원	

이러한 지원금들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매우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기본 운영비 사용기준²⁵⁾이 존재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무비(90% 이하)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이다. 인건비는 종사자 채용 수에 따라 생활복지사의 기본급여 154만원을 지원하되, 기본급여를 상향하여 차등 지급한도 설정 가능하다²⁶⁾. 또한, 시설은 종사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종사자 퇴직 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²⁷⁾. 그러나 이 때 문제로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은 타 사회복지시설과의 인건비 차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²⁸⁾ 센터 간에도 객관적인 기준 없이 급여차이가 크게 날 수 있다는 점이다. 때로는 센터장과 생활복지사 간의 급여 차이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날 수도 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급여 수준²⁹⁾을 책정함에 있

- 25) - 운영비 사용기준 내 (항)시설비는 (관)사무비에 분류되어 있으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 복지 시설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하여 (관)재산조성비-(항)시설비로 편성·집행
- 특수목적형·토요운영 지원시설의 법정종사자에 대한 수당지급 가능
: 수당은 특성별 지원예산액 중 전담인력 인건비 지출 후 남은 예산을 운영비 사용 기준 및 항목 기준으로 책정 가능
: 특수목적형·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에서 법정종사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인건비로 사용하고 회계처리는 (관)사무비 - (항)인건비 - (목)제수당으로 사용하고 회계 처리함
- 특수목적형·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경우 전액 (관)사무비-(항)인건비-(목)급여로 사용하고 회계 처리함
- 정보보호조금의 운영사용기준 비율에 대한 결산은 연1회로 할 수 있으며, 정산(가결산 등)은 분기별 또는 반기별 정산으로 처리할 수 있음
- 26) 다만, 보조금 의존이 높아 기준 준수가 불가능한 시설은 운영위원회에서 기본급여 책정
- 27) 단, 대표자 겸 센터장, 근로기간 1년 미만,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적용 제외
- 2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1호봉은 1,657천원이고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은 사회복지사 1호봉, 1,556천원인 반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인 생활복지사는 급여 수준은 1,540천원 선임(2016년 기준)
- 29)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급여는 평균 1,009,167원으로 세후(4대보험, 갑근세, 주민세를 제외한 급여) 914,598원임.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조사한 결과(2011년 5월 기준)에 따르면 교사의 61.3%는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했고 35.9%는 전문대를 졸업한 고학력 노동자임. 또한 이들

어서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급여 수준이나 생활임금 혹은 센터 간 적정 임금 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운영비에 종사자들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는 한 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에 대해 회계항목 분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³⁰⁾. 그리고 10%이상의 사업비는 반드시 프로그램비³¹⁾로 사용되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더 쉽지 않다. 종사자 처우와 급여, 종사자 전문성, 예산 항목 분리 가능성 그리고 프로그램의 질 등은 모두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표 II-18】운영비 사용기준

관	항	목	기준 및 내역	제한 규정
사무비 (90% 이하)	인건비	급여	- 법정종사자 인건비(사회보험, 퇴직적립금 포함) - 특수목적형,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신규 인력 인건비	- 대표자겸 센터장의 퇴직금 지급 불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2조)
		사회보험 부담금		
		퇴직적립금		
		제수당	- 법정종사자에 대한 상여금 및 제수당 - 특수목적형,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기존인력수당은 제수당으로 처리	
		기타 후생경비	- 상근 종사자 교육비 • 복지부·지자체, 중앙 및 시도 지원단 주관 교육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 기타교육비 지출 불가

교사는 절반 이상(60%)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절반 역시 보육교사(22%), 정교사(11%) 자격을 갖춘 전문가 집단임. 교사가 고학력 전문가라는 사실까지 감안하면 90만원의 급여는 턱없이 낮다는 지적임

30) 인건비 외의 사무비로 운영비가 있음. 이때, 시설의 월세, 각종단체 및 협의회 회비(연대활동비) 등은 보조금에서 지출 불가하며 시설명의 차량의 자동차세는 보조금에서 지출 가능하되, 차량의 취·등록세는 보조금에서 지출 불가함. 개인명의로 차량은 화재·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차량 취·등록세 차량정비유지비, 차량 소모품비는 보조금에서 지출 불가하며(차량유류대는 시설운영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만 지출이 가능하게 되어 있음. 이때 시설비는 시설개보수비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 등을 말함

31) 이용아동의 보호, 교육, 문화 등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관	항	목	기준 및 내역	제한 규정
	운영비	여비	- 종사자 교육여비 • 복지부·지자체, 중앙 및 시도 지원단 주관 교육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 기타교육여비 지출 불가
		수용비 및 수수료	- 사무용품비, 인쇄비, 집기구입비(소모품으로 성질상 자산취득비가 아닌 경우), 도서구입비, 공고료, 수수료, 등기료, 운송비, 통행료 및 주차료, 소규모 수선비, 포장비 등	- 시설의 월세 지출 불가 - 분할납부 구입 불가
		공공요금	- 우편료, 전신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시설의 냉난방 연료비(가스·전기·기름) • 센터 전용공간에서 사용한 비용만 인정	
		제세공과금	- 시설명의 차량의 자동차세·화재·자동차 보험료, 아동 안전관련 보험 • 화재 및 아동 안전관련 보험은 운영비 중 1순위로 집행	- 개인명의의 차량은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지출 불가 - 차량취·등록세 지출 불가 - 각종단체 및 협의회 회비(연대비) 지출 불가
		차량비	- 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 • 차량유류비는 명목상 상관없이 시설운영용으로 사용한 경우 지출 가능(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 작성·관리)	- 개인명의의 차량은 차량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 지출 불가
	시설비	시설장비유지비	- 화장실 등 일부 시설개보수비	- 화장실 등 일부 시설 개보수의 경우 지자체 판단에 따라 사용 가능
		자산취득비	-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	
사업비 (10% 이상)	프로 그램비	보호 프로그램비	- 아동복지후생비(위생 및 의료지원 등)	
		교육 프로그램비	- 학습 및 예체능교육비	
		문화 프로그램비	- 문화·체험 활동비 - 야외현장체험활동비	
		정서지원 프로그램비	- 상담지원(프로그램운영 등), 부모교육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비	-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아동지원 프로그램	

출처: 보건복지부(2017). 2017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3) 평가체계 및 현황

(1) 평가³²⁾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평가를 받으며 이 때 평가주체는 보건복지부이다. 평가는 진입평가, 심화평가, 운영비 지원 특례시설 평가로 구분된다. 평가방법은 자체평가와 현장평가가 병행된다. 평가 대상은 평가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데 먼저, 진입평가는 신고 후 1년 이상 10인 이상 이용아동에 대한 운영 실적이 있는 신규시설로 지자체에서 대상을 선정한다. 심화평가는 정부보조금지원 시설 중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기존 시설로 2014년 진입 및 심화평가 참여시설은 2017년 심화평가에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이는 3년마다 실시된다. 그리고 운영비 지원 특례시설 평가³³⁾는 정부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시설로 특례적용 후 아동·종사자 변동이 없고, 6개월 이상 지속 운영한 실적이 있는 시설(운영비 지원여부만 결정하는 것으로 심화평가와는 별도로 운영·관리하며, 관련 내용은 해당시설에 별도 안내)을 평가한다. 진입평가와 심화평가는 동일지표로 구성하고 배점을 달리 적용하는 한편, 운영비 지원 특례시설 평가 별도의 평가지표를 구성한다. 이들 평가 5개 영역 11개 지표로 평가된다.

표 II -19 지역아동센터 진입·심화평가 배점

지표 체계	평가 영역	진입 배점	심화 배점
5개 영역 (15개 지표)	아동권리영역(1개 지표)	10	10
	운영기반영역(5개 지표)	45	25
	프로그램영역(4개 지표)	20	40
	아동개별지원영역(4개 지표)	20	20
	종합평가영역(1개 지표)	5	5

32) 2017년 평가일정: '17년 1월~12월(진입평가: '17년 2월~7월 / 심화평가: '17년 2월~8월
(운영비 지원 특례 평가: 연중 상시)

33) 운영비 미지원 시설과 시설폐쇄, 종사자나 아동변경이 있는 시설은 운영비 지원 특례 미적용

2015년 진입평가 결과 시도별 프로그램 평가결과 서울시는 14.36점으로 11개 시도(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 강원인천, 대전충남, 전북, 전남제주, 경북, 울산경남) 중에서 강원·인천에 이어 가장 하위권에 머물렀다. 종합평가 결과 역시 대전충남에 이어 전북과 함께 서울은 최하위권이었다. 15개 지표의 합계 점수에서 서울은 76.46점을 받음으로써 전국 11개 시도 중 최하점을 기록했다. 심화평가의 경우는 진입평가보다 양호한 편이지만 시도별 비교를 했을 때 중간 수준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전반적인 내실화를 도모하고 센터 간의 질 격차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2) 현장점검³⁴⁾

서울시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 법령 및 지침상의 설치·운영기준 준수여부, 지원예산의 합법적 지출 등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부정 운영을 예방하고자 서울시 주체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의 추진근거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및 제51조(지도·감독), 보건복지부「2016년도 지역아동센터 현장점검 추진개요」를 들 수 있다. 점검대상은 2016년 기준으로 2016년 9월 현재 신고·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이다. 운영비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운영 시설은 모두 점검 대상이며³⁵⁾ 점검방법은 자치구 간 교차점검 방식을 실시하고 점검조를 편성한다³⁶⁾. 이는 원칙적으로는 2인 1조로 편성되며 인력·재정상 한계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1인 점검도 가능하다.

점검사항은 먼저, 시설운영관리, 종사자관리, 종사자 복지, 아동관리, 운영관리, 회계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그 다음으로 점검지표에 의거 점검항목별 확인서류, 증빙자료 등을 점검한다.

점검지표는 표준점검지표의 경우 일반현황을 제외하며 시설운영관리 등 6개 분야 22개 항목이다. 그 외에 중간점검도 이루어지며 중간점검지표는 표준점검지표 중 일

34) 2016년 서울시 현장점검 관련 내부자료. 2017년도 현장점검 일정은 미정이나 2016년의 경우 10/24~11/30일(약 6주간)까지 진행함

35) 2016년 평가 실시한 시설 포함. 단, 2016년 시설안전점검 이외, 별도 자체현장점검을 기 실시한 시설은 서면점검 가능. 2016년 점검기간: 2016.10.24.~11.30(약 6주간)

36) 2017년에는 교차점검 규정 삭제

부분이다.

표 II -20 지역아동센터 표준점검지표

점검 분야	점검항목 및 점검내용	확인서류/확인내용
시설 운영 관리	① 신고정원 대비 면적기준	등기부등본 등
	② 개별시설 구비(사무실, 조리실, 식당, 집단지도실, 화장실)	현장 확인
	③ 전용공간 및 설치 층수	현장 확인(설치 층수 대비 안전대책)
	④ 조리실·식당위생(아동복지법시행규칙 별표2 기준), 화장실 위생·안전 관리 등	영양사 식단 작성·시행여부, 구입서류, 보건증, 수질검사증, 아동면담 등 확인
종사자 관리	⑤ 신고기준 대비 법정종사자 배치	종사자명부, 인사기록부, 근로계약서 등
	⑥ 종사자 자격 적합성	공개채용 서류, 자격증, 경력증명서, 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 등
	⑦ 종사자 4대 보험 납입	납입증명서
	⑧ 종사자 근무관리	겸직(신청·허가)여부, 근무상황부, 근로계약서 확인, 친족종사자 상근근무 확인 등
종사자 복지	⑨ 퇴직금(연금) 적립 및 적정사용	적립통장 및 연금가입내역 등, 시설장 겸대표자의 퇴직적립금 확인
	⑩ 최저임금(기본급여) 규정 준수 여부	급여명세서(급여입금증) 및 회계 서류 등
	⑪ 종사자 교육관리 및 건강검진	교육명령·수료증(발급시), 건강검진서류
아동 관리	⑫ 아동출석관리	보호자와 확인, 운영일지, 출석부 등
	⑬ 5대 아동 의무교육실시	교육일지, 교육확인서 등
	⑭ 이용아동 등록 현황 등	돌봄결정통지서 등 확인
	⑮ 프로그램 운영의 주제·소재 선정 적정성	교재 및 프로그램 내용 확인
운영 관리	⑯ 시설안전(화재 및 상해보험 등 가입 여부)	보험가입증명서
	⑰ 운영시간 준수 여부 - 1일 8시간, 월~금 포함 주5일 이상, 필수 운영 시간 - 특성별 예산지원에 따른 운영시간 준수	운영일지, 보호자 및 이용아동과의 확인 운영시간 (현장) 확인

점검 분야	점검항목 및 점검내용	확인서류/확인내용
회계 관리	⑱ 통장관리(계정별 통장 개설 및 관리)	정부보조금, 이용료, 후원금, 전입금, 자체부담금, 예수금 통장
	⑲ 후원금 관리(내역 통보, 보고 및 공개)	후원금 관리대장, 회계서류와 통장일치 여부 연1회 이상 통보, 보고 및 공개내역
	⑳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온라인입금 등 적정 사용 및 관리 - 1개 거래처를 정해놓고 1개월 1회 명세서 작성 시 월별 식단표 등과 비교	각종 영수증, 지출결의서 등 회계 관련 서류
	㉑ 운영비 사용한도 준수 및 적정 집행 - 운영관리비(90%미만), 프로그램비(10% 이상) 사용 준수 - 세부내역별 운영비 적정 집행 여부	현금출납장 및 지출결의서 등 회계 관련 서류
	㉒ 이용료 징수 및 집행 - 취약계층 아동 이용료 수령 여부 등 - 이용료 사용의 적절성	보호자 사전동의 및 지자체 보고 여부, 수입·지출결의서 등

2016년 중점점검 지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 -21 지역아동센터 중간점검지표

점검 분야	중점 점검 사항 ³⁷⁾
종사자 관리	○ 법정종사자의 4대 보험 납입여부 - 4대 보험 납입금에 종사자 자부담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민간·개인시설의 대표자겸 시설장 산재 및 고용보험 납입여부 ○ 시설장 상근의무 위반 여부 : 겸직금지 및 허용범위(신청, 허가) 준수 여부 (p.38~39) - 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 상근의무를 준수하더라도 겸직신청을 해야 하며, - 종교 활동 시간과 근무시간을 비교하여 확인 (요일, 주보 등) (p.34, 운영시간) - 근무시간외 경제활동(정기적 강의 등)의 경우에도 겸직보고를 해야 가능
종사자 복지	○ 퇴직금 적립 및 지급의 4대 보험 납입여부 - 1년 미만 종사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반납여부 - 민간·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의 퇴직금(보조금, 후원금 등 예산 내) 지급 여부 으로 대표자 겸 시설장 퇴직적립금 적립 금지) ※ 세부내용은 (p.42~43, 종사자 복무관리) 확인

점검 분야	중점 점검 사항 ³⁷⁾
	○ 최저임금 규정 준수 : 종사자 근로계약서 및 실제임금 확인 - 2016년 지침에 따라 생활복지사에게 150만원지급 여부 등 • 기본급여 월150만원(단, 보조금 의존 높은 시설도 기본급여 90%(월135만원)이상 및 전년도 보수(기본급여+제수당)보다 3%p 이상 인상 지급 • 각종 수당(지자체의 처우개선비, 토요운영 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법정종사자는 자원봉사자가 아님) ※ 기본급여 부적절 집행사례 ▶기본급여에 지자체 처우개선비 포함하여 기본급여로 책정, 종사자 기본급여 제공 후 후원금 등으로 환수 처리 ▶기본급여 중 일부를 식비·교통비 등 비과세로 지출 등
아동관리	○ 아동출석관리 (p.65) - 아동 출결상황 및 신고정원 대비 이용아동(현원) 관리 현황 확인 • (이용아동출석) 종결아동을 이용아동으로 허위보고하는지, 특별한 사유 없이 지침 상 중복이용 불가아동을 이용아동으로 산정하는지 등 확인 • (결석·종결아동처리) 결석 및 종결아동에 대해 결석사유 및 이용종료 의사 확인 및 종결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진행 여부 확인 등(이용의사 미확인 및 일방적인 종결처리, 센터 내 아동서약서 등을 비치하여 서약에 위반되는 경우 종결처리 하는 등의 부정사례 확인 등) • (월 이용아동 산정) 월 운영일수(주5일 기준)의 70% 이상 이용아동 이용아동으로 산정 • (신고정원구간 유지여부) 정원구간 변경시 지침에 따라 정원변경 및 운영비 예산신청 구간 변경 등에 대한 적절한 처리여부 확인
운영관리	○ 운영시간 - 기본운영시간 및 기본운영비 외 별도 예산지원 시설(공립형, 저녁돌봄, 토요운영 등) 별도 종사자 채용여부 및 운영시간 확인 (서면확인 후 별도 현장확인 要)
회계관리	○ 계정별 통장관리 및 영수증 등 투명관리

이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 및 행정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점검결과 활용 및 후속조치 계획의 경우 정책수립과 효율적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즉 지역아동센터 제도 및 운영지침 보완 등 제도개선 실태자료로 활용되며 운영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를 시행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특히 부적정 운영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명령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³⁸⁾. 그리고 후속조치에 대한 보건복지부

37) (괄호)는 2016년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확인 페이지

38)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3조, 제56조, 58조에 따라 행정처분, 보조금반환, 과태료 부과 등

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³⁹⁾ 시설의 위반정도 및 후속 조치에 대한 이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운영 지침에 따라 운영비를 감액 조치한다. 2015년 신고시설의 경우 2017년 운영비 지원을 위한 평가대상 선정에 해당 자료를 활용한다. 그러나 철저한 위반 사항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원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증빙자료들(출석 아동 정원수 등)에 대한 위반 등을 감독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행정사항의 경우 자치구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는데 이때 매칭된 타 자치구의 점검대상 시설 현황을 파악한다. 점검대상 시설에 따른 일정 및 점검인원 등을 확인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자료 요청 시 자치구 상호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현장방문 전 점검지표 및 참고 교육자료 등을 숙지하여 내실 있는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침이 전달된다⁴⁰⁾. 이때 점검계획 및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한다⁴¹⁾. 이렇게 작성된 부분은 충분한 정보공개와 피드백으로 이어져야 하지만 현재는 점검 실시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결산

평가와 현장점검에 이어서 시설 및 지자체는 지역아동센터 예산 사용에 대한 결산을 실시⁴²⁾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 및 시설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시·군·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하는 규정이 있다⁴³⁾.

39) 2017년 운영보조금 지원 기준으로 활용

40) 시설 인근 동주민센터 담당 연계 등 시설 교통편 정보 제공을 협조하여야 하고 점검완료 후 결과를 해당 자치구로 통보함. 시설별로 작성한 현장점검표를 매칭된 해당 자치구 담당에게 전달됨. 그리고 통보받은 자료를 정리하여 서식으로 제출하는 절차를 거침

41) 조치계획에 따른 행정처분 등(실제 이행결과는 2017.1.25.(수)까지 제출

4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의 세입·세출 결산 의무에 따라 시설은 시설 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 년도 3개월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함. 결산보고서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0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함

43)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재하는 것으로 같음

표 II-22 지역아동센터 결산과정

주요 내용	주체	일정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작성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출납 완료시
▼		
결산 보고서의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 -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도 시설회계는 법인 이사회 의결 전 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고 필요 - 법인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에 대해서는 불필요	시설의 장	결산보고서 작성 후
▼		
결산 보고서의 법인 이사회 의결 -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도 포함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로 결산 보고서 확정	법인 대표이사	결산보고서 작성 후
▼		
확정된 결산 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 - 법인은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결산을 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고, 시설의 장(법인이 운영하는 시설도 포함)은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 결산을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다음연도 3개월 이내
▼		
법인과 시설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시군구, 법인,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⁴⁴⁾	시장·군수·구청장, 법인 대표이사, 시설의 장	결산보고서 제출 20일 이내

결산은 세입 세출을 예산의 과목별로 세분하여 실시하고, 결산금액단위는 10원 미만은 절사하며 정부보조금 사용 잔액은 연말 결산 시 반납조치토록 하고, 기타는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한다. 시설보강사업(신축, 증축, 개축, 개보수) 정산보고서는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및 완공건물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장비구입 시는 구입물품 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⁴⁵⁾.

44) 게시판 공고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로 갈음 가능

45) 또한, 보고서 작성 시 작성자의 직·성명을 기재하고, 시설장 직인과 실인을 날인함

(4) 감사

각 지자체에서는 감사를 실시하는데 그 개념은 지자체에 따라 일부 상이하다. 구청장이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감사대상은 지자체에 따라 일부 상이한데 먼저 서울시 자치구 본청 및 보조기관에 대해 감사하고 구 보건소, 동 주민센터, 구금고 및 구비 보조 단체·기관, 구 의회사무국이 모두 감사 대상이다. 여기에 지역아동센터도 대상으로 포함된다. 감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Ⅰ 표 Ⅱ-23 Ⅰ 감사종류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 기능·주 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각 지자체에서는 감사를 진행하는데 그 개념은 지자체에 따라 일부 상이하며 모든 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구청장이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감사대상은 지자체에 따라 상이하다. 그러나 평가와 지도점검 외에는 결산이나 감사 등의 실시에 대한 결과가 어떠한 조치에 대한 강제성을 가지거나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평가 및 현장점검의 내용과 중복을 피하여 결산과 감사만의 특성을 강화하고 이러한 결산과 감사 결과를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과 내실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III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공공성 강화 및 내실화 방안 조사 결과

1. 설문조사
2. 초점집단면접(FGI)
3. 소결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II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공공성 강화 및 내실화 방안 조사 결과

1. 설문조사

1) 조사 개요

본 조사는 서울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서울시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강화와 내실화 방안 마련 관련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운영의 투명성, 재정 및 종사자 처우 개선,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등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전반의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아동센터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대상은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317명이다. 조사는 2017년 3월에 진행됐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로 진행되었다. 지역아동센터는 규모별로 소규모형(이용아동수 19인 이하), 표준형(이용아동수 29인 이하), 확대형(이용아동수 30인 이상)으로 구분되며 장애·다문화새터민 아동의 특수 전용시설을 운영하거나 특수 아동 비율이 타 센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거나 저녁돌봄(20시 이후 또는 중학생 이상 비율이 50% 초과하는 시설)을 실시 혹은 일요일 및 공휴일 운영 등 연장 운영을 하는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가 있다. 또한 2017년 기준 224개소는 토요일을 실시하면서 국비와 시비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 유형이나 특성을 따로 고려한 표집을 하지는 않았으며 전체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422명 모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최종 회수된 유효 대상자는 317명이다.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일반사항, 공공성과 내실화 일반, 재정 운영, 종사자, 프로그램, 정책요구 등으로 구분되며, 주요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Ⅲ-1 설문조사 주요 내용

분류	조사내용
일반사항	☐ 연령, 성별, 최종 학력, 소득, 근무경력 ☐ 운영기간, 소재지, 기관유형, 운영주체, 상근종사자수
공공성 및 내실화	☐ 운영의 공공성과 지역아동센터: 보편성, 회계 투명성, 정보 공개성, 참여성, 사회적 책무성 등
재정 운영	☐ 운영상 어려움, 예산 지원, 위원회, 투명성, 평가 및 점검 등
종사자	☐ 업무 수행 대비 인력 수준, 급여 수준, 경력 및 전문성 등
프로그램	☐ 프로그램 제공시 어려운 점, 정부의 역할, 지역사회 연계활동 등
정책요구	☐ 공공성 강화 및 내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제안

한편, 설문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는 다음과 같다. 연령은 40세 이하가 17.4%, 41세 이상 50세 이하가 36.4%, 51세 이상 60세 이하는 42.6%, 61세 이상이 3.6%이다. 성별은 여성 78.7%, 남성 21.3%이며,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중퇴 포함)이 53.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최종 학위 전공은 사회복지 69.7%, 아동 4.5%, 아동복지 4.2% 순이며 기타의 경우 교육학, 유아교육학, 상담심리학, 신학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57.3%, 보육교사 24.9%, 교원자격증 11.2% 순으로 보유하고 있고, 영양사도 0.4% 차지했다. 기타(6.2%)의 경우 청소년지도사, 건강가정사 등이다. 지역아동센터장 총 근무경력은 평균 6.3년, 지역아동센터 총 근무경력 7.3년이며 현재 지역아동센터 근무경력 6.5년, 사회복지관련 기관 근무경력 9.2년이다. 본인 소득은 월 평균 100만 원 이하가 2.7%, 101만 원 이상 150만 원 이하 38.3%, 151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 53.2%, 201만 원 이상 250만 원 이하 4.7%, 251만 원 이상이 1.0%이다.

특성별로 지역아동센터를 분류해보면, 2016년은 거점형 4.8%, 특수목적형 13.1%, 토요일운영 42.4%, 해당 없음은 39.7%이며, 2017년은 특수목적형 14.5%, 토요일운영 34.7%, 해당 없음 50.8%로 나타났다. 기관유형은 공립형이 3.9%에 불과했으며, 일반형이 96.1%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공공성 담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운영주체에 있

어서 개인이 57.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그 다음으로는 정부기관 1.7%, 사회복지법인 8.3%, 재단법인 8.6%, 사단법인 7.6%, 종교단체 12.6%, 시민단체 2.6%순으로 나타났다. 운영기간은 2년 이상이 95.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용아동 수는 10명 이상 20명 미만 27.8%, 20명 이상 30명 미만 32.0%, 30명 이상 40명 미만 28.8%, 40명 이상 50명 미만이 11.3%이다. 상근 종사자 수는 2인이 55.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3인 36.0%, 4인은 8.4% 이다.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아동복지교사는 월평균 1.8명, 공익근무요원 1.4명, 일자리지원사업 2.2명, 자원봉사자 12.9명이다.

Ⅰ 표 Ⅲ-2 Ⅰ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단위: 명, %)

변수	구분	N(명)	비율(%)
연령	40세 이하	53	17.4
	41세-50세 이하	111	36.4
	51세-60세 이하	130	42.6
	61세 이상	11	3.6
성별	여성	247	78.7
	남성	67	21.3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6	1.9
	전문대학교 졸업(중퇴 포함)	34	11.0
	대학교 졸업(중퇴 포함)	165	53.4
	대학원 석사 졸업	90	29.1
	대학원 박사 졸업	14	4.5
최종 학위 전공	사회복지	216	69.7
	아동	14	4.5
	아동복지	13	4.2
	기타	67	21.6
자격증 (복수응답)	사회복지사	297	57.3
	보육교사	129	24.9
	교원자격증	58	11.2
	영양사	2	0.4
	기타	32	6.2
근무경력 (명, 평균(년))	지역아동센터장 총 근무경력	278(6.3)	
	지역아동센터 총 근무경력	278(7.3)	

변수	구분		N(명)	비율(%)
	현재 지역아동센터 근무경력		267(6.5)	
	사회복지관련 기관 근무경력		244(9.2)	
	복지사 근무경력		128(5.8)	
본인소득 (월평균, 원)	100만 원 이하		8	2.7
	101만 원 이상 150만 원 이하		113	38.3
	151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		157	53.2
	201만 원 이상 250만 원 이하		14	4.7
	251만 원 이상		3	1.0
가구 총 소득 (월평균, 원)	100만 원 이하		3	1.3
	101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		74	31.9
	201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45	19.4
	301만 원 이상 400만 원 이하		47	20.3
	401만 원 이상		63	27.2
특성별 운영 (중복 체크)	2016	거점형	16	4.8
		특수목적형	44	13.1
		토요운영	142	42.4
		해당 없음	133	39.7
	2017	특수목적형	46	14.5
		토요운영	110	34.7
		해당 없음	161	50.8
기관 유형	공립형		12	3.9
	일반형		298	96.1
운영 주체	개인		174	57.6
	정부기관		5	1.7
	사회복지법인		25	8.3
	재단법인		26	8.6
	사단법인		23	7.6
	종교단체		38	12.6
	시민단체		8	2.6
	주민자치위원회, 아파트 운영회 등		0	0.0
	지자체 직영		3	1.0
이용 아동 수	10명 이상-20명 미만		86	27.8
	20명 이상-30명 미만		99	32.0
	30명 이상-40명 미만		89	28.8

변수	구분	N(명)	비율(%)
	40명 이상-50명 미만	35	11.3
상근 종사자 수	2인	173	55.6
	3인	112	36.0
	4인	26	8.4
정부 기타지원인력 및 자원봉사자 수 (월평균, 명)	아동복지교사	1.8	
	공익근무요원	1.4	
	일자리지원 사업	2.2	
	자원봉사자	12.9	
특별시간 이용 아동 수 (월평균, 명)	야간보호 이용	22.3	
	토요 이용	18.4	
	공휴일 이용	15.9	
운영기간	2년 이상	295	95.2
	1년 이상 - 2년 미만	12	3.9
	1년 미만 신고시설	3	1.0
신고년도	2004년 이전	18	5.9
	2005년 - 2008년 이전	126	41.6
	2009년 - 2012년 이전	117	38.6
	2013년 - 2016년 이전	41	13.5
	2017년 이후	1	0.3
소속기관 소재지	강남구	1	0.3
	강동구	7	2.2
	강북구	18	5.8
	강서구	13	4.2
	관악구	23	7.4
	광진구	8	2.6
	구로구	21	6.7
	금천구	21	6.7
	노원구	11	3.5
	도봉구	15	4.8
	동대문구	10	3.2
	동작구	15	4.8
	마포구	9	2.9
	서대문구	7	2.2
	서초구	2	0.6

변수	구분	N(명)	비율(%)
	성동구	8	2.6
	성북구	22	7.1
	송파구	8	2.6
	양천구	21	6.7
	영등포구	19	6.1
	용산구	6	1.9
	은평구	21	6.7
	종로구	8	2.6
	중구	6	1.9
	중랑구	12	3.8

2) 조사 결과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을 운영주체별로 살펴보면 개인이 아닌 운영주체를 가지는 쪽(88.4%)이 더 높은 동의를 보이긴 했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83.8%) 역시 높은 긍정응답을 보였다. 이용 아동 수 별로 살펴볼 때는 30명이상아동이 이용하는 시설(88.7%)이 30인 미만이 이용하는 시설(83.1%)보다 높은 긍정응답을 보였지만 역시 양쪽 모두 높은 긍정응답을 보이고 있다.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응답자의 거의 대부분(90.4%)이 공공성에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으며 10년 미만의 응답자(84.4%) 역시 높은 긍정응답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80%이상의 높은 긍정응답을 보이는 가운데 개인이 아닌 시설, 30인 이상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 10년 이상 경력자가 더 높은 응답을 보였다.

표 Ⅲ-3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

(단위: 명(%))

구분	운영주체		이용아동 수		근무경력	
	개인	기타	30인 이상	30인 미만	10년 이상	10년 미만
필요함	145 (83.8)	122 (88.4)	110 (88.7)	152 (83.1)	47 (90.4)	184 (84.4)
필요하지 않음	28 (16.2)	16 (11.6)	14 (11.3)	31 (16.9)	5 (9.6)	34 (15.6)
전체	173 (100.0)	138 (100.0)	124 (100.0)	183 (100.0)	52 (100.0)	218 (100.0)

운영의 내실화와 공공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체 유형의 응답자가 60%이상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운영주체별로 응답을 살펴보면 개인운영 시설(75.0%)이 그 외 운영주체(73.8%)보다 조금 높은 긍정응답을 보이긴 하지만 차이는 크지 않았다. 부정적인 응답에 있어서도 양 측은 개인(6.8%)이 부정적인 응답을 덜 하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근무경력별로도 10년 이상 응답자(73.9%)와 10년 미만 응답자(73.7%)간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중은 거의 같았다. 이에 비해서 이용 아동 수 30인 이상 시설(86.0%)과 30인 미만 이용 시설(66.5%)은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보통(10.3%:24.1%), 아니다(3.7%:9.5%) 범주의 응답에서도 드러난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이용아동 수가 많은 것이 내실화와 공공성의 상관관계를 강하게 느끼는 영향 요인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의 규모가 커질수록 내실화와 공공성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진다고도 볼 수 있다.

표 III-4 운영의 내실화와 공공성 강화 상관관계

(단위: 명(%))

구분	운영주체		이용아동 수		근무경력	
	개인	기타	30인 이상	30인 미만	10년 이상	10년 미만
상관있음	111 (75.0)	90 (73.8)	92 (86.0)	105 (66.5)	34 (73.9)	140 (73.7)
보통임	27 (18.2)	22 (18.0)	11 (10.3)	38 (24.1)	8 (17.4)	34 (17.9)
상관없음	10 (6.8)	10 (8.2)	4 (3.7)	15 (9.5)	4 (8.7)	16 (8.4)
전체	148 (100.0)	122 (100.0)	107 (100.0)	158 (100.0)	46 (100.0)	190 (100.0)
χ^2	.202		12.761**		.009	

*p<0.05, **p<0.01, ***p<0.001

공공성 강화를 위해 주요한 요인을 묻는 응답에 대해서 개인운영시설의 경우 사회적 책무성(30.6%), 보편성(26.3%), 회계의 투명성(25.6%)을 1순위로, 회계의 투명성(24.5%), 사회적 책무성(23.9%), 보편성(20%)을 2순위로 응답하였다. 기타운영주체가 운영하는 시설은 회계의 투명성(33.1%), 사회적 책무성(28.9%), 보편성(28.9%)을 1순위로, 사회적 책무성(25.4%), 회계의 투명성(24.6%), 참여성(18.6%)을 2순위로 응답하였다. 기타운영주체는 회계의 투명성을, 개인운영시설의 경우 사회적 책무성을 가장 높은 비중으로 응답(30%이상)했다는 차이점을 보인다.

표 Ⅲ-5 공공성 강화의 주요 요인(1순위, 2순위)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개인	기타	개인	기타
보편성	42 (26.3)	35 (28.9)	31 (20.0)	17 (14.4)
회계의 투명성	41 (25.6)	40 (33.1)	38 (24.5)	29 (24.6)
정보의 공개성	12 (7.5)	6 (5.0)	28 (18.1)	20 (16.9)
참여성	16 (10.0)	5 (4.1)	21 (13.5)	22 (18.6)
사회적 책무성	49 (30.6)	35 (28.9)	37 (23.9)	30 (25.4)
전체	160 (100.0)	121 (100.0)	155 (100.0)	118 (100.0)

운영의 공공성 중 보편성 영역을 평가하는데 표준프로그램 운영여부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개인 57.5%, 기타 63.7%, 맞춤형 돌봄 제공 여부의 적절성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개인 41.0%, 기타 36.4%, 종사자 전문성 향상교육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개인 72.3%, 기타 69.4%, 정기적인 기관 자체 평가 실시여부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개인 49.4%, 기타 51.1%로 나타났다. 개인과 기타 운영주체 모두 종사자 전문성 향상교육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표준프로그램 운영여부가 뒤를 이었다.

표 Ⅲ-6 운영 공공성 평가의 적절성_보편성

(단위: 명(%))

구분	표준프로그램 운영여부		맞춤형 돌봄 제공여부		종사자 전문성 향상교육		정기적 기관자체평가 실시여부	
	개인	기타	개인	기타	개인	기타	개인	기타
적절	100 (57.5)	86 (63.7)	64 (37.0)	47 (35.6)	125 (72.3)	93 (69.4)	86 (49.4)	67 (51.1)
보통	63 (36.2)	34 (25.2)	71 (41.0)	48 (36.4)	41 (23.7)	35 (26.1)	70 (40.2)	52 (39.7)
부적절	11 (6.3)	15 (11.1)	38 (22.0)	37 (28.0)	7 (4.0)	6 (4.5)	18 (10.3)	12 (9.2)
전체	174 (100.0)	135 (100.0)	173 (100.0)	132 (100.0)	173 (100.0)	134 (100.0)	174 (100.0)	131 (100.0)

운영의 공공성 중에서 회계의 투명성 영역을 평가하는데 예·결산 심의여부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개인 60.9%, 기타 68.7%, 이용료 통장별도 구비여부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개인 64.3%, 기타 61.4%, 세입세출관리의 전산화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개인 85.1%, 기타 86.6%, 지출 시 전용카드, 계좌이체, 현금영수증으로만 모두 결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개인 77.6%, 기타 83.0%, 센터장이나 담당자의 교육 참여여부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개인 74.1%, 기타 68.9%로 나타났다. 세입세출관리의 전산화가 양 운영주체 모두에서 가장 높은 적절성 응답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지출시 전용카드, 계좌이체, 현금영수증으로만 모두 결제하는 것이 뒤를 이었다. 개인의 경우 둘 사이의 적절성응답 차이가 기타유형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Ⅲ-7 운영 공공성 평가의 적절성_회계의 투명성

(단위: 명(%))

구분	예산·결산 심의여부		이용료통장 별도 구비여부		세입·세출 관리의 전산화		전용카드·이체· 현금영수증으로 만 결제		센터장이나 담당자의 교육 참여여부	
	개인	기타	개인	기타	개인	기타	개인	기타	개인	기타
적절	106 (60.9)	92 (68.7)	110 (64.3)	81 (61.4)	148 (85.1)	116 (86.6)	135 (77.6)	112 (83.0)	129 (74.1)	93 (68.9)
보통	57 (32.8)	33 (24.6)	39 (22.8)	34 (25.8)	24 (13.8)	14 (10.4)	33 (19.0)	19 (14.1)	39 (22.4)	37 (27.4)
부적절	11 (6.3)	9 (6.7)	22 (12.9)	17 (12.9)	2 (1.1)	4 (3.0)	6 (3.4)	4 (3.0)	6 (3.4)	5 (3.7)
전체	174 (100.0)	134 (100.0)	171 (100.0)	132 (100.0)	174 (100.0)	134 (100.0)	174 (100.0)	135 (100.0)	174 (100.0)	135 (100.0)

운영의 공공성 중에서 정보의 공개성 영역을 평가하는데 이용(상담, 프로그램, 식단 등)과 관련된 정보를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대답이 개인 63.2%, 기타 71.1%, 지도점검 및 평가 결과 공개여부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개인 44.8%, 기타 48.9%, 관련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개인 56.3%, 기타 48.5%, 인터넷을 통한 정원, 인력, 이용료 등에 내용공개가 적절하다고 대답한 비율은 개인 59.2%, 기타 53.7%로 나타났다. 이용관련 정보의 정기제공이 두 운영주체 모두에서 가장 높은 적절성 응답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인터넷을 통한 내용공개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낮은 지도점검 및 평가 결과 공개여부에 대해서 부적절 하다는 응답이 개인 10.3%, 기타 16.5%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Ⅲ-8 운영 공공성 평가의 적절성_정보의 공개성

(단위: 명(%))

구분	이용정보 보호자에게 제공		지도점검 및 평가 결과 공개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신속대응		인터넷을 통한 내용 공개	
	개인	기타	개인	기타	개인	기타	개인	기타
적절	110 (63.2)	96 (71.1)	78 (44.8)	65 (48.9)	98 (56.3)	65 (48.5)	103 (59.2)	72 (53.7)
보통	55 (31.6)	34 (25.2)	78 (44.8)	46 (34.6)	67 (38.5)	59 (44.0)	60 (34.5)	50 (37.3)
부적절	9 (5.2)	5 (3.7)	18 (10.3)	22 (16.5)	9 (5.2)	10 (7.5)	11 (6.3)	12 (9.0)
전체	174 (100.0)	135 (100.0)	174 (100.0)	133 (100.0)	174 (100.0)	134 (100.0)	174 (100.0)	134 (100.0)

운영의 공공성중 참여성 영역을 평가하는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정기적인 운영 여부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개인 63.8%, 기타 66.7%, 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여부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개인 54.0%, 기타 57.5%, 의사결정과정에 종사자 참여여부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개인 76.3%, 기타 74.8%, 지역사회 전문 인력의 운영 지원여부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개인 60.3%, 기타 57.1%로 나타났다. 의사결정과정에 종사자 참여여부를 통한 평가가 가장 높은 적절하다는 응답을 보였다. 부적절 응답에서는 개인(6.3%), 기타(7.5%) 모두 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가 가장 높은 모습을 보였다.

표 Ⅲ-9 운영 공공성 평가의 적절성_참여성

(단위: 명(%))

구분	운영위원회 구성 및 정기운영 여부		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여부		의사결정과정에 종사자 참여 여부		지역사회 전문인력 운영 지원여부	
	개인	기타	개인	기타	개인	기타	개인	기타
적절	111 (63.8)	90 (66.7)	94 (54.0)	77 (57.5)	132 (76.3)	101 (74.8)	105 (60.3)	76 (57.1)
보통	56 (32.2)	38 (28.1)	69 (39.7)	47 (35.1)	40 (23.1)	30 (22.2)	63 (36.2)	53 (39.8)
부적절	7 (4.0)	7 (5.2)	11 (6.3)	10 (7.5)	1 (0.6)	4 (3.0)	6 (3.4)	4 (3.0)
전체	174 (100.0)	135 (100.0)	174 (100.0)	134 (100.0)	173 (100.0)	135 (100.0)	174 (100.0)	133 (100.0)

운영의 공공성중 사회적 책무성 영역을 평가하는데 종사자의 고용안정성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근로계약, 4대 보험, 퇴직금 적립 등)이 적절하다는 비율이 개인 81.6%, 기타 88.9%, 지역 내 타 센터와의 협력정도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개인 72.4%, 기타 76.1%, 학교와의 연계정도가 적절하다는 비율은 개인 59.5%, 기타 59.0%, 보편적인 돌봄 역할 수행정도가 적절하다는 비율은 개인 71.3%, 기타 70.4%, 저소득, 취약계층 돌봄 역할 수행정도가 적절하다고 대답한 비율은 개인 83.9%, 기타 80.0%로 나타났다. 개인은 취약계층 돌봄 역할 수행정도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비중이 높았고, 기타는 종사자의 고용안정성 보장을 위한 제도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 두 항목은 개인과 기타 양측 모두 80%이상의 적절하다는 응답을 보인다.

표 Ⅲ-10 운영 공공성 평가의 적절성_사회적 책무성

(단위: 명(%))

구분	종사자 고용안정성 보장제도 마련		지역 내 타 센터와의 협력정도		학교와의 연계정도		보편적인 돌봄역할 수행정도		저소득, 취약계층 돌봄역할 수행정도	
	개인	기타	개인	기타	개인	기타	개인	기타	개인	기타
적절	142 (81.6)	120 (88.9)	126 (72.4)	102 (76.1)	103 (59.5)	79 (59.0)	124 (71.3)	95 (70.4)	146 (83.9)	108 (80.0)
보통	26 (14.9)	9 (6.7)	43 (24.7)	31 (23.1)	56 (32.4)	47 (35.1)	40 (23.0)	27 (20.0)	24 (13.8)	24 (17.8)
부적절	6 (3.4)	6 (4.4)	5 (2.9)	1 (0.7)	14 (8.1)	8 (6.0)	10 (5.7)	13 (9.6)	4 (2.3)	3 (2.2)
전체	174 (100.0)	135 (100.0)	174 (100.0)	134 (100.0)	173 (100.0)	134 (100.0)	174 (100.0)	135 (100.0)	174 (100.0)	135 (100.0)

지역아동센터 운영상 어려움의 정도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개인 78.6%(136명), 기타 71.7%(99명), 30인 이상 75.8%(94명), 30인 미만 74.9%(137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네 가지 유형 모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개인이 기타에 비해 어렵다는 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규모에 따른 어렵다는 응답의 차이가 적었다. 어렵지 않다는 응답은 개인(9.8%, 17명)이 기타(5.8%, 8명)보다 30인 미만(9.8%, 18명)이 30인 이상(5.6%, 7명)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Ⅲ-11 센터 운영상의 어려운 정도

(단위: 명(%))

구분	운영주체		이용아동 수	
	개인	기타	30인 이상	30인 미만
어려움	136 (78.6)	99 (71.7)	94 (75.8)	137 (74.9)
보통	20 (11.6)	31 (22.5)	23 (18.5)	28 (15.3)
어렵지 않음	17 (9.8)	8 (5.8)	7 (5.6)	18 (9.8)
전체	173 (100.0)	138 (100.0)	124 (100.0)	183 (100.0)

지역아동센터 운영상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는 1순위의 경우 개인(93.2%), 기타(69.4%), 30명 미만(76.1%), 30명 이상(77.2%) 모두 재정상황이었다. 2순위로는 개인(56.1%), 기타(49.0%), 30명 미만(53.3%), 30명 이상(51.2%) 모두 인력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운영주체별 차이를 살펴보면 개인은 거의 대부분이 재정상황을 1순위로 응답한데 비해서 기타유형은 상대적으로 인력부족(20.7%)과 공간열악(9.1%)을 1순위로 더 많이 응답하였다. 규모별 차이점을 살펴보면 30명 미만의 경우 인력부족(18.2%), 30명 이상의 경우 공간열악(11.4%) 1순위 응답이 높게 나타난다. 모든 유형에서 1순위, 2순위에서 가장 낮게 응답된 항목은 모두 프로그램 부실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임대료 문제, 행정업무 과다, 이용아동 모집 등이 있었다.

표 Ⅲ-12 센터 운영상의 어려움(1,2순위)

(단위: 명(%))

구분	운영주체				이용아동 수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개인	기타	개인	기타	30명 이상	30명 미만	30명 이상	30명 미만
재정상황	129 (93.2)	84 (69.4)	22 (19.3)	20 (20.8)	88 (77.2)	121 (76.1)	17 (19.8)	26 (21.3)
인력부족	16 (10.3)	25 (20.7)	64 (56.1)	47 (49.0)	12 (10.5)	29 (18.2)	44 (51.2)	65 (53.3)
공간열악	9 (5.8)	11 (9.1)	27 (23.7)	23 (24.0)	13 (11.4)	8 (5.0)	22 (25.6)	27 (22.1)
프로그램부실	1 (0.6)	1 (0.8)	1 (0.9)	6 (6.3)	1 (0.9)	1 (0.6)	3 (3.5)	4 (3.3)
전체	155 (100.0)	121 (100.0)	114 (100.0)	96 (100.0)	114 (100.0)	159 (100.0)	86 (100.0)	122 (100.0)

추가 재정지원이 필요한 항목 중 1순위는 종사자 인건비가 70.9%(17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순위는 임대료가 38.7%(7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장 낮게 나타난 항목의 경우 1순위는 급식비가 0.0%(0명), 프로그램비가 0.8%(2명), 2순위에서는 프로그램비 1.0%(2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표 Ⅲ-13 추가 재정지원이 필요한 항목(1,2순위)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임대료	70 (28.3)	75 (38.7)
프로그램비	2 (0.8)	2 (1.0)
종사자 인건비	175 (70.9)	49 (25.3)
급식비	0 (0.0)	68 (35.1)
전체	247 (100.0)	194 (100.0)

지역아동센터 운영에서 중앙정부(개인 77.9%, 기타 76.7%), 서울시(개인 61.5%, 기타 57.1%), 자치구(개인 46.5%, 기타 45.6%) 모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충분한 예산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순위도 중앙정부(개인 56.3%, 기타 49.6%), 서울시(개인 52.2%, 기타 53.6%), 자치구(개인 40.9%, 기타 35.8%) 모두 종사자 처우 개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주체별로 살펴보면 자치구에선 1순위로는 기타주체는 종사자 처우 개선(28.8%)을, 개인주체는 지역사회연계활성화(22.0%)를 더 많이 응답하였고, 2순위로는 기타주체가 지역사회연계활성화(31.7%)를 더 많이 응답한데 비해 개인은 사회적 인식 및 위상강화(26.0%)를 더 많이 응답하였다.

■ 표 Ⅲ-14 ■ 센터 운영에서 정부의 역할_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1,2순위)
(단위: 명(%))

구분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개인	기타	개인	기타	개인	기타	개인	기타	개인	기타	개인	기타
충분한 예산지원	127 (77.9)	102 (76.7)	24 (15.2)	25 (19.1)	99 (61.5)	72 (57.1)	31 (19.5)	21 (16.8)	74 (46.5)	57 (45.6)	20 (13.0)	20 (16.3)
종사자 처우 개선	24 (14.7)	20 (15.0)	89 (56.3)	65 (49.6)	41 (25.5)	37 (29.4)	83 (52.2)	67 (53.6)	33 (20.8)	36 (28.8)	63 (40.9)	44 (35.8)
사회적 인식 및 위상 강화	11 (6.7)	10 (7.5)	37 (23.4)	35 (26.7)	18 (11.2)	13 (10.3)	31 (19.5)	28 (22.4)	17 (10.7)	12 (9.6)	40 (26.0)	20 (16.3)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1 (0.6)	1 (0.8)	8 (5.1)	6 (4.6)	3 (1.9)	4 (3.2)	14 (8.8)	9 (7.2)	35 (22.0)	20 (16.0)	31 (20.1)	39 (31.7)
전체	163 (100.0)	133 (100.0)	158 (100.0)	131 (100.0)	161 (100.0)	126 (100.0)	159 (100.0)	125 (100.0)	159 (100.0)	125 (100.0)	154 (100.0)	123 (100.0)

2016년도 지역아동센터 총 예산은 30명 이상(76.9%)과 30명 미만(81.9%) 양쪽 모두에서 5천만 원 이하가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30명 미만에선 5천만 원 초과 1억 이하(13.0), 1억 원 초과 1억5천만 원 이하(2.9%), 1억5천만 원 초과 2억 이하(2.2%) 순으로 뒤를 이었다. 30명 이상에선 1억 원 초과 1억5천만 원 이하(8.8%), 5천만 원 초과 1억 이하(7.7%), 1억5천만 원 초과 2억 이하와 2억 원 초과가 각각 (3.3%)을 보였다. 30명

미만에선 2억 원 초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Ⅲ-15 2016년도 총 예산

(단위: 명(%))

구분	30명 이상	30명 미만
5천만 원 이하	70 (76.9)	113 (81.9)
5천만 원 초과 1억 이하	7 (7.7)	18 (13.0)
1억 원 초과 1억5천만 원 이하	8 (8.8)	4 (2.9)
1억5천만 원 초과 2억 이하	3 (3.3)	3 (2.2)
2억 원 초과	3 (3.3)	0 (0.0)
전체	91 (100.0)	138 (100.0)
x2	10.054*	

*p<0.05, **p<0.01, ***p<0.001

현행 예산 항목에 대한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3.8%(253명)이며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4.0%(12명)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Ⅲ-16 예산항목 개편의 필요성

(단위: 명(%))

구분	빈도(%)
필요함	253 (83.8)
보통	37 (12.3)
필요하지 않음	12 (4.0)
전체	302 (100.0)

예산 항목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종사자 인건비 항목 분리가 개인 78.1%, 기타 7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프로그램비 하한 규정 완화가 개인 1.8%, 기타 3.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개인운영주체의 경우 후원금의 임대료 사용 상한 규정 완화에 대한 응답이 24.9%로 기타주체(17.2%)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Ⅲ-17 예산항목 개선의 필요성_항목(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개인	기타	x2
종사자 인건비 항목 분리	132 (78.1)	98 (76.6)	.099
후원금의 임대료 사용 상한 규정 완화	42 (24.9)	22 (17.2)	2.531
급식비 지원금 사용 규제	9 (5.3)	9 (7.0)	.372
프로그램비 하한 규정 완화	3 (1.8)	5 (3.9)	1.242
전체	169 (100.0)	128 (100.0)	-

급식비 항목 중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개인의 경우 1인당 단가조정50.0%(4명), 기타 주체는 타 항목과의 통합 운영이 66.7%(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용 아동 수 30명 이상과 미만 모두 타 항목과의 통합 운영이 50.0%(3명, 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개인운영주체와 30명 이상 시설의 경우 급식비 지원과 장기결석, 종결 신청 아동 출석 연계 투명성 강화(0.0%)가, 기타주체의 경우 1인당 단가조절(0.0%)이, 30명 미만의 경우 친환경급식 제공 여부에 따른 추가 지원과 급식비 지원과 출석 연계 투명성 강화가 각각 12.5%(1명)로 가장 낮은 응답을 보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급식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있었다.

표 Ⅲ-18 급식비 항목 개선의 필요성

(단위: 명(%))

구분	운영주체		이용아동 수	
	개인	기타	30인 이상	30인 미만
1인당 적정 단가 조정	4 (50.0)	0 (0.0)	2 (33.3)	2 (25.0)
친환경급식 제공 여부에 따른 추가 지원	1 (12.5)	1 (16.7)	1 (16.7)	1 (12.5)
급식비 지원과 출석 연계 투명성 강화	0 (0.0)	1 (16.7)	0 (0.0)	1 (12.5)
타 항목과 통합 운영	3 (37.5)	4 (66.7)	3 (50.0)	4 (50.0)
전체	8 (100.0)	6 (100.0)	6 (100.0)	8 (100.0)

투명한 재정을 위해서 국가 지원 예산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센터의 유연한 예산(신축적인 사용)의 수준은 평균 개인 7.1, 기타 7.0, 30인 이상 6.9, 30인 미만 7.2로 센터의 예산 사용이 유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주체와 기타주체의 경우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30인 이상시설이 30인 미만 시설에 비해 덜 유연한 예산을 지향하긴 했으나 역시 그리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표 Ⅲ-19 Ⅱ 정부 통제와 센터의 신축적인 예산 사용의 수준
(단위: 명(%))

구분	운영주체		이용아동 수	
	개인	기타	30인 이상	30인 미만
1	2 (1.3)	3 (2.4)	2 (1.8)	2 (1.3)
2	3 (1.9)	3 (2.4)	3 (2.7)	3 (1.9)
3	2 (1.3)	3 (2.4)	2 (1.8)	3 (1.9)
4	3 (1.9)	7 (5.6)	6 (5.3)	4 (2.5)
5	23 (14.9)	13 (10.5)	15 (13.3)	21 (13.1)
6	17 (11.0)	15 (12.1)	11 (9.7)	20 (12.5)
7	36 (23.4)	26 (21.0)	28 (24.8)	32 (20.0)
8	41 (26.6)	32 (25.8)	31 (27.4)	42 (26.3)
9	14 (9.1)	8 (6.5)	9 (8.0)	13 (8.1)
10	13 (8.4)	14 (11.3)	6 (5.3)	20 (12.5)
전체	154 (100.0)	124 (100.0)	113 (100.0)	160 (100.0)

지역아동센터 실제 운영이 사업계획서·예산서와 연계성 있게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개인주체 65.5% (110명), 기타주체 73.1% (98명), 30명 이상 71.9% (87명), 30명 미만 66.1% (117명)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개인 4.8% (8명), 기타 3.0% (4명), 30인 이상 2.5% (3명), 30인 미만 5.1% (9명)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기타주체가 개인에 비해서 더 높은 체계적인 운영을 보고 하였으며, 30인 이상 시설이 30인 미만 시설에 비해서 더 체계적인 운영을 보고하고 있다.

■ 표 Ⅲ-20 ■ 실제운영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의 체계적 운영 정도

(단위: 명(%))

구분	운영주체		이용아동 수	
	개인	기타	30인 이상	30인 미만
체계적임	110 (65.5)	98 (73.1)	87 (71.9)	117 (66.1)
보통임	50 (29.8)	32 (23.9)	31 (25.6)	51 (28.8)
체계적이지 않음	8 (4.8)	4 (3.0)	3 (2.5)	9 (5.1)
전체	168 (100.0)	134 (100.0)	121 (100.0)	177 (100.0)

지역아동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에 대한 질문 중 정기시행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의 지도점검이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개인 99.4%, 기타 100.0%, 30인 이상 100.0%, 30인 미만 99.4%를 보인다. 평가의 경우 개인 93.3%, 기타 97.0%, 30인 이상 94.1%, 30인 미만 95.4%를 보인다. 결산(정기)의 경우 네 유형 모두에서 100.0% 정기시행 한다는 응답이 나타났다. 감사의 경우 개인 84.9%, 기타 91.5%, 30인 이상 87.8%, 30인 미만 88.3%를 보인다. 정기시행 비중 순서는 결산(정산), 지도점검, 평가, 감사 순이며 개인보다는 기타주체가 평가와 감사 부분에서 정기시행을 더 많이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30인 이상과 30인 미만의 경우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Ⅲ-21 지역아동센터의 체계적 운영_정기시행

(단위: 명(%))

구분		운영주체		이용아동 수	
		개인	기타	30인 이상	30인 미만
지도점검	시행됨	167 (99.4)	135 (100.0)	121 (100.0)	177 (99.4)
	시행되지 않음	1 (0.6)	0 (0.0)	0 (0.0)	1 (0.6)
	전체	168 (100.0)	135 (100.0)	121 (100.0)	178 (100.0)
평가	시행됨	153 (93.3)	128 (97.0)	112 (94.1)	165 (95.4)
	시행되지 않음	11 (6.7)	4 (3.0)	7 (5.9)	8 (4.6)
	전체	164 (100.0)	132 (100.0)	119 (100.0)	173 (100.0)
결산(정산)	시행됨	166 (100.0)	132 (100.0)	119 (100.0)	175 (100.0)
	시행되지 않음	-	-	-	-
	전체	166 (100.0)	132 (100.0)	119 (100.0)	175 (100.0)
감사	시행됨	135 (84.9)	119 (91.5)	101 (87.8)	151 (88.3)
	시행되지 않음	24 (15.1)	11 (8.5)	14 (12.2)	20 (11.7)
	전체	159 (100.0)	130 (100.0)	115 (100.0)	171 (100.0)

지역아동센터의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데 지도점검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개인주체 68.2%, 기타주체 69.5%, 30명 이상 68.9%, 30명 미만 68.7%를 보인다. 평가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개인주체 52.7%, 기타주체 52.7%, 30명 이상 54.6%, 30명 미만 51.4%를 보인다. 결산(정산)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개인주체 71.6%, 기타주체 75.0%, 30명 이상 74.8%, 30명 미만 71.7%였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경우 개인주체 52.2%, 기타주체 63.5%, 30명 이상 57.5%, 30명 미만 56.8%로 나타났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결산(정산), 지도점검, 감사, 평가 순이었다. 기타주체의 경우 감사가 평가보다 더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지만 개인주체의 경우 평가와 감사가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30명 이상의 경우 평가와 결산(정산)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30명 미만의 경우보다 조금(3%) 높았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Ⅲ-22 지역아동센터의 체계적 운영_재정 투명성

(단위: 명(%))

구분		운영주체		이용아동 수	
		개인	기타	30인 이상	30인 미만
지도점검	도움됨	118 (68.2)	91 (69.5)	82 (68.9)	125 (68.7)
	보통임	45 (26.0)	32 (24.4)	29 (24.4)	48 (26.4)
	도움 안 됨	10 (5.8)	8 (6.1)	8 (6.7)	9 (4.9)
	전체	173 (100.0)	131 (100.0)	119 (100.0)	182 (100.0)
평가	도움됨	88 (52.7)	69 (52.7)	65 (54.6)	91 (51.4)
	보통임	60 (35.9)	43 (32.8)	39 (32.8)	64 (36.2)
	도움 안 됨	19 (11.4)	19 (14.5)	15 (12.6)	22 (12.4)
	전체	167 (100.0)	131 (100.0)	119 (100.0)	177 (100.0)
결산(정산)	도움됨	121 (71.6)	99 (75.0)	89 (74.8)	129 (71.7)
	보통임	42 (24.9)	29 (22.0)	28 (23.5)	43 (23.9)
	도움 안 됨	6 (3.6)	4 (3.0)	2 (1.7)	8 (4.4)
	전체	169 (100.0)	132 (100.0)	119 (100.0)	180 (100.0)
감사	도움됨	82 (52.2)	80 (63.5)	65 (57.5)	96 (56.8)
	보통임	62 (39.5)	38 (30.2)	41 (36.3)	60 (35.5)
	도움 안 됨	13 (8.3)	8 (6.3)	7 (6.2)	13 (7.7)
	전체	157 (100.0)	126 (100.0)	113 (100.0)	169 (100.0)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질적 향상 및 운영 내실화에 지도점검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개인주체 48.5%, 기타주체 48.8%, 30명 이상 53.4%, 30명 미만 46.6%를 보인다. 평가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개인주체 46.3%, 기타주체 44.2%, 30명 이상 50.4%, 30명 미만 42.8%를 보인다. 결산(정산)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개인주체 51.3%, 기타주체 53.9%, 30명 이상 57.9%, 30명 미만 49.1%를 보인다. 감사의 경우 개인주체 40.3%, 기타주체 48.0%, 30명 이상 47.7%, 30명 미만 41.1%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고 있다. 모든 범주에서 결산(정산)의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순서에 있어서는 개인주체의 경우 결산(정산), 지도점검, 평가, 감사 순이며 기타주체의 경우 결산(정산), 지도점검, 감사, 평가 순으로 차이를 보인다. 개인주체는 기타주체보다 감사에 도움이 된다고 한 응답이 낮았으며 보통임(48.3%)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30명 이상의 경우 결산(정산), 지도점검, 평가, 감사 순이었고 30명 미만의 경우 결

산(정산), 지도점검, 평가, 감사순을 보이고 있다. 규모별 범주간에 도움된다는 응답이 차지하는 비중상의 순서는 같지만 결산(정산), 감사, 평가, 지도점검 모두에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5%이상 차이를 보인다.

표 Ⅲ-23 지역아동센터의 체계적 운영_서비스 질적 향상 및 운영 내실화에 영향
 (단위: 명(%))

구분		운영주체		이용아동 수	
		개인	기타	30인 이상	30인 미만
지도점검	도움됨	80 (48.5)	63 (48.8)	62 (53.4)	81 (46.6)
	보통임	69 (41.8)	50 (38.8)	41 (35.3)	76 (43.7)
	도움 안 됨	16 (9.7)	16 (12.4)	13 (11.2)	17 (9.8)
	전체	165 (100.0)	129 (100.0)	116 (100.0)	174 (100.0)
평가	도움됨	75 (46.3)	57 (44.2)	58 (50.4)	74 (42.8)
	보통임	69 (42.6)	53 (41.1)	41 (35.7)	78 (45.1)
	도움 안 됨	18 (11.1)	19 (14.7)	16 (13.9)	21 (12.1)
	전체	162 (100.0)	129 (100.0)	115 (100.0)	173 (100.0)
결산(정산)	도움됨	82 (51.3)	69 (53.9)	66 (57.9)	84 (49.1)
	보통임	69 (43.1)	47 (36.7)	41 (36.0)	73 (42.7)
	도움 안 됨	9 (5.6)	12 (9.4)	7 (6.1)	14 (8.2)
	전체	160 (100.0)	128 (100.0)	114 (100.0)	171 (100.0)
감사	도움됨	60 (40.3)	59 (48.0)	51 (47.7)	67 (41.1)
	보통임	72 (48.3)	49 (39.8)	42 (39.3)	78 (47.9)
	도움 안 됨	17 (11.4)	15 (12.2)	14 (13.1)	18 (11.0)
	전체	149 (100.0)	123 (100.0)	107 (100.0)	163 (100.0)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시스템을 유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개인주체 47.5%, 기타주체 53.6%, 30인 이상 50.4%, 30인 미만 50.3%였다. 정기적인 평가 강화의 필요성이 보통이라 응답한 비율은 개인주체 51.6%, 기타주체 37.7%, 30인 이상 49.5%, 30인 미만 43.6%였다. 지도점검의 수시 실시는 필요하지 않다

고 응답한 비율은 개인주체 49.4%, 기타주체 52.0%, 30인 이상 48.6%, 30인 미만 51.5%였다. 민간평가단 제도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개인주체 56.1%, 기타주체 51.6%, 30인 이상 52.3%, 30인 미만 56.4%나타났다. 각 항목에서 정기적 평가강화 필요성 항목의 기타주체(필요하지 않다, 41.8%)의 예외를 제외하고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을 제시하였다. 개인주체는 기타주체보다 현행 시스템 유지에 더 낮은 필요하다 응답을 보였으며 정기적인 평가강화에서 보통임 응답이 더 높게 나오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민간평가단 제도 도입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30인 미만 범주는 30인 이상 범주보다 정기적인 평가강화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더 많이 나왔고 민간평가단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표 Ⅲ-24 운영의 공공성 강화에 필요한 사항

(단위: 명(%))

구분		운영주체		이용아동 수	
		개인	기타	30인 이상	30인 미만
현행 시스템 유지	필요함	77 (47.5)	67 (53.6)	57 (50.4)	86 (50.3)
	보통임	76 (46.9)	47 (37.6)	49 (43.4)	72 (42.1)
	필요하지 않음	9 (5.6)	11 (8.8)	7 (6.2)	13 (7.6)
	전체	162 (100.0)	125 (100.0)	113 (100.0)	171 (100.0)
정기적인 평가 강화	필요함	22 (14.0)	25 (20.5)	18 (16.2)	28 (17.0)
	보통임	81 (51.6)	46 (37.7)	55 (49.5)	72 (43.6)
	필요하지 않음	54 (34.4)	51 (41.8)	38 (34.2)	65 (39.4)
	전체	157 (100.0)	122 (100.0)	111 (100.0)	165 (100.0)
지도점검 수시 실시	필요함	18 (11.5)	24 (19.5)	19 (17.1)	22 (13.3)
	보통임	61 (39.1)	35 (28.5)	38 (34.2)	58 (35.2)
	필요하지 않음	77 (49.4)	64 (52.0)	54 (48.6)	85 (51.5)
	전체	156 (100.0)	123 (100.0)	111 (100.0)	165 (100.0)
민간평가 단 제도 도입	필요함	20 (12.7)	23 (18.9)	18 (16.2)	23 (13.9)
	보통임	49 (31.2)	36 (29.5)	35 (31.5)	49 (29.7)
	필요하지 않음	88 (56.1)	63 (51.6)	58 (52.3)	93 (56.4)
	전체	157 (100.0)	122 (100.0)	165 (100.0)	111 (100.0)

운영위원회를 반기별 1회 이상(운영지침 규정) 개최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개인주체 98.8%, 기타주체 97.8%, 30인 이상 98.4%, 30인 미만 98.3%로 모든 범주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5 운영위원회 개최여부(반기별 1회 이상)

(단위: 명(%))

구분	운영주체		이용아동 수	
	개인	기타	30인 이상	30인 미만
개최함	169 (98.8)	132 (97.8)	120 (98.4)	177 (98.3)
개최하지 않음	2 (1.2)	3 (2.2)	2 (1.6)	3 (1.7)
전체	171 (100.0)	135 (100.0)	122 (100.0)	180 (100.0)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사항에 대한 질문에서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응답이 개인 96.5%, 기타 99.2%, 30인 이상 98.3%, 30인 미만 97.2%로 나타났다.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의 경우 개인 93.6%, 기타 94.7%, 30인 이상 93.3%, 30인 미만 94.4%로 나타났다. 예·결산의 투명한 처리는 개인 98.3%, 기타 98.5%, 30인 이상 98.3%, 30인 미만 98.3%를 보였다. 종사자 처우 및 고충의 경우 개인 85.4%, 기타 84.0%, 30인 이상 86.7%, 30인 미만 83.1%를 보인다.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는 개인 82.5%, 기타 87.9%, 30인 이상 84.3%, 30인 미만 84.8%를 보인다. 지역사회, 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사항이 개인 91.9%, 기타 91.7%, 30인 이상 91.7%, 30인 미만 91.6%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예·결산의 투명한 처리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시설 운영 전반과 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사항이 90%이상의 응답을 보였다. 개인주체와 기타주체의 경우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를 기타주체가 더 많이(5%) 논의주제로 삼는다는 차이를 보인다. 30인 이상과 30인 미만의 경우 거의 유사한 응답을 보였다.

표 Ⅲ-26 운영위원회 논의사항

(단위: 명(%))

구분		운영주체		이용아동 수	
		개인	기타	30인 이상	30인 미만
시설 운영 전반	기록함	166 (96.5)	131 (99.2)	119 (98.3)	174 (97.2)
	기록하지 않음	6 (3.5)	1 (0.8)	2 (1.7)	5 (2.8)
	전체	172 (100.0)	132 (100.0)	121 (100.0)	179 (100.0)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기록함	160 (93.6)	124 (94.7)	112 (93.3)	168 (94.4)
	기록하지 않음	11 (6.4)	7 (5.3)	8 (6.7)	10 (5.6)
	전체	171 (100.0)	131 (100.0)	120 (100.0)	178 (100.0)
예·결산의 투명한 처리	기록함	169 (98.3)	130 (98.5)	119 (98.3)	176 (98.3)
	기록하지 않음	3 (1.7)	2 (1.5)	2 (1.7)	3 (1.7)
	전체	172 (100.0)	132 (100.0)	121 (100.0)	179 (100.0)
종사자 처우 및 고충	기록함	146 (85.4)	110 (84.0)	104 (86.7)	148 (83.1)
	기록하지 않음	25 (14.6)	21 (16.0)	16 (13.3)	30 (16.9)
	전체	171 (100.0)	131 (100.0)	120 (100.0)	178 (100.0)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기록함	141 (82.5)	116 (87.9)	102 (84.3)	151 (84.8)
	기록하지 않음	30 (17.5)	16 (12.1)	19 (15.7)	27 (15.2)
	전체	171 (100.0)	132 (100.0)	121 (100.0)	178 (100.0)
지역사회, 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기록함	158 (91.9)	121 (91.7)	111 (91.7)	164 (91.6)
	기록하지 않음	14 (8.1)	11 (8.3)	10 (8.3)	15 (8.4)
	전체	172 (100.0)	132 (100.0)	121 (100.0)	179 (100.0)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회의록에 기록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개인주체 96.4%, 기타주체 96.9%, 30인 이상 98.3%, 30인 미만 96%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Ⅰ 표 Ⅲ-27 Ⅰ 회의록 기록여부

(단위: 명(%))

구분	운영주체		이용아동 수	
	개인	기타	30인 이상	30인 미만
기록함	163 (96.4)	124 (96.9)	115 (98.3)	168 (96.0)
기록하지 않음	6 (3.6)	4 (3.1)	2 (1.7)	7 (4.0)
전체	169 (100.0)	128 (100.0)	117 (100.0)	175 (100.0)

운영위원회 회의진행의 개선사항 없이 현재 매우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개인주체 33.3%, 기타주체 25.7%, 30인 이상 29.4%, 30인 미만 30.7%, 로 나타났다. 내실있는 센터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논의 내용이 보다 발전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개인주체 24.0%, 기타주체 31.2%, 30인 이상 27.5%, 30인 미만 26.1%로 나타났다. 다른 주요한 비중의 응답으로는 운영위원회 실효성 담보가 개인주체 22.0%, 기타주체 23.9%, 30인 이상 19.6%, 30인 미만 25.5% 응답률을 보였다. 운영주체 별 범주사이에는 개인주체의 경우 현재 매우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기타주체의 경우 논의내용이 발전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응답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규모별 범주 간에는 30인 미만이 30인 이상보다 운영위원회 실효성 담보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Ⅲ-28 운영위원회 회의 진행 개선사항

(단위: 명(%))

구분	운영주체		이용아동 수	
	개인	기타	30인 이상	30인 미만
운영위원회 매우 잘 운영	50 (33.3)	28 (25.7)	30 (29.4)	47 (30.7)
논의 내용을 발전적으로 구성	36 (24.0)	34 (31.2)	28 (27.5)	40 (26.1)
재정 사항 충실히 논의	1 (0.7)	0 (0.0)	1 (1.0)	0 (0.0)
운영위원회 실효성 담보	33 (22.0)	26 (23.9)	20 (19.6)	39 (25.5)
논의 안건 현실화	19 (12.7)	15 (13.8)	16 (15.7)	17 (11.1)
논의 안건 다양화	9 (6.0)	6 (5.5)	7 (6.9)	8 (5.2)
회의록 작성 충실	2 (1.3)	0 (0.0)	0 (0.0)	2 (1.3)
전체	150 (100.0)	109 (100.0)	102 (100.0)	153 (100.0)

예산, 결산(지도점검 및 평가)의 환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개인주체 53.8%, 기타주체 49.3%, 30인 이상 52.8%, 30인 미만 5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운영주체 범주 간에는 개인주체가 기타주체에 비해 환류가 잘 이루어진다는 응답이 높았고 기타주체는 부정적인 응답이 개인주체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용아동 수 범주 간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Ⅲ 표 Ⅲ-29 예·결산 환류 정도

(단위: 명(%))

구분	운영주체		이용아동 수	
	개인	기타	30인 이상	30인 미만
잘 이루어짐	93 (53.8)	66 (49.3)	65 (52.8)	93 (51.7)
보통임	69 (39.9)	54 (40.3)	48 (39.0)	72 (40.0)
잘 이루어지지 않음	11 (6.4)	14 (10.4)	10 (8.1)	15 (8.3)
전체	173 (100.0)	134 (100.0)	123 (100.0)	180 (100.0)

현행 지도점검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추가관리의 필요성 중 수입과 지출의 결과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개인주체 86.6%, 기타주체 86.6%, 30인 이상 83.5%, 30인 미만 88.5%로 높게 나타났다. 30인 이상 시설이 30인 미만 시설보다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성과평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조금(5%)더 높게 나타났다.

Ⅲ 표 Ⅲ-30 지도점검 및 평가결과에 대한 추가관리 필요성

(단위: 명(%))

구분	운영주체		이용아동 수	
	개인	기타	30인 이상	30인 미만
수입과 지출결과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	149 (86.6)	110 (86.6)	101 (83.5)	154 (88.5)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성과평가가 필요	23 (13.4)	17 (13.4)	20 (16.5)	20 (11.5)
전체	172 (100.0)	127 (100.0)	121 (100.0)	174 (100.0)

현재 업무 대비 인력수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30명 이상 64.2%, 30명 미만 72.1%로 두 범주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력수준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30명 미만 시설에서 더 많이 이루어졌으며, 30명 이상 시설에서는 인력수준이 적절하다는 응답(8.9%)이 30명 미만 시설(3.3%)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Ⅲ-31 업무대비 인력수준의 적절성

(단위: 명(%))

구분	30명 이상	30명 미만
적절함	11 (8.9)	6 (3.3)
보통임	33 (26.8)	45 (24.6)
적절하지 않음	79 (64.2)	132 (72.1)
전체	123 (100.0)	183 (100.0)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모두 8시간 이상 상근 규정을 지키고 있는 경우가 개인주체 96.5%, 기타주체 94.9%, 30인 이상 95.1%, 30인 미만 9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Ⅲ-32 8시간이상 상근규정 준수 유무

(단위: 명(%))

구분	운영주체		이용아동 수	
	개인	기타	30인 이상	30인 미만
준수함	167 (96.5)	131 (94.9)	117 (95.1)	178 (96.7)
준수하지 않음	6 (3.5)	7 (5.1)	6 (4.9)	6 (3.3)
전체	173 (100.0)	138 (100.0)	123 (100.0)	184 (100.0)

아동복지교사 파견이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개인주체 80.2%, 기타주체 77.4%, 30인 이상 72.1%, 30인 미만 8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운영주체 간 차이는 크지 않다. 이용자수 범주 간에는 30인 미만 응답자의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30인 이상 응답자에 비해 10%이상 높게 나타났다.

표 Ⅲ-33 아동복지교사 파견의 도움 정도

(단위: 명(%))

구분	운영주체		이용아동 수	
	개인	기타	30인 이상	30인 미만
도움됨	134 (80.2)	106 (77.4)	88 (72.1)	150 (84.3)
보통임	22 (13.2)	20 (14.6)	22 (18.0)	18 (10.1)
도움되지 않음	11 (6.6)	11 (8.0)	12 (9.8)	10 (5.6)
전체	167 (100.0)	137 (100.0)	122 (100.0)	178 (100.0)

종사자(생활복지사) 업무 대비 급여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개인주체 85.5%, 기타주체 90.6%, 30명 이상 93.5%, 30명 미만 8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개인주체보다 기타주체가 5%이상 부정응답이 높았으며 30명 이상 응답자가 30명 미만 응답자보다 10%이상 부정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Ⅲ-34 종사자 업무 대비 급여 수준의 적절성

(단위: 명(%))

구분	운영주체		이용아동 수	
	개인	기타	30인 이상	30인 미만
적절함	7 (4.0)	5 (3.6)	4 (3.3)	8 (4.3)
보통임	18 (10.4)	8 (5.8)	4 (3.3)	22 (12.0)
적절하지 않음	148 (85.5)	125 (90.6)	115 (93.5)	154 (83.7)
전체	173 (100.0)	138 (100.0)	123 (100.0)	184 (100.0)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1순위는 개인주체의 경우 자격제한 강화(32.0%), 포괄적 경력인정(29.6%), 새로운 자격검증제도 도입(21.9%) 순을 보였다. 이에 비해서 기타주체의 경우 포괄적인 경력인정(31.8%), 자격제한 강화(31.1%), 새로운 자격검증제도 도입(25.8%)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는 개인주체의 경우 자격제한 강화(28.1%), 포괄적 경력인정과 새로운 자격검증제도 도입이 각각 26.8%를 보였다. 기타주체의 경우 포괄적 경력인정(29.4%), 새로운 자격검증제도 도입(28.6%), 자격제한 강화(24.6%)순이었다. 이 세 가지 응답 이외에 개인주체는 1순위(13.6%)와 2순위(11.8%)에서 기타주체는 2순위(15.1%)에서 정기의무교육 강화가 10%이상의 응답을 보였다.

■ 표 Ⅲ-35 ■ 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필요사항(1,2순위)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개인	기타	개인	기타
포괄적인 경력인정	50 (29.6)	42 (31.8)	41 (26.8)	37 (29.4)
행정지원전문인력 배치	5 (3.0)	4 (3.0)	10 (6.5)	3 (2.4)
정기 의무교육 강화	23 (13.6)	11 (8.3)	18 (11.8)	19 (15.1)
자격제한 강화	54 (32.0)	41 (31.1)	43 (28.1)	31 (24.6)
새로운 자격검증제도 도입	37 (21.9)	34 (25.8)	41 (26.8)	36 (28.6)
전체	169 (100.0)	132 (100.0)	153 (100.0)	126 (100.0)

종사자의 근무지속성 강화를 필요한 사항으로 1순위는 급여 인상이 84.0%(26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순위는 사회적 위상 강화가 31.0%(95명)로 높게 나타났다.

Ⅲ 표 Ⅲ-36 종사자 근무지속성 강화를 위한 필요사항(1,2순위)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급여 인상	262 (84.0)	28 (9.2)
사회적 위상 강화	16 (5.1)	95 (31.0)
업무강도 완화	16 (5.1)	68 (22.2)
포괄적인 경력인정	11 (3.5)	28 (9.2)
교육연수 등 자기개발 기회 제공	7 (2.2)	87 (28.4)
전체	312 (100.0)	306 (100.0)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0.0%(279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Ⅲ 표 Ⅲ-37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

(단위: 명(%))

구분	빈도(%)
필요함	279 (90.0)
보통임	24 (7.7)
필요하지 않음	7 (2.3)
전체	310 (100.0)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제도 마련(혹은 개선)이 필요한 영역은 급여라고 응답한 사람이 251명 (84.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통합적인 인력 풀 제도 운영이 28명 (9.4%), 다양한 교육기회 19명 (6.4%) 순으로 나타났다.

Ⅲ 표 Ⅲ-38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_제도

(단위: 명(%))

구분	빈도(%)
급여	251 (84.2)
통합적인 인력 풀 제도 운영	28 (9.4)
다양한 교육기회	19 (6.4)
전체	298 (100.0)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급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 중 호봉제 도입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3.2%(156명)로 높게 나타났다. 기본급 인상은 30.4%(75명)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 표 Ⅲ-39 ■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_급여제도 개선방향
(단위: 명(%))

구분	빈도(%)
호봉제 도입	156 (63.2)
기본급 인상	75 (30.4)
수당 인상	8 (3.2)
수당 항목 다양화	6 (2.4)
성과연봉제 도입	2 (0.8)
전체	247 (100.0)

지역아동센터에서 대상자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할 시 어려운 점 1순위는 재정적 어려움 47.4%(146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는 담당자의 과다한 업무가 17.6%(53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 표 Ⅲ-40 ■ 프로그램 제공 시 어려운 점(1,2순위)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재정적 어려움	146 (47.4)	51 (16.9)
담당자의 과다한 업무	75 (24.4)	53 (17.6)
아동의 관심 및 의욕 부족	15 (4.9)	19 (6.3)
이동수단 부족	14 (4.5)	31 (10.3)
센터 내의 프로그램 진행, 체험 공간 부족	14 (4.5)	37 (12.3)
전문성 부족	14 (4.5)	34 (11.3)
공교육 기관과의 프로그램 중복	10 (3.2)	20 (6.6)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 부족	5 (1.6)	9 (3.0)
센터에 대한 인식 부족 및 편견	5 (1.6)	10 (3.3)
학부모의 인식차이 및 협조 부족	4 (1.3)	6 (2.0)
교육자료 부족	3 (1.0)	2 (0.7)
지역사회 내 인적, 물적 연계자원 부족	2 (0.6)	20 (6.6)
장애 아동 보호 및 관리	1 (0.3)	3 (1.0)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지침 부족	0 (0.0)	6 (2.0)
전체	308 (100.0)	301 (100.0)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 1순위는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 모두 예산지원 87.3%, 73.2%, 69.7%인 것으로 나타났다. 2순위의 경우 중앙정부는 표준 운영 매뉴얼 개발 및 보급 27.3%로 나타났으며, 서울시는 종사자 연수 및 훈련 강화 25.3%, 자치구는 지역아동센터의 인식 개선 노력 2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일자리파견 근로자의 질 향상, 적극적인 지역의 자원 발굴 및 연계, 전문 프로그램 진행할 인력 지원 등이 있다.

【표 III-41】 양질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정부의 역할_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
(단위: 명(%))

구분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예산지원	267 (87.3)	31 (10.6)	224 (73.2)	28 (9.5)	209 (69.7)	31 (10.8)
표준 운영매뉴얼 개발, 보급	14 (4.6)	80 (27.3)	21 (6.9)	65 (22.0)	7 (2.3)	36 (12.5)
지역아동센터 인식 개선 노력	14 (4.6)	68 (23.2)	15 (4.9)	68 (23.0)	28 (9.3)	73 (25.3)
운영지침과 평가기준 일치	8 (2.6)	57 (19.5)	21 (6.9)	37 (12.5)	13 (4.3)	38 (13.2)
종사자 연수 및 훈련 강화	2 (0.7)	39 (13.3)	22 (7.2)	75 (25.3)	21 (7.0)	65 (22.6)
우수 사례발굴과 정보공유	1 (0.3)	18 (6.1)	3 (1.0)	23 (7.8)	22 (7.3)	45 (15.6)
전체	306 (100.0)	293 (100.0)	306 (100.0)	296 (100.0)	300 (100.0)	288 (100.0)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필요한 개선 사항으로는 현실성 있는 재정확보 및 지원이 9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연계자원 확대를 위한 체계구축 87.8%, 센터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편견 해소 87.7%, 외부 인적자원 확보 및 활용 8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자치구 내 지역아동센터 지원기관 개설, 타 복지관과의 재정의 형평성 보장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나타났다.

표 Ⅲ-42 양질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개선사항

(단위: 명(%))

구분	필요함	보통임	필요하지 않음
현실성 있는 재정보조 및 지원	294 (94.5)	15 (4.8)	2 (0.6)
외부 인적자원 확보 및 활용	269 (86.5)	40 (12.9)	2 (0.6)
중앙정부의 매뉴얼화된 지침 필요	187 (60.1)	98 (31.5)	26 (8.4)
자치구 재량지원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가능성	243 (78.6)	54 (17.5)	12 (3.9)
공교육 기관과의 프로그램 중복 해소	239 (76.8)	68 (21.9)	4 (1.3)
센터 간 우수 프로그램 공유	238 (76.5)	69 (22.2)	4 (1.3)
센터 간 연합활동의 활성화	227 (73.2)	76 (24.5)	7 (2.3)
종사자의 역량강화	258 (82.7)	50 (16.0)	4 (1.3)
지역사회 연계자원 확대를 위한 체계구축	273 (87.8)	36 (11.6)	2 (0.6)
운영지침과 평가기준의 일관성 확보	256 (82.3)	50 (16.1)	5 (1.6)
센터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편견 해소	272 (87.7)	36 (11.6)	2 (0.6)
장애아동 전담센터 설치운영	230 (74.2)	65 (21.0)	15 (4.8)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연계활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1.9%(28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Ⅲ-43 지역사회 연계활동의 필요성

(단위: 명(%))

구분	빈도(%)
필요함	282 (91.9)
보통임	23 (7.5)
필요하지 않음	2 (0.7)
전체	307 (100.0)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수행된 지역사회 연계 활동 중 인적 연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6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 외의 기관 연계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6.1%, 홍보가 47.6%, 학교 연계가 41.5%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44 지역사회 연계활동의 지속성 정도

(단위: 명(%))

구분	지속적임	보통임	지속적이지 않음
홍보	149 (47.6)	124 (39.6)	40 (12.8)
인적연계	204 (65.2)	94 (30.0)	15 (4.8)
학교 외의 기관연계	175 (56.1)	103 (33.0)	34 (10.9)
학교 연계	130 (41.5)	116 (37.1)	67 (21.4)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역할 중 중앙정부 및 서울시 1순위는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허브기관 설치 및 운영이 25.8%, 2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자치구 1순위는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공동사업 개발 및 지원이 2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순위로는 중앙정부 및 자치구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지원(후원)기관에 대한 혜택 증대가 각각 23.8%, 33.9%, 서울시의 경우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공동사업 개발 및 지원 27.8%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내실화를 기하기에도 벅찬 인력이기에 지역사회 연계를 발전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관련 지침의 필요 등이 있었다.

표 Ⅲ-45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_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

(단위: %)

구분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네트워크 허브기관 설치 및 운영	25.8	17.0	27.7	13.5	22.5	10.1
구체적인 운영지침 제시	22.1	15.3	15.9	7.6	10.9	7.7
관심 증대와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	20.1	22.1	16.9	26.0	22.5	24.5
지원(후원)기관에 대한 혜택 증대	19.8	23.8	18.2	25.0	20.1	33.9
공동사업 개발 및 지원	12.1	21.8	21.3	27.8	23.9	23.8
전체	100.0					

주관식(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는 종사자 인건비 인상(현실화)이 14.8%(71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인건비 분리 13.6%(65명), 호봉제 실시 및 경력 인정 11.9%(57명), 종사자 처우 개선 7.9%(38명), 양질의 종사자 교육 기회 및 자료 제

공 7.5%(36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46 기타 의견

(단위: 명, %)

구분	N(명)	비율(%)
인건비 인상(현실화)	71	14.8
인건비 분리	65	13.6
호봉제 실시 및 경력 인정	57	11.9
종사자 처우 개선(수당, 상여금, 복지혜택, 근무환경 등)	38	7.9
양질의 종사자 교육 기회 및 자료 제공	36	7.5
운영비 인상(현실화)	32	6.7
조리사 인건비 분리 및 추가지원	19	4.0
인력 지원 확대	18	3.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준 보장(급여 체계 단일화)	18	3.8
급여 테이블 마련	17	3.5
급식비 규제 완화	12	2.5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 필요	11	2.3
행정 업무 간소화	10	2.1
운영비 사용 규제 완화(임대료 지출 등)	10	2.1
프로그램비 인상	8	1.7
종사자 자격 및 자격증 강화	8	1.7
급식비 인상	7	1.5
프로그램비 별도 책정	6	1.3
공간 지원 및 확보(공공시설 무상임대 방안 마련)	5	1.0
친환경 급식 지원	4	0.8
프로그램비 사용의 자율권 보장	4	0.8
지도점검 강화	3	0.6
회계 체계 강화(회계의 투명성 방안 마련)	3	0.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예산 편성, 후원금 사용 규정 완화	3	0.6
시스템 일원화(통합시스템 마련)	3	0.6
지역사회 간 자원 연계	3	0.6
공립화를 통한 공공성 유지	2	0.4
급식비와 급식도구(식기 등) 구입비 분리	2	0.4
청소년 인원이 반영된 운영비 차등 지원	2	0.4
운영지침과 평가기준의 일치	2	0.4
전체	479	100.0

*기타: 급식 담당교사 파견, 대상자의 폭을 모든 아동으로 확대, 교육에 대한 실적요구 중단, 표준화된 간판홍보 지원, 사회적 공동체와의 협력 강화, 정책위원회 활성화, 지역아동센터 거점기관 필요, 외부 시찰 및 모니터링 도입, 법정기부금 기관 지정을 통한 자원연계 활성화 도모, 자치구 행정의 유연화, 지역사회 자원 연계 시 지자체 개입 필요 등

3) 소결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센터장들은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이러한 공공성 강화는 내실화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사회적인 책무성과 회계의 투명성이 중요한 공공성 강화의 주요 요인이라고 보았다. 사회적 책무성을 위해서 종사자 고용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세입세출 관리를 전산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센터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센터장이 다수를 차지했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재정 상황이었다. 추가재정이 필요한 항목은 주로 종사자 인건비와 임대료 부분이었다. 지자체는 종사자 처우개선과 충분한 예산 지원을 해야 하며 예산 항목 개편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특히 종사자 인건비 항목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또한 우수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금은 절대평가를 해야 하고 지원 대상 센터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서울시의 현장점검과 보건복지부의 평가 그리고 결산 및 감사는 대부분 센터들에서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었다. 재정 투명성에 도움이 가장 많이 되는 것은 결산(정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결산에 대한 피드백은 보통 수준에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으며 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인력 충원의 필요성 역시 마찬가지로 요구도가 높았다. 종사자 전문성을 위해서는 행정지원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경력을 포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종사자들의 근무지속성을 강화하려면 급여를 인상해야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이는 프로그램 제공시 어려움으로까지 이어지는데 담당자 업무가 과다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워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한 센터장이 많았다. 종사자 급여에 대한 호봉제 실시 요구는 기본급 인상보다 높게 나타났다. 결국 프로그램 질 향상, 운영의 공공성 확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사자에 대한 급여 인상과 행정업무 분리 혹은 감소 그리고 재정의 투명한 운영 및 관리인 것으로 보인다.

2. 초점집단면접(FGI)

1) 조사 개요

센터장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FGI를 실시하였다. 특히 센터장 외에도 현장에서 아동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아동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생활복지사와 현장 지도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을 면접 대상에 포함하였다.

센터장은 서울시 소재 지역아동센터장 6명을 조사하였으며 조사 시기는 2017년 6월이다. 조사 대상 선정은 센터 운영 주체가 구립, 법인, 개인이 모두 포함되었으며 센터 규모를 적절하게 분배하였다.

표 Ⅲ-47 지역아동센터장 특성

사례	센터 운영주체	상근종사자 수	이용아동 수
1	구립	2인	29인 이하
2	법인	3인	29인 이하
3	개인	2인	19인 이하
4	개인	3인	49인 이하
5	개인	2인	29인 이하
6	법인	3인	39인 이하

조사 대상이 된 종사자는 서울시 소재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3명이며 조사시기는 센터장 조사와 같은 시기인 2017년 6월이다.

표 Ⅲ-48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특성

사례	연령	현 센터 근무경력	센터 운영주체	상근종사자 수	이용아동 수
7	48세	1년 7개월	법인	3인	39인 이하
8	53세	7년 6개월	개인	2인	29인 이하
9	44세	5년 3개월	개인	2인	29인 이하

이에 더해 자치구 담당 공무원¹⁾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25개 자치구 중 특화된 센터를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센터수가 많은 자치구를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서울시 자치구 지역아동센터 현장점검 담당공무원 3명을 조사하였다. 조사 시기는 센터장, 생활복지사와 마찬가지로 2017년 6월이다.

2) 조사 결과

(1) 급여 체계의 불합리성과 인건비 보장의 어려움

센터장들은 예산(항목, 인건비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문제를 호소했는데 특히 인건비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운영비에서 프로그램비, 4대보험, 퇴직적립금, 생활복지사 최저 급여를 책정하고 나서 운영비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으로 센터장 급여를 책정하는데 이로 인해 센터장의 급여가 센터마다 차이가 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생활복지사들의 급여 역시 업무 강도나 업무 성격과 연관되지 않고 센터의 사정에 좌우되게 된다. 생활복지사의 경력에 따라 차등 임금을 지급하는 센터의 경우에는 경력 있는 생활복지사의 임금이 신입 생활복지사보다 높기 때문에 이들을 고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생기기도 한다.

“종사자들 154만원이라는 급여를 정해놨잖아요. 그러니 먼저 거기에다가 맞추고, 4대 보험, 퇴직적립금, 운영비 10%까지 빼놓고 그 다음에 센터장 급여를 책정을 해요. 그런데 저희 센터는 센터장이 생활복지사보다 근무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토요일도. 왜냐하면 생활복지사들이 대개 그만두기 때문에 그런 처우를 배려를 해줘야 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센터장들의 어떤 급여기준을 전혀 마련해 주지 않고 있고 이걸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하죠.” 〈사례2〉

“처우를 적어도 경력 인정을 못해준다 하면, 아니 우리 관리호봉은 아니잖아요. 센터장 관리호봉이예요 관리자 호봉. 관리자 호봉이라는 거는 저런 용역하시는 분들의 급여체계에 우리가 들어가 있더라도, 이걸 말도 안 되는 거예요.”〈사례1〉

“(그 안에서) 선임하고 초임은 또 구별을 해야 되니까, 그걸 계산해서 주고 나면 센터장 급여를 가져갈 게 없는 거야.” 〈사례6〉

1) 공무원 인터뷰는 내용상 신분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에 정책 방향 및 함의에 포함함

결국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센터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별도로 보장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 항목에서 인건비가 별도로 분리되어야 함을 모든 센터장들이 강하게 주장하였다. 인건비가 보장된 후 종사자들이 모두 안정된 상태에서 운영비가 현실적으로 다시 책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명확하게 인건비가 보장이 돼야 하고 운영비 보장이 돼야 되는 거지, 그냥 통 쳐서 보내고 너희 알아서 해 그러면 생활복지사 154만원 기준 맞춰줘라 그거는 사회복지사 1호봉 기말수당, 정근수당, 무슨 수당 붙이면 (거기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10년 이상의 생활복지사들은 (받고) 그렇게 (일)하고 있던 말이에요. (중략) 우리는 1학년부터 중등, 고등까지 있는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초등만 보는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그러면 이 선생님들의 업무량은 비교할 수 없어요.” 〈사례1〉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한 거는 인건비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예요). 인건비를 많이 (주지 못하고), 기본 연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례3〉

“운영비와 인건비를 분리해서 움직여주는 것이 가장 저는 현장에서 투명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중략) 그거는 좀 필수적이지 않을까.” 〈사례6〉

“운영비가 90:10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90%가 인건비예요 지원해준 운영비 중에, 그러면 10% 가지고 최소한 20명의 아이들을 5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그러면 1인당 서비스 단가가 안 나와요.” 〈사례1〉

“보건복지부에서 154만원이라는 그 가이드라인을 줬을 때는 무슨 생각으로 줬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그 가이드라인을 줬을 때는 그에 준하는 예산을 내려주고 써야 되는데 이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사례6〉

“(운영비와 인건비를) 분리하면 아 이 사람들 너무 고생하는 거에 비해서, 노동하는 시간에 비해서 임금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아 이거 개선해야 겠구나 그런 인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분리를 하다 보면 운영비가 얼마 나오고 노동임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례8〉

또한 현재 인건비 책정은 최저 권장 임금만 정해져 있을 뿐 센터별로 자율적으로 급여를 책정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경력 인정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임금체계는 종사자들의 높은 이직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었으며 직업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아동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돌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초과근무 수당 등을 포함하여 인건비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복지사 간의 형평성도 중요하며 일관된 급여 체계를 통해 센터장과 생활복지사 간의 합리적인 급여 수준 책정도 필요하다.

“사회복지관에 최소한의 1년직 사회복지사가 그 다음 해에 2호봉 올라가고 3호봉 올라가는 것처럼 적어도 지역아동센터도 경력 인정해주고 호봉제 적용해 주고 (해줘야 해요). 그 다음에 학교 돌봄 교사들도 다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는 출장비도 1원도 없죠.” 〈사례1〉
 “저희 센터장님은 20년이 넘는단 말이죠. 그 선생님(센터장)하고 저하고 그렇게 (급여)차이는 많이 나진 않아요. 만약에 복지관의 호봉제로 따지자면 차이가 많이 나야 되는데, 훨씬 저보다 전문성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나뉘져 버리면 확실히 차이가 날텐데 뭉뚱그려 나오니까 정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례9〉

“임금을 분리한다는 속내는 뭐냐 하면은, 우리도 정확한 호봉제라 할지 정확한 급여 테이블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비가 그 직원 급여와 함께 애기되지 않도록, 거거는 조금 좀 둔하게 오른다 할지라도, 좀 동등한 어떤 연차 수에 따른, 이런 느낌을 저희가 좀 받는다고 하면 자존심도 안상할 것 같고.” 〈사례7〉

“급여가 꼭 어린이집이 나 유치원 선생님들 이런 수준으로 비교되는 차원이 아니라 각각의 생활복지사들 급여만 비교해 보셔도 답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례7〉
 “우리가 토요일날 보통 9시 반에 나와요. 토요 프로그램 운영하고, 오후에 야외프로그램 나가면 보통 4시에 끝나요 오후에, 그럼 4번, 토요 4번 4회 하면서 결국 수당이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10만원 나옵니다.” 〈사례8〉

“시간외 수당이라는 것도 애매한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일주일이면 시간외가 너무 많이 발생이 돼요. 제가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덧셈을 해보진 않았지만 어마어마한 초과시간... 집에 가면 11시 12시가 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행사가 있거나 그럴 때는 말할 수 없고요.” 〈사례7〉

(2) 협소한 공간과 센터 장소 선정의 어려움

센터 안정화의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임대료 문제로 나타났다. 임대 공간 문제는 비단 임대료 뿐만 아니라 분쟁시 법적 보호장치 미비, 서울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공간 규제(노래방 관련 규제 등)로 인한 장소 선정의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자치구마다 지원금에 대한 사용 규정이 상이한데 이 때 지원금과 후원금을 임대료, 인건비로 사용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곳도 다수 존재한다.

“후원하는 기업들도 줄어 들고, (후원을) 한다고 해도 딱 지정후원으로 프로그램비만 (후원 해요). 인건비라든지, 임대료(월세) 그런 건 전혀 쓰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온 (기준인)건지 모르겠지만,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월세로 얼마 만큼 쓸 수 있는 거를 느슨하게 열어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다 규제를 하고 기업들도 다 막아놓고 있어서 해라 그러니 적은 월급을 센터장은 책정을 하고, 후원이 계속 줄어 들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월급에서 빼서 월세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례2>

“업무로 해야 될 일들이 산처럼 쌓여있는 그 상황에서도 월세를 벌려고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실습생들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산적으로 나라에서 현실화시켜주지 않는 한은 계속 사회복지사들, 센터장들 인력 뭐 모든 것들이 소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나가다 보면 그게 결국엔 아동들한테 미치거든요.” <사례2>

“초기에 운영할 때는 모든 게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설에 대한 공간 마련부터 설치 뭐.. (예전에는) 2년 동안은 운영비 지급이 없었어요. 지금은 1년 지나면 시비가 일정 부분 지원되지만, 운영비 없이 2년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만 지역아동센터의 복지업무를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구조, 이런 것들을 다 거쳐서 어쨌든 저는 열악하지만 조금 더 안정적인 공간을 위해서 대출받고 해서 아주 저렴한 전세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 사실은 되게 공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무척 애를 먹고 있는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건물에 대해서 지금 경매가 들어온 상황이에요.” <사례3>

“개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큰 교회에서 운영하는 곳, 법인 이런 데 아니고는 사실은 개인 센터장이 전적으로 그 부분(공간마련)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불합리해요). 항상 전세도 쉽지 않고 월세를 몇 십만 원씩, 7-80만 원씩 감당을 한다는 게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공간에 대한 안정적인 부분들이 (지원)되지 않으면 운영에 있어서 존립(과 같은)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사례3>

“자치구에서는 유희 공간에 대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우선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어도 그건 매뉴얼이고 항상 구에서 하는 얘기는 바늘 하나 꽃을 유희 공간이 없다. 마인드인지 아니면 정말로 없기도 해요.” 〈사례3〉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왔었어요. 건물이 갑자기 팔리면서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법 인에서도 딱 설상가상으로 재정적으로 엄청 안 좋아진 거예요. 구에서는 (센터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재정이 힘들어지니까 어떤 지원도 안 해줘요. (중략) 아무리 백방 뛰어도냈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법인에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종교단체에서 저희 소식을 듣고 그럼 너희도 이쪽 총 한 부분을 무상으로 지원해주겠다. 그 대신 너희들이 인테리어 비용은 구해서 해라. 그러다가 정말 서울시 중앙지원단, 서지협(서울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전부 얘기하고 여기저기 프로포절 쓰고 해서 한 군데 됐어요. 그것도 1300(만원)정도. 그걸 가지고 이제 필요한 것만, 난방, 도시가스 이것만 딱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페인트부터 시트지, 창 모든 것들을, 선생님들하고 이사하는 것까지 부모님들, 애들하고 싹 저희가 한 달 안에 했었거든요.” 〈사례2〉

임대 관련 분쟁 발생시 복지시설이라는 특성상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법적인 최소한의 보호장치나 자치구 차원의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5년 전에 다 계약도 하고 확정일자도 다 받고 했지만, 경매가 들어와도 순위가 앞 순위였는데 지금 복지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도 안 되고, 상가임대차보호대상에서도 제외가 돼있더라고요. 복지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맨 뒤로 순위가 가니까 지금 경매가 계속 진행되면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장치, 이런 법적 마련이 시급하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사례3〉

(3) 구립 운영 전환의 장점과 구립, 민간 운영 센터의 형평성 문제

구립 센터는 구에서 직접 운영함으로써 공간적인 안정이 있으나 센터장이 고용되어 있는 종사자 신분이고 지나친 민원제기나 평가 등으로 인한 후속 조치 등에서 강제성이 개인 센터보다 높은 등 장단점이 공존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 공공성과 센터 안정화 그리고 내실화를 이룬다는 측면에서 구립 센터에 대한 만족도와 선호도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 구립 센터의 단점으로는 종사자들이 주기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과 민원에 매우 민감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부분들은 현장의 아동들을 위한 평가나 민원이라기보다는 행정적인 성격이 강하다.

“똑같은 사회복지사업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와 사회복지관, 학교 방과 후 전담교사나 시간제 교사들보다 저희가 처우가 너무너무 열악하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 돌봄하고 비교했을 때 거기 전담제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이제 무기계약 전환이 돼서 지사복(지역사회복지사)들도 공무원 전환이 거의 됐죠. 그래서 계약에 대한 고용의 불안정은 없어요. 그러나 저희 구립 같은 경우는 공공성 강화 부분에서 저희가 계약직이에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하고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래서 평가점수에 미달되면 계약이 안 돼요” <사례1>

“구립은 왜냐면 소유가 구예요. 시설을 지어주고 그 안에 모든 집기를 다 집어넣는 거야. (중략) 구립이다 보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우리가 시설을 이용할 때 개인이 운영하는 거는 불편해도 참고 뭐 해도 참는데 구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바로 구에다 전화하거든요. 그 과가 무슨 과인지 상관없어요. 그냥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을) 올리고 전화하고 다 해요. 그럼 그건 바로 시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례1>

“단지 운영의 안정성 이런 것만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의 나름대로의 운영에 있어서의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 공간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하고 자치구 직영과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큰 틀에서 여타의 고민들 속에서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중략) 강제성이나, 어쨌든 평가란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미쳐요), (중략) (평가기준이) 현장의 내용들을 많이 담아내기 보다는, 그 틀을 딱 정해놓고 (진행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구립 운영확대) 그 부분들은 심도 깊은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례3>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또 있는 거예요. 구립으로 전환할 때, 이게 구립으로 해줄 수밖에 없다고 법제화가 된다면 구에서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남아있죠.” <사례6>

- 구립 센터의 장점으로 지역사회 돌봄이 가능하다는 점과 쾌적하고 안정적인 장소가 확보 가능하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게 언급되었다. 운영의 안정화는 아동들에게도 종사자들에게도 바람직하다.

“(도서관 공간을 지역아동센터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 거는 책이 있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낙인감이 없다는 거예요. 도서관으로 들어오면서 그냥 자유롭게 (활동이 가능해요).

복합시설에서는 (음악활동 같은)부분은 좀 축소되더라도 또 다른 부분에서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는 거라든가 어른들하고 자유롭게 그냥 지역 주민들하고 아무렇지 않게 (지내는 것), 동네 엄마 친구, 그 다음에 친구 엄마가 내 보호자가 되고 뭐 이런 개념이 막 어우러지니까 그런 부분은 되게 좋아서 사실은 어려운 센터들은 계속 민간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조건, 환경 이런 게 된다고 하면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례1〉

“구립은 운영비를 주는 거잖아요. 바로. 그럼 이제 기존 기관과의 형평성 같은 것에 (어긋나죠), 이제 한 1년 운영한 기관들, 지금 이미 받고 있는 기관들은 괜찮은데 애매하게 7개월 운영하거나 1년 3개월 운영하고 있는 이 기관들을 어떻게 살려줄 거냐, 구립 하에서 다 지원해 줄 거냐.” 〈사례4〉

“임대료에도 노출이 돼 있고 장소에 대한, 공간에 대한 것도 부심이 돼 있는 상태에 만약에 구립으로 전환을 시켜준다. 그러면 저는 1순위로 신청할 거 같아요. (중략) 일단 급여가 딱 확정이 되고, 운영비가 딱 나오니까 센터장으로서 마음껏 아이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례6〉

- 공간점점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구립센터의 자율성

“관에서 이렇게 (지원)할 때는 면적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해요).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한 게 보건복지부 지침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분명히 지침이 있고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공간에 대한 점검은 안 온다는 거죠. 운영비도 바로 지급이 되고, 민간 같은 경우는 2년이 지나야 (운영비가 지원돼요). 2년 동안 자부담에 맡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같은 국민인데 이걸 뭐 자치구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그 때부터 (바로 지원해)주고, 민간이 만들었다고 해서 2년 후에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이걸 무슨 평가 잣대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사례1〉

- 법인 운영의 단점으로는 지나치게 복잡한 행정 절차가 있다.

“법인이라고 이름은 이렇게 걸려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가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되는 법인들이 있다는 거죠. (중략) 법인으로 돌리고 싶다고 해도 법인도 법인같지 않은 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나라에서 고민해 봐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개인 시설이 더 잘하는 데가 많아요. 왜냐하면 법인은 출장 나갈 때 공문으로 품위서 써야 되고 진짜 병원도 제대로 못 가요. (중략) 센터장으로 직책은 (되어)있지만 결재 대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애들을 돌봐야 되는데 그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계 다르잖아요. 법인회계 다 있죠. 결산 다시 해야 되고 센터 것 다시 해야 되지. 정말 법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애들을 돌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어떤 규제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사례2〉

- 법인 운영의 장점으로는 기업과의 연계가 수월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이는 결국 재정 안정과 연결된다.

“기업에서는 개인 시설로 지원을 하게 되면 개인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규제하고 있어요. 법인만 가능, 우선 지원 뭐 이런 식으로 개인 안 된다는 그런 조건들이 많아요. (중략) 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훨씬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쉽게 줘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인건비 금액보다 훨씬 높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도 안 해요.”
〈사례2〉

“저희 혼자 임대료를 하던 거를 이사들이 각출해서 어느 정도 부담해 주니까 재정적인 면으로는 조금 안정이 되죠.” 〈사례6〉

- 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간 운영에 대한 보완책으로 인력이나 현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금 지원보다는 운영을 정상화하고 아동 돌봄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일차적인 바람은 기존에 있는 민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이걸 네가 했으니까 네 것이 아니라, 운영비를 주고 있으면 국가잖아요. 그럼 거기를 좀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게 우선이지 않을까.” 〈사례1〉

“초창기 인력지원을 (해주고) 그게 이제 정상운영이 된 다음에는 계속 지원할, 계속 근무를 할 거냐 여부는 다음 부차적으로 논의를 하고, 인력을 지원해 주면, 돈으로 주는 건 아니지만,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일 할 사람을 보내주면 그 한 사람의 인력으로 (운영이 되고), 그리고 운영비 나올 때부터는 그 때 다시 판단하면 되잖아.” 〈사례4〉

(4) 돌봄 아동의 질적 특성과 행정 업무를 고려한 적정 인력 수 재산정 필요

현재 아동수 대비 규정되어 있는 상근 종사자 수는 현장의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으며 이에 대한 증원을 통해 양질의 돌봄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 상근 종사자가 아닌 지원 인력들은 질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인력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요구도 높았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 중에서 집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학교 방과후 돌봄 등에 비해 더 많다. 또한, 행정 업무 역시 생활복지사와 센터장이 모두 처리해야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직무 분석을 통한 적정 상근 인력 수 재산정이 필요하다.

“(가장 필요한 것은) 우선돌봄에 대한 적정인력 수 확보예요. 저희가 29인 이하에는 센터장 하나, 생활복지사 하나 주잖아요. 학교는 20명에 전담교사 하나에 보조교사 있고 시간제교사가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강사 다 들어와요. 그만큼 예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프로그램 강사 지원비 하나도 안 해주잖아요. (중략) 기타 지원인력 말고 학교에 20명에 2, 3명 불듯이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로 (해야 해요). 그래야 센터장이 회계든 뭐든 행정적인 업무에 전념하고 대외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거지, 센터장도 아이들을 봐야 되고 행정업무, 회계업무 다 그러다 보면 애들 사실 (생활복지사) 한 명이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종사자들이 얼마나 힘든가 (생각해보세요). (중략) 아이들 수에 맞는 종사자가 배치가 돼야 (돼요). (중략) (현재) 정말 아이를 잘 케어할 수 있을 만큼의 인력이 들어가느냐, 책임지고 맡을 수 있는 인력이냐가 문제인 거죠. 이런 기타 일자리 인력, 아동복지교사 인력, 저희는 사실 자원봉사자로도 가능할 수 있어요.” 〈사례1〉

“운영비와 종사자는 그 구간에 끼어 있잖아요. 그거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누가 그걸 49인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바보처럼. 그 구간을 합리적으로 나눠주거나 종사자 배치가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례4〉

“20인 넘어가면 두 사람으로 힘들어요. 그럼 그 구간을 넘기고, 그 다음 구간을 또 종사자를 배치하고 이런 것도 필수라고 봐요 사실은. 저희가 정말로 세 사람이 힘들어요. (중략) 그 구간도 그렇고 아이들 수에 비해서 종사자 배치도 좀 촘촘해야 되지 않을까.” 〈사례6〉

상근 종사자 외에 현재 지원되고 있는 인력들은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여부 측면에서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근 종사자가 아닌 경우 해당 인력의 권한, 센터 평가 점수 등에 제약이 많고 업무 지속성이 없는 단기 종사자이기 때문에 아동을 돌보는 업무나 행정 업무 모두에서 한계가 크다는 점이 문제이다.

“지침에 아동복지교사 혼자서 뭘 할 수도 없고 생활복지사나 센터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 교사 혼자 아이들을 케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종사자 입장에서는 그 선생님까지도 우리가 돌봐야 되는 입장이예요. 아이들하고 같이. 이런 인력이 해마다 늘어나요. 지금 하반기에 아동복지교사 추가 증원한대요. (중략) 그러나 이 분들은 1년 단위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왔던 분이 다음에 올 수도 있지만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늘 새로운 선생님을 보내고 맞고, 이게 아이들, 어린 애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가장 안 좋다고 하면서도 가장 안 좋은 인력배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례2〉

“초창기에는 (퇴직교사 파견) 그게 굉장히 좋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보편화 되면서 경력단절 여성들로 파견을 해주니까 불협화음이 많은 거예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그런 여성이 오시면 조금 이제 센터하고 밀접하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가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자리로 오는 거죠. 접근 자체가.” <사례6>

“(한 사람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센터에다 예산을 주면 센터에서 쓸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안건이 하나 있었어요.” <사례6>

지원 인력들은 권한에 한계가 있고 따라서 이들로 인해 상근 종사자들에게 오히려 업무 부담이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지원 인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예산을 배정해주거나 아니면 인력풀 관리를 철저하게 해줄 것을 요구 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상근 종사자 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진행 시) 종사자가 없으면 이 선생님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평가 받을 때 아무 점수를 못 받아. 우리가, 종사자가 들어가서 거기에 개입을 해야 되고 진행했던 거 결과 이 모든 것을 다 종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례1>

인력 지원에 대해서는 상근 종사자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인력 풀을 자치구나 별도 센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질 보장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어떻게 보면 교사의 성향에 따라서 생활복지사가 말씀드리기 참 곤란한 상태의 (아동복지) 교사가 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뭔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선생님이 오셔야 저희한테 도움이 되지 이 분들은 오셨다가 손님처럼 계셨다가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례7>

“한 해 선생님 잘못 오시면 아이들 전부 수학 싫어요 이라고 다니는... 그래서 아동복지교사는 저도 해봤지만 그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것 보다는 오히려 센터에서 보조교사로 사용할 수 있는 상근 교사, 그런 지원이 조금 더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례7>

“인력의 다양성을 구축하고 계셨다가 연 초 같은 때 센터별로 (필요 인력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잖아요. 근데 이게 아동복지교사는 딱 정해져 있는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사례7>

“서울시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런 취지로 우선 선발되는 교사가 뭐냐면 장애인 그 다음에 연장자, 저소득층 그렇게 뽑기 때문에 사실 아이를 지도하실 능력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조금은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것 같아요). 정말 4년제 사회복지전공자들이 교사 실습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공급이 맞아 떨어질 수도 있고, 아까 (교사 채용을) 센터장 재량껏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도 있고, 아이들은 또 젊으니까 소통도 잘 되고.” 〈사례8〉

“시니어클럽이라고 그런 데와 연계돼 있잖아요. 은퇴한 선생님들 계속 하고 있거든요. 어르신들하고. 근데 너무 소통이 잘 되시더라고요.” 〈사례9〉

“모든 게 업무 편중이 돼 있어요. 그러더라도 동등한 위치에서 뭔가 하면 되는데 뭐라 그럴까요, 위시되는 것들은 전부 센터장의 어떤 공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에서는 그렇다고 유치하게 계속 제가 또 내세울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맥이 풀리고 이 일을 내가 계속 하면 실제로 그 끝이 뭘까 이런 느낌이 들고.” 〈사례7〉

“결국은 아동 위한 사업인데, 아동 위한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소진되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아동한테 피해가 간다는 거예요.” 〈사례8〉

공공 인력풀 마련에 대한 요구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의 인력풀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어차피 아는 사람을 통해서 뽑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인력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오히려 제대로 된 어떤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의 풀이 있으면 거기서 저희가 파견도 받고 (하면 좋겠어요)” 〈사례4〉

소규모로 운영되는 센터 특성상 생활복지사들이 시간적·공간적으로 휴식하기 힘든 환경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호소하였다. 이는 종사자 소진과도 연결되는 문제이며 이것이 아동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들에 대한 생활지도, 학습, 생활 등 다양한 종류의 돌봄이 극소수의 종사자를 통해 수행되는 지역아동센터는 업무를 누군가가 대체해주거나 쉬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약이 큰 편이다.

“제가 연차, 월차 사실 쓸 수는 있는데 쓸 수가 없는 환경이 돼버렸어요 솔직히. 왜냐면 직원은 나 혼자예요. (중략) 내가 빠지면 누가 대체를 해 주냐. 월차? 우리 재작년에 지적 받았어요 구청에서. 왜 월차 안 쓰냐. 누가 안 쓰고 싶어요 솔직히? (중략) 센터장 제외하

고 실제 직원 1명 아니면 2명인데 무슨 연차를 쓰고 월차? 그건 아니죠. 제대로 만들어 놓고 뭔가 쓸 수 있게끔 환경 만든 다음에 쓰라고 해야지. 그러고 나서 우리가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아이들한테 양질의 교육이나 양질의 케어를 할 수 있다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쓸 수 없는 환경 만들어 놓고 써라” 〈사례8〉

“제가 한 1주일 쉬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하늘나라 얘데요. 예를 들면 하루라도 몸이 좀 안 좋거나 이러면 정말 참고 나오는 것이 마음 편한 이런 느낌이 되는 거고요. (중략) 감히 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가를 좀 쓸게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 거예요.” 〈사례7〉

“저희도 처음에 연차 쓰는 게, 월차 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 선생님 둘밖에 없으니까 힘들긴 했지만 이제 서로.. 왜냐면 소진이 되면 아이들한테 이 스트레스가, 말이 좋게 나가 지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 그래도 우리가 좀 그럴지언정 아동복지교사 선생님 오시는 날에는 좀 쉬거나.” 〈사례9〉

“밥 먹는 시간도 점심시간 1시간이 어떻게 보장되니까? 12시 40분이면 1학년들이 도착하는데, 그러면 12시에 거기에서 밥을 먹기 시작해도 먹다가 뛰어 내려가는 경우도 많고.” 〈사례7〉

“밥 먹으면서도 생활지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손 씻기, 양치질 그런 기본적인 거.” 〈사례9〉

“본인 공간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 공간은 없어요. 그런 데도 있어요. 진짜 먹는 거까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예 밥을 안 먹는 생활복지사 선생님들도 계세요.” 〈사례9〉

“공간 문제도 있고, 뭐 쉬는 공간도 없고. 정말 생활복지사 마음 편하게 어디 한 번 쉴 수가 없는 공간이고, 마음도 안 되고, 애들은 애들대로 엉망이에요 엉망 솔직히. 그런 측면에서 우리 처우개선? 정말 마음 놓고 쉬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례8〉

“대체인력 제도가 생겼거든요. 거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단절되는 이런 분들 대체인력 해주거든요. 장기휴가 때 대체인력 해주시잖아. 파견해 주거든요. 그 제도 거기서 시급이 7천원 이에요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센 거야.” 〈사례4〉

(5)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 지향의 방과후 돌봄의 중추 역할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일반 아동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현장 종사자들은 일반 아동이 일정 비율 이상 있는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와

아동 간의 학습 효과 그리고 상호 영향적인 측면, 종사자들의 돌봄 업무 강도 등 모든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아이들은 사실 줄고는 있으나, 주는 반면에 그 아이들을 우리가 케어할 때 예전에는 1인 5명, 10명을 할 수 있었다 하면, 그만큼 아이들이 굉장히 유했었다고 하면 현재의 아이들은 1,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ADHD부터 분노조절까지 굉장히 혼자 그 아이 하나에 교사 하나가 집중해야될만한 아이들이 한 센터에 네댓 명은 있어요.” <사례1>

“(일반아동을 포함하는 문제는) 결론을 말하자면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어떤 롤모델이 될 만한 일반 아동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례2>

“아이들은 계층 구분하지 않잖아요. 그냥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저소득과 일반 아동이 어우러졌을 때 시너지는 무엇인가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푸근해 진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거를 종사자와 둘이서 굉장히 감동받았던 거거든요. 애들이 놀면서 그 안에서 너무 편안해진 거예요. (중략) 이게 저소득층만 몰려있을 때는 아이들이 서로 여유가 없다 그러나, 그런데 일반 애들은 약간의 어떤 여유는 있더라고요.” <사례1>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 소득계층을 일반으로 확대해서 확 열어주고. 그래서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걸 다 희망해요.” <사례4>

“말이 지역아동센터잖아요.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잖아요. 근데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중략) 그 문턱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그래야 애도 오고 애도 오면서 자연스럽게 나 지역아동센터 가. 이것이 자유로운 공간, 나 거기 가서 활동해라는 것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사례6>

“(일반아동까지) 다 열었을 때가 훨씬 더 서로에게 좋은 기능이 많아요. 센터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마을도 그렇고 전체가 나아가는 방향도 그렇고. 취약한 아이들만 모아서 개네들을 우선 보호할 필요는 있지만, 우리가 센터에 그럼 개네들은 빼고 일반 아동만 받고 그렇지 않는다고요. 우선순위를 두면 되지. 우선순위를.” <사례4>

다만 일반 아동을 포함할 시에는 이용료 등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어야 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아동에 대한 방과후 돌봄에 공백이 없도록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일반 아동도 전액 무료 이런 거는 좀 모순이에요. (중략) 그러면 봐봐. 못 사는 가정은 계속 못 살게 되고, 문제는 잘 사는 사람은 학비도 안 나가겠다. 그리고 서울 뭐 장학지원 거기서는 그러면 사교육비를 어떻게 장학지원금으로 내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사는 거야.” <사례2>

“일반 아동이 있는 건 좋은데, 일반 아동도 저소득하고 똑같이 무료 이용에 대한 고민은 하셔야 된다는 거지. (중략) (또한) 지역 현황을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사례1>

“사실은 지역아동센터가, 즉 복지가 보편적으로 가야 되는 건 맞긴 하지만. (또) 일반 아동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역과 센터의 특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준점을 뒤야 되긴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일반 아동을 열어놓아도 다 대상 아동이에요. 그만큼 지역에서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아동이 상담을 오면 제가 머뭇거리죠. 왜냐하면 정말 어려운 친구들이 계속 문의전화 오고 이러는데 그 친구 대신 이 일반 아동이 와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일반 아동의 비율을 두는 거는 공감하지만 저는 그래도 어쨌든 우선적인 아이들의 비중을 높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사례3>

일반 아동을 포함하는 문제는 지역사회에 지역아동센터가 뿌리내리는 데에도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이며 지역아동센터 관련 공간을 아동복합시설화 하는 등 개방된 공간 특성을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떤 공간이 있고, 이거를 지역아동센터만 이용시설로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좀 개방해서 아동복지시설 같은 그런 개념의 시설이, 그래서 밥 먹는 애들도 있고, 노는 애들도 있고, 공부하는 애들도 있고, 특별히 좀 더 보호되는 친구들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를 그 안에 같이 기능하게 하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아이들을 다, 누구나 다 조건 없이 올 수 있게, 문화의 집처럼 이용하게 하고, 그런 걸 권역으로 좀 거점화 시켜주면 어떨까.” <사례4>

“구청장님이랑 담당 주무관이랑 잘 맞아서 돌봄, 지역아동센터 하면 낙인감을 없애고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편안하게 돌봄을 이용할 수 있을까. 부모들도 편안하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도서관 쪽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00구는 좋은 사례로 아직도 계속 그런 거 같아요.” <사례1>

(6) 급식 투명성 확보 문제

급식은 현재 단체 급식으로 배달 형식을 통해 공급하기도 하고 직접 조리해서 제공하기도 하는데 두 가지 방식 모두 장단점이 존재한다. 단체 급식은 지역아동센터 예산 투명성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급식비 항목에 대한 투명성 확보에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이다.

“사회적 기업에서 도시락을 배달을 해줘요. 벌크형으로, 식판이랑 다 주고 저희는 배식만 하고요 다시 다 가져가요. 그런데 맛은 좀 떨어져요. 구립은 지금 두 개 센터 외에 다 하고 있어요. 민간에서도 하고 있어요.” <사례1>

그러나 단체 급식을 반대하는 입장의 주장은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먹이는 것보다 직접 집밥처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세운다.

“저희 같은 경우 급식을 생협(생활협동조합)에서 곡을 받아요 식재료를, 거의 식재료를 친환경 유기농으로 주 단위로 아니면 1주일에 두 번 정도 공급을 받아서 제공하고 방학 때 같은 경우에는 도시락 배달이긴 한데, 도시락으로 먹이기가 좀 그래서 반찬만 받고 저희가 밥만 해서 배식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가져가시고. (중략) 저희는 먹거리 되게 중시하고, 식재료를 중시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대부분 만족하고 있고. (중략) 저희는 식재료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단체로 하라고 하면 오히려 더 싫죠.” <사례3>

급식 예산 운영 관련 투명성을 해결하고 정책적인 감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단체 급식화 하거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단체급식은) 개별급식을 하는 곳에서는 환영하지 않더라고요. 왜? 지금 우리는 유기농으로 아이들에게 정말 최고의 질로 제공하고 있는데 너희 왜 자꾸 이거 가지고 건드려. 너희는 단체급식 할 때 맛도 떨어지고 유기농 아니야, 친환경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내 품 들어서 내 돈 들어서 더 맛있는 거 하는데 너희는 왜 날 못 믿어 이거거든요. (중략) 정책적인 부분에서 명확하게 단체급식을 한다고 그러면 학교처럼 구에 그런 거 하나 만들어 줘요. 그게 지금 SK에서 00구니 뭐 이런 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00구에도 사회적 기업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가지 않으면 민간에서 자체 조리 급식을 멈추기는 쉽지 않아요. (중략) 아니면, 식자재를 한 루트로 만들어 주든가.” <사례1>

“구에서 급식비를 그 쪽(업체)으로 돈 주고, 차라리 (단체급식) 하는 게 낫지. (중략) 잘 하면서도 의심받고 차라리 그럴 바에야.” <사례2>

(7) 사명감과 긍지를 강화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센터 운영을 시작한 센터장들의 경우 센터 운영 시작 동기는 대부분 사명감이며 생활복지사의 경우에도 아이들에 대한 마음과 가치 그리고 보람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저희 법인은 처음에 한국에 ○○지원센터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들과 상담하고, 그리고 그 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 그렇게 찾아 보니까, 애들이 (한국에) 들어와도 학교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그리고 학교에서 받아 줄만큼 한국화 됐을 때는 5학년 애가 2학년으로 입학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성을 느낀 거죠).” <사례 *>

사명감과 보람을 중시하는 종사자들은 현실적인 급여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 뿐만 아니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그리고 자존감과 연결되는 상호 관계적인 문제도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중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다. 호칭 문제와 종사자 간의 형평성 문제 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지금 호칭이 생활복지사(인데) 바꿨으면 좋겠어요. 생활이라니까는 애들 먹여주고 똥 싸고 다 그렇게 (생각해) 그런 거 하지 마.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자존감 낮은 게 우리 스스로 만든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생활복지사 말고 그냥 사회복지사 그래요. 왜 지역아동센터만 생활복지사라는 거야? 그냥 사회복지사.” <사례8>

“실무자에게 뭔가 많은 역량을 주고, 그 다음에 실무자들이 좀 뭔가 꿈꿀 수 있고 뭔가 좀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사례7>

지역아동센터의 위상을 높이고 인지도를 상승시키기 위한 광고·홍보 그리고 인식개선에 대한 욕구도 높은 편이다.

“동을 통해서 전체 협의회에서 만들어진 유인물이 있어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안내문을 가지고 각 동에다가 얘기해서 비치해 놓고, 그 다음에 학교 지점가들을 통해서 가지고 가고,

교육복지에서도 가지고 가고, 교육청에서 매 연말이 되면 저희들 거를 가지고 학부모 설명회를 하계까까지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리플렛을 공동작업을 한 거예요 협의회에서.” 〈사례6〉

“재작년인가 왜 통합돌봄정책 한다면서 학교에 신학년들한테 범정부 수요조사 하면서 가정 통신문에 안내서를 같이 줬잖아요. (신입생에게) 지역아동센터 우리 동네엔 어디어디에 쪽 있고 초등 돌봄교실은 뭐 어떻게 하고 이게 설명까지 써있는 게 있었어요. 그렇게 공식적인 학교를 통해서, 학교가 전수는 맞잖아요. 상대적으로 알리기 쉬운 거는 학교가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엄마들이 그나마 이름을 들어본 사람들이 많아진 거 같아요.” 〈사례5〉

“서울시 희망광고에, 제가 지역아동센터 광고 제작해서 지하철 스크린도어에도 걸고요. 지금 보건복지부는 관심도 없고 마케팅 비용을 우리한테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광고라도 하나 만들게 해줘서 너무 감사했지 저는. (중략) 지역아동센터 알리는 거에도 서울시가 특별히 신경 써서 시청 앞에도 좀 걸어 놓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략) 서울시에 바라는 건 지역아동센터를 좀 알려달라니까요. 홍보해줘야 돼요.” 〈사례5〉

“구청에다가 사실은 요청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역아동센터 표지 좀, 예를 들면 길에 이렇게 화살표 그런 것도 좀 해주고. (사례6: 같이 좀 세워줬으면 좋겠네) 그건 구청에다가 해야 되긴 되는데 시에서 한다면 누가 못 하게 하겠어요. (사례4: 서울형으로는 더 해주면 우리가 기분 좋지) 시에서 하면 더 힘이 세니까. 그래서 지원센터가 저기 뒷골목에 있는데 골목에 있는 걸 좀 알려주셔야 돼요.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지.” 〈사례5〉

(8) 학교, 지역사회 연계 및 협의체 활성화

학교 연계는 방과후 돌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지역아동센터는 공간 문제의 비중이 센터 존폐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만큼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학교 공간 사용에 대한 원활한 협조는 지역아동센터 돌봄 기능 강화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현장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00구는 00협의회 통해서 학교 선생님들하고 그런 거 논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이라든지, 센터를 다니는 아이들이 학교는 어디를 다니고, 그 돌봄 선생님은 어떻게, 뭐 지역에서 복지관하고의 관계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사례3〉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가 한 학년에 10반이 넘는 아이들이 있어요. 초등학교인데 2000명

이 넘는 학생이라, 수급가정 비율이 굉장히 높은 학교예요. 그리고 저는 학교와 센터는 가까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중략)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진짜 애가 학교 끝나고는 안전하게 여기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 이런 부분들을 연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을에서 아이를 온전히 잘 키워낼 수 있는 부분들이, 그 부모까지도 그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례3〉

“자리가 협소하고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 있어도 장소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학교에 문을 두드리면 학교에서는 돈을 내라, 사용료를 내라고 그래서. (중략) 저희가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것도 너무 진짜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내겠다고 하는데도 안 된다고 하는 데도 있어요. (중략) 지역사회 학교에다가 연계를 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게 좀 되면 이런 데서 이렇게 방안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서울시에서 학교에나 교육부에서 이렇게 같이 하면 아이들하고 프로그램도 되게 재밌을 거 같고.” 〈사례9〉

지역사회 연계 공동사업을 우수하게 진행하는 센터가 존재하고 있으며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예를 들면 저희 센터는 지역사회 연계로 공동사업을 해요.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그래서 합창단을 운영하는데 매주 한번 학교에 가서 다 같이 모여서 연습을 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발표회를 하거든요.” 〈사례1〉

학교 돌봄과의 중복되는 부분은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근본적으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각 부처들의 정책 통합 혹은 긴밀한 연계 구축부터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연계에 있어서 학교, 지역사회 연계도 중요하지만 그 상위의 부처간 연계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5대 의무교육 44시간 하는 거 너무 좋은데 학교도 하고 있고 여기도 하고 있으면 애들이 왜 한 걸 또 해요? 안전은 중요하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계속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애들도 이게 하루 이틀이지 맨날 중복이 되니까 학교랑 이런 거 좀 연계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사례9〉

“방과 후의 돌봄에 대해서는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나 이렇게 큰 틀에서 교육에 대한 고민들이 되지 않으면, 정책적인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되게 뭐랄까 혼란도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략) 아이를 학교 안에서 그리고 끝나고 나서 (방과 후)돌봄, (방과 후)돌봄을 이용하는 친구들은 (지역아동)센터를 오진 않아요. 어쨌든 돌봄을 받지 못하는 친구들이 오는데, 이 부분들을 큰 그림 속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보건)복지부는 또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부분들은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례3>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우리가 지역아동센터가 보건복지부 소속이나, 교육부 소속이나, 여성가족부 소속이나 이게 이 근원적인 문제부터 해결하기 전엔 영원한 숙제야.” <사례8>

학교 방과후 돌봄과는 차별화 되는 지역아동센터와 방과 후 돌봄만의 특징이 존재하며 이는 급식부터 돌봄 내용까지 다양한 차이가 있다. 또한, 학교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학교에 있는 것을 아동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센터장들의 의견이 있었다.

“그러니까 학교 돌봄이 강화된다고 해서 지역 돌봄이 감소하거나 축소될 우려가 아니라 학교 돌봄이 강화하는 반면에 지역 돌봄도 같이 강화될 수 있는 시너지가 가능한 거예요.” <사례1>

“(학교에서) 방과 후 저녁까지 돌봄을 하면 뭘 주느냐면 도시락이라든지 아니면 빵이나 우유 이런 거 줘요. 그런데 저희는 저희가 직접 밥 해주잖아요. 엄마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학교에도 어떤 딱딱한 곳을 만든다고 해도 (지역)아동센터처럼, 제2의 가정처럼 편안하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차라리 학교 선생님들은 정말 교육하는 사람들로써 교육이 딱 마치면 끝내는 걸 좋아해요.” <사례2>

“지리적으로 또 어떤 특성화 센터(인가) 이런 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중략) 그리고 방과 후 같은 경우에는 우리 00구 쪽은 3학년까지만밖에 안 보더라고요. (중략)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전액 무료로, 무조건 이렇게 한 부모부터 수급자부터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반 아동들도 돈을 얼마만큼 받잖아요. (중략) 그러니 (지역아동센터) 저희는 아직 애들이 모자라고 이러지는 전혀 않아요.” <사례2>

“00구 같은 경우에는 돌봄을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하거든요. (중략) 2학년이 넘어서 3학년 부터는 아이들이 지역으로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갈 곳이 사실은 많지 않은 거예요. 지역

아동센터에서는 수요가 아이들이 차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대기도 있고, 정책적으로 방과 후 교실을 6학년까지 확대 한다 이런 정책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중략) 사실은 중학년 이상부터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학교를) 나오고 싶어 해요. 학교 돌봄 말고 방과 후 교실이나 이렇게 한두 개 하고 싶어 하지 돌봄으로 계속 저녁 시간까지 있기를 희망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돌봄의 확대, 학교 안에서 이런 걸 다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정책적으로 잘 진행되면 좋겠지만 그러긴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고 이랬을 때 지역, 학교 밖에서의 지역아동센터나 (다른 기관에서 학교를) 나오는 아이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고민되어야 해요). 저희는 사실 아이들이 한 번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면 멀리 이사 가지 않으면 계속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들을 받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사례3〉

“학교는 교육만 하고 돌봄은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게 하라는 게 제 건의사항이에요. (중략) 지금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난리들을 치는데 거기에 돌봄까지 가져가는 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교육부 예산은 교육하는 데 쓰시고, 돌봄은 돌봄 예산으로 쓸 수 있게 체계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사례6〉

“이미 학교에서 돌봄을 실행한지 꽤 오래 됐고, 그리고 학교돌봄 전담사들이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배정이 다 돼 있고, 그 사람들의 일자리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그거에 만족하는 보호자들도 있고, 그래서 학교돌봄은 지금 수준 정도, 1, 2학년이나 어느 정도 수준은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전 학년 돌봄 실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사례4〉

지역사회협의체를 잘 활용하면 지역사회에 지역아동센터가 뿌리 내림으로써 각 자치구 특성별로 활발한 돌봄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협의체 가입이) 전수는 아니에요. 대충은 정확하진 않지만 한 90% 이상은 가입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보면, 대다수가 가입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하지만) 태생이 다른 것도 있고 (중략) 권역화해서 (한 자치구에) 3개의 협의회가 (있는 곳도 있어요.)” 〈사례5〉

“협상과 접근, 협의 이런 걸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약간의 세력단체가 되기도 하지만 또 구청에게는 편의를 제공하는 의미도 있어요.” 〈사례4〉

“창구를 하나로 만드는 거죠. 창구 일원화를 해서 구청 입장에서도 물론 다 뿌리면 좋겠지만 서로의 의견 조율할 때 좋은 거죠. 서로가 편한 부분은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이제 여

기서 조금 확장해서 얘기하면 거점센터라는 게 있었잖아요. 원래 거점센터 역할이, 지금은 없어졌지만 거점센터 역할이 협의회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사례5〉

“(하지만) 네트워킹이라는 걸 그렇게 협의회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경우도 또 있어요. 한 때, 2012년 이럴 때 교육청 사업, 네트워크 사업, 지역기반형 사업, 삼성 사업 이런 걸 땀을 때는 그 정도의 인력을 좀 나눠서, 수당 같은 것을 나눠서 누군가에게 주면서 네트워킹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협의회가 좀 사분오열된 경우도 있고, 딱 하나의 단일화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다 찢어져 있어요 거의.” 〈사례4〉

“거점사업비라는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쓰면서 그 돈으로 활성화된 면이 있는데 사업비가 없는 구 연합회는 그냥 동아리 수준이지 전달체계라는 힘을 가지려면, 예산이 좀 들어가고 별도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거 같아.” 〈사례4〉

한편 기업 연계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많이 활성화 되어 있지는 않으며 이에 대한 협력 부분도 강화해 나아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00구는 사실은 민간 기업이 없어요. 다 자영업이고 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없어서 저희는 기업 후원이라는 게 없어요.” 〈사례1〉

“물론 기업 후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별적으로 센터장 역량이나 이런 거에 따라 틀릴 수도 있는데 그게 보통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거죠. 센터에서 근본적으로 고민이 되는 공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이들 1회성 프로그램이라든지 자원봉사 활동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되는 부분이지. 저희가 원하는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사례3〉

(9) 센터장, 생활복지사의 수평적인 관계와 채용의 투명성 확보

작은 조직이기 때문에 종사자 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며 채용의 투명성이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갈등도 다른 조직보다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이는 종사자들의 잦은 이직률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처우의 불합리함을 느끼는 종사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치구 차원에서의 투명한 채용 감독과 일괄적이고 체계적인 인력풀 관리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았다.

“조직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작은 조직이잖아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2인이야. 그러면은 이 분하고 이 분하고 둘이 안 맞으면 여기는 망가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중략) 다양한 업무량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에 대한 기 검증된 사람을 사실은 받기를 원해요.” 〈사례5〉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서 친인척이 들어오든 누가 들어오든 이제 채용을 했어요. 그럼 구에 신고하잖아요. 종사자 인명 보고를 하잖아요. 그럼 구에서 친인척이나 정도는 가려주셔야 되는 건데, 그 과정 없이 그냥 올리면 그냥 뭐 채용심사 없이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왔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사례6〉

“지역아동센터가 이직률이 많다고 했잖아요. (중략) 같이 업무를 보다가 친인척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서 트러블이 생겨 이직하는 경우가 솔직히 상당히 있어요. (중략) 서로 감정이 (상하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직이 좀 더 그런 데서 보태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거의 친인척으로 되어 있는 데도 많아요.” 〈사례9〉

“(아동복지사가) 비정규직인데 (상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센터에서 뽑게끔 그걸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종사자들은 절대 반대해요. 그러면 자기가 아는 사람을 또 거기에다가 쫓는 경우가 너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선생님들을 종사자들이 저기를 하더라도 투명성 있게 구에서 관리하는 그런 선생님을 뽑아야지 이 센터에서 뽑는 건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사례9〉

이에 따라 채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친인척 관련 인사에 규제 혹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

“(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운영위원들은 또, 예를 들어서 교수님, 저희 센터장님 언니가 교수님이어서 운영위원을 하고 있었는데 또 친인척은 운영위원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서 평가 때, 아니 그런 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왜 친인척 그런 고용하는 거는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일반 생활복지사 선생님들도 이렇게 있다가 누가 들어오는 거 보면 친인척이고 이렇게 했을 때 금방 이직을 하는 게 공공연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례9〉

“선생님들 뽑을 때도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뽑아서 필요한 데 수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급을 조사한 다음에 중앙에서 심사해서 아 이 사람이 여기 가서 (일하고), 그러면 면접권만 주면 되잖아요.” 〈사례8〉

생활복지사들의 경우 센터장과의 형평성 문제도 중요한 근무 환경 조건 중 하나로 나타났다. 특히 인건비와 업무분장(센터장과의 권한 집중)에 있어서 불만 요소가 존재했다.

“센터장이 직원 임명권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좋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너무 권력이 편중된다는 거예요. (중략) 예전 같은 경우는 백 몇 십 만 원이 차이가 나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사례7〉

“센터장이나 생활복지사를 호봉제로 급여를 동등한 어떤 취급을 하셔서 직급에 상관없이 (지급한다) 그러면 좀 더 기분 좋게 일할 수도 있을 거 같고, 또 업무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뭔가 그 급여에 불만 같은 것들이 덜 하면 옮겨가거나 그런 이직률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센터장님의 대표하는 그런 기능을 꼭 생활복지사의 급여와 차등을 줘야지만 그런 게 생키나. 그런 부분은 많이 신중히 고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뭔가 차라리 특별한 어떤 센터장 수당을 소액을 지급해 주신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차원에서 그 센터장의 업무를 독려시키고 그런 부분(이런 모를까).” 〈사례7〉

“다 업무분장이 물론 있어서 저희 선생님이 운영비 하면 제가 급식비를 하고 뭐 이렇게 돼 있어서 돈독하게 그렇게 (운영해요). 반면에 정말 또 안 보이게 불투명하게 하는 데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생활복지사 선생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사례9〉

센터장의 경우 상근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센터장과 생활복지사 간 경직된 위계가 존재하는 일부 센터들의 경우 생활복지사들의 불만이 존재하고 있었다.

“(센터장님) 상근 안 하세요. 생활복지사는 상근을 안 하면 난리가 나지만, 센터장님들이 기본적으로 상근을 (안 하시죠,) 상근하시는 분들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사실 이것이 너무 어떻게 보면 센터장의 기준에 맞춰서 모든 게 되어 가고 있는 느낌(을 받아요).” 〈사례7〉

“5층에 계시면서 거기서 전화가 오니까, 우리 직원이 밑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의 직원이 아니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표현이 이런 어떤 굉장히 저는 강한 경험을 통해서 빨리 머릿속에 세워져 버린 거고요 의식이. (중략) 그런 표현 자체가 벌써 우리와 센터장님 사이에 큰 벽으로 작용한다는 거” 〈사례7〉

센터장 자격 요건 강화 및 진입장벽 강화를 통해 종사자 내부의 신뢰와 신의 강화도 내실있는 센터 운영과 신뢰성 높은 관계 형성에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허가제도 아니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이런 여기 출발선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개인이 누구나 다 차려서 나중에 국가에서 지원받았어요. 이것도 그렇게 시작했죠. 지금은 21세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그 지역아동센터 허가제를 하든지. 신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진짜 뭐야 내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분이 정말 그거에 맞고 마인드가 맞는지 국가에서 심사해서 허가제로 해라 이거야. 처음부터 설립 자체를 타이트하게 해서 정말 진입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아야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사례8〉

“시작이 자생적으로 됐다고 해서 그 시스템을 고집하시고 또 서울시는 계속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뭔가를 하나도 개혁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새로운 신규기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침도 좀 강화돼야 되고.” 〈사례7〉

“생활복지사를 어떤 기준에서 뽑고, 센터장은 어떤 기준에서 뽑아야 되고. 그래서 저는 업무분장이랄지 급여랄지 이런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공식 어떤 지침이라 할까요. 그 생활복지사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아마 어떤 기준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중략) 센터장은 반드시 생활복지사 경력 3년 이상, 혹은 5년 이상 이런 지침이 좀 들어갔으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아동센터는요 다른 기관하고 좀 달라요. 반드시 다른 뭔가가 있어요. 생활복지사로서 근무해본 이력이 없는 선생님들은 센터장을 해도 지금 별로 뭔가 도움을 생활복지사가 못 받았더라고요.” 〈사례7〉

(10) 현장 중심의 평가 체계 구축

현재의 센터 평가는 실제적인 아동 돌봄의 질을 고려하지 않고 서류, 행정업무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대다수이다. 아동위주의 질적평가가 가미될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우리가 주목적이 뭐냐면 아이들 케어예요. 그런데 이 평가기준을 계속 높이면서 (아이들 돌보는 건 힘들어요). 행정 잘 하는 데 가보세요. 애들 어떻게 하는지 정말. 그분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거 다 하려고 해보세요. 우리 밤새도 그렇게 못 해요.” 〈사례2〉

“지역아동센터에 인력이든 예산이든 규모든 이런 부분들의 현장 상황을 제대로 안다면 사실은 (이렇게 진행할 수가 없어요). 구에서 상하반기 자체평가 나오잖아요. 자체점검 나오는데 거의 평가처럼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교차점검 나오잖아요. 타구에서. 진입평가나 심화평가 나오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지역아동센터 상황을 알면 이렇게까지 하지 못 할

텐데, 아이들을 방임하면서 서류를 준비하라는 이상한 논리로 받아들여지는데 이거를 모르시는 거예요 현장의 상황을.” 〈사례3〉

“주말에 나와서 가족 프로그램 갈 때 같이 가야 되고, 회의 같이 참석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업무들은 (외부에서) 잘 모르죠 사실은. 지역아동센터라고 했을 때는 그 안에서 딱 운영(시간), 아이들이 오는 시간만을 생각하고 이런 평가나 이런 여타의 서류들을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례3〉

“종사자들은 아동에 전념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것으로만 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행정적인 부분들은 드림(스타트)이 다 가져가라.” 〈사례1〉

“센터의 역량, 그 생활복지사나 그 담당하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평가를 잘 보고 못 보고 하는 거예요. 평가지표는 있어야 되겠지만 이거에 대해서도 다시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사례6〉

“평가는 얼마든지 며칠 밤새면 A로 받을 수 있어요.” 〈사례4〉

평가 기준은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현장을 반영하는 실질적인 평가 기준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서류를 간소화하고 아동 돌봄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항목으로 평가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

“평가가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안 되어야 된다는 거죠. 딱 기본, 아 이거까지만 하면 아동센터는 문제없다는 기본적인 기준안을 내고 거기에 대해 평가를 하면 그만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애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아동센터 간의 갭도 없어지고. 그거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평가가 되면 될수록, 저희도 내년에 평가를 받지만, 어떤 기준안을 자꾸만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가? 저희는 이렇게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꾸. 모르겠어요. 시에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센터들을 자꾸 줄이려고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걸 미시적으로 보지 말고 거시적으로 봐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례2〉

“교차점검이나 지도점검 하나로 일원화 시켜라. 대신에 1년에 한 1회.” 〈사례8〉

“(평가에 해당하는) 그 상태에 근무했던 생활복지사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새로운 사람이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센터장이 지시해 주는 그 서식에 맞춰서 서류만 해대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나 반기 당 한 회 이런 거는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 대신 쓸데없는 서류 서식 다 없애면 좋겠어요. 운영일지 매일매일 입력하는 걸로 끝냈으면 좋겠어요.” 〈사례7〉

“심사를 하되 정말 일단 우리가 생활하는 그런 생활을 딱 딱 봐달라는 거지. 서류가 너무 많으니까.” 〈사례9〉

“현장 한번 보고 가는 게 낫지. 우리가 언제 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중략) 정말 현실적인 정말 잘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 가서 정말 실제적인 것. 그래야 나중에 정말 나중에 사고 안 터지는 거예요. 나중에 아동학대 문제, 뭐 이상한 그런 문제가 미연에 방지하는 거지 서류 갖고 보면 사고 터집니다.” 〈사례8〉

“몇 개 지표만 딱 만들어 주셔서 실제적인 근무자들에게 항목을 만들게 하고 그 체크항목으로 해서 딱 실제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부분에서는 단순화시키고.” 〈사례7〉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회계 감독 이상의 추가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이를 위해 진입을 강화하거나 지나치게 불투명하고 부실한 센터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와 정부 사이의 상호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민간 운영을 믿지 못하겠으면) 중앙 루트에서 배분 사업으로 그럼 뿌려주든가. (중략) 왜 자치구 안에 관련 과가 있잖아. 그럼 그 쪽에다가 아예 주고 거기에서 알아서 배분하게끔. 그러면 자기는 여기만 관리하면 되잖아. (중략) 개인을 믿을 수 없고, 개인에게 후원하는 거라든가 회계 부분에 대한 투명성을 믿을 수 없어. (중략) 그러면 우리가 매년 지도점검을 받아요. 지도점검을 받을 때 회계 받거든요. 통장이랑 짹 짹 다 하면서 봐요. 그러면 자기네가 어 여기 잘 하고 있어 하고 넘어갔잖아요. (중략) 그러면 그 동안에 지역아동센터 생긴 게 1년이야, 2년이야 아니잖아요?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그러면 아이들을 돌봤던 종사자에 대한 마지막은 그렇게 우리에게 잣대를 댄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잘못 한 거고 정책 하시는 분들이 잘못 한 거야. 왜? 그동안에 관리 안 했다는 거야 그러면. 너희 4200개가 생길 동안 뭐 했냐는 거지.” 〈사례1〉

현재 센터 설립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여 진입 장벽을 높이고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한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또한, 현재의 센터들을 불시에 전체 현장을 점검 조사하여 현장 의견과 상황을 반영한 평가 혹은 점검 체계를 개선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지금 규제가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사례2〉

“1/3 정도가 부실하게 운영한다는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지도 점검을 강화해서라도 숙아냈으면 나는 좋겠다는 거예요. 충분히 의지가 있는데.” 〈사례6〉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을 잘 못하고 그러는 거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을 적발해서 삼진아웃을 시키는 이런 어떤 강력한 매뉴얼을 바로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사례4〉

“사실은 전수조사가 어울리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점에서는 한 번 다 현장 점검, 즉 현장 가서 실사 다 해보셔야 되는 거죠. 예고 없이. (중략) 정책하시는 분들이 다 나갈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단계를 밟아서라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점에, 그러고 나서 어떤 평가 기준을 만들어 내고 내실화 방안을 만들어 내서 그거에 잘 적응해서 우리가 같이 가야지 그냥 현장의 의견 상관없이, 현장 점검 없이 만들어 놓고 톡 여기에 맞추세요 하면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례1〉

(11) 평가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단의 지원 필요

누가 점검하느냐에 따라 현장점검 결과에 편차가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관성과 객관성 확보와 지도점검의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 현장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평가위원단을 구성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담당 주무관이 갖고 있는 역량과 관련 지식수준, 그게 너무 편차가 크니까, 교차점검이 되건 그 지자체 걸 하건 간에 (지표가 있더라도) 모든 구가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례5〉

“정말 지역아동센터 잘 모르는 교수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 말 하지 말래 나 보고, 물어보지 말고, 물어보니까 대답하려고 했는데, 와 이거 뭐 뭘 알고 나온 건지. (중략) 평가하는 위원들이 어느 정도 좀 알고 그래서 면접을 해야 돼요.” 〈사례8〉

“지도점검वाद도 저희는 옆에 낄 수도 없고 센터장님이 쭉욱 이렇게 하시면서 올라가서 담소하다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주먹구구식의 평가나 점검은 (의미가 없죠). 그리고 온다고 (미리) 다 연락 오잖아요.” <사례7>

(12-1) 기타_우수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우수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우수하다는 기준도 모호하며 현재 평가 시스템이 공정하지도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또한 안정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수한 센터를 선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었다.

“저희는 반대죠 당연히. 왜냐하면 우수지역아동센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예산이 개별 센터로 나누면 사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그거를 운영비로 만약에 더 높여서 (준다면 낮죠). (중략) (우수지역아동센터 예산을) 살리긴 살려야 하는데, 동일하게 그냥 추가지원이나 아니면 그 항목을 그 안에서 줄 수 있는 게 있을 거잖아요.” <사례1>

“우리 구 안에 있는 센터들이 서로 어떤 정보들을 공유하지 않아요. 다 폐쇄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소통이고 뭐고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사례2>

“우수인센티브라는 게 웃긴 거예요. 이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며, 기준 자체를 정한다는 것도 웃기고. 이게 뭐 70%, 80%가 되도, 저는 이 예산이 반납이 되더라도 이걸 받을 수 없는 부분이다 생각이 들어요.” <사례3>

“센터 당 나눠봤어요. 이게 한 개 기관 당 몇 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중략) 우수지원센터 해놓고 인센티브 준다고 해놓고 몇 만 원밖에 안 줘? 그죠? 줄려면 확 주든지 아니면 이게 뭘 말이나? 이거 서열화시키는 거예요. 우수지원, 차별.” <사례8>

(12-2) 기타_지역아동센터 기능의 다양화와 마을공동체

특정구에 구립 지역아동센터가 많은 이유를 살펴보면 자치구 차원에서 수요를 파악한 결과 공급이 부족함을 파악하여 관 주도의 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센터를 설립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역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00구가 특이하게도 저소득층 아동 수에 비해서 센터 수가 현저히 낮았던 거예요. (중략) 구립이 없다가 갑자기 막 생긴 게 청장님 목표가 각동에 하나씩 지역아동센터를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은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운영비를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건 구립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공간이 되는 데마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도서관, 센터, 북카페가 있어서 (그 공간을 활용해요).” <사례1>

자치구별로 여건과 규제가 상이한데 임대료 규제, 운영비 지원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치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치구별로 임대료 사용 규제가) 달라요.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구비에서 월세를 내도 된다고 해요. 이제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100만원이 넘잖아요. 동작구는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하고, 그런데 00구 같은 경우에는 38만원이거든요. 38만원에서 월세를 쓸 수 있는 거는 50%, 19만 원 정도, 18만 5천 원 정도 그렇게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것도 협의회에서 구랑 같이 얘기하고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의견을 다시 낸 거예요. 안 된다 해서 그렇게 조정이 됐어요. <사례2>

“저희 같은 경우는 80만원 예산을 해줘요 구비로. 그래서 그 구비에서는 센터장 20만원, 생활복지사 10만원을 복리후생비로 고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 5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비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명절 수당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아니면 애들 프로그램 할 때 (사용하기도 하죠).” <사례1>

“저희는 운영비 만들려고 후원(업체) 발굴한다고 죽겠어요.” <사례2>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거에 근거한 운영비를 통으로 구 지원금을 주는 게 이제 차등이 좀 돼 있고, 그걸 교사 처우로 쓰냐, 월세로 쓸 거냐, 프로그램으로 쓸 거냐 하는 거는 좀 자율적으로 맡겨두는 편이고.” <사례4>

지역별, 센터별 맞춤형 특성화된 센터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아동 돌봄을 보다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아동의 연령과 집단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센터들의 기능을 분화시켜 나아갈 필요성도 제기된다.

“저학년 지역아동센터 고학년 지역아동센터, 아니면 특성화된 뭔가 만들어야 돼요. 그 지역마다 자기가 특색이 있을 거예요 하다 보면. 이 지역아동센터 뭐가 좀 잘 하고 있어. 그 아이를 그 쪽 보내야지.” <사례8>

“좀 기능을 분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역에 여러 개의 센터가 있지만 뭐 돌봄을 안 하겠어요, 뭘 안 하겠어요. 밥 먹이고 돌봄 하는 건 기본으로 두고 어떤 악기 수업을 할 때는 이 쪽 센터로 가서 한다거나 아니면 지역 사회 어떤 관을 빌려서 함께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 프로그램을 짜기도 편한 게 그러면 하고 싶은 아이들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사례7>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방과후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센터 수를 적절하게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사회 곳곳에 지역아동센터가 뿌리 내릴 수 있게 된다.

“같은 지역 내에 100미터 반경, 200미터 반경 안에 센터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구립이에요, 하나는 민간이에요. 그러면 학부모 입장에서 시설이 좋은 구립을 선호하지 민간 선호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같은 아동 시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역 센터가 있는 곳에 가까이에 신규 센터가 들어가는 것은 고민해야 되는 거고, (중략) 기존에 있는 센터를 노후시설에 대한 거는 보강을 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고 나서 이 센터든 저 센터든 지역에 맞는 특수성에 (맞게) 보강해주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사례1>

“이게 지역적 차이가 있어 동네 차이가. 좀 그렇게 확 모여 있는, (특정 구역에) 되게 (지역 아동센터가) 밀집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가 있어요.” <사례5>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마을공동체의 중심에서 방과후 아동 돌봄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3. 소결

이상의 면접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운영에 있어서 구립 확대에 대해서 많은 종사자들이 찬성 의견을 보였으며, 구립 센터 확대에 의한 장점과 단점을 현 지역아동센터에의 영향력까지 꼼꼼하게 고려하여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운영의 공공성과 내실화를 위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공간과 임대료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립센터 확대는 개별 지역아동센터가 각종 공간상 규제(노래방 등 주변 유해시설 관련 등)와 임대료 부담 그리고 임대료로 인한 법적인 분쟁 가능성 등 현 지역아동센터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상당부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센터별 기능상 고려해야 할 점은 특성화 센터 확대 부분이다. 자치구별로 이용 아동 성격이 다양하며 저소득 계층 아동이 많은 지역과 다문화 아동이 많은 지역 등 개별 특성을 고려한 특성별 센터에 대한 분화와 체계화가 필요하다. 학년별로 비슷한 발달단계에 있는 아동들을 그룹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이는 분위기와 아동들의 적응문제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의 효과 측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각 자치구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시 된다. 자치구는 센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충분히 파악하고 장기적으로는 맞벌이 가정 아동을 포함하여 일반 아동을 포괄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 기능을 모색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현장 종사자들은 일반아동이 함께 어우러질 때의 긍정적인 효과가 부정적인 효과보다 훨씬 크며 지역아동센터가 보편적인 방과후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운영의 안정화는 현실적인 운영 지속성과 안정된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의 사명감, 스트레스 등 심리적인 부분과 이것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 전반에 걸친 문제이다. 운영 안정화의 핵심은 종사자 인건비이며, 현재 프로그램비와 분리가 안된 채로 지원되는 운영비 대부분을 종사자 인건비로 전환하고 프로그램비 및 운영비는 별도의 항목으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적정선은 전문가, 공무원, 종사자 모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센터별 상이한 급여수준 차이를 줄일 수 있으며 투명한 예산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사자들의

경력 인정을 제도화하고 이를 위해 현실적으로 호봉제 도입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상근 인력의 적정 수준도 이 시점에서 제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의 아동 수 대비 상근인력 수를 실사를 통해 재점검하여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운영 과정에 있어서의 제도화와 매뉴얼화가 필요성이 높다. 센터별 질적인 차이가 매우 큰 현 상황에서 생활복지사 공개 채용 과정의 제도화, 인력풀 관리에 자치구가 개입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거나 센터장의 요건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특히 현장을 잘 아는 센터장의 마인드가 매우 중요한 ‘아동’ 돌봄 영역의 특성상 센터장의 현장 경험 경력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결과적으로 운영 투명성에 대한 자체 필터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을 중심에 두고 관련 종사자들 모두의 수평적인 관계 형성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해야 하는 시점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평가 체계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참여와 생활복지사의 참여 혹은 모니터링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강화는 현장 중심으로 접근해야하며, 현행 행정업무와 정량평가를 축소하고 정성평가, 현장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이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생활복지사와 주민센터 그리고 지역 주민에 대한 참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담당 공무원의 교육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질적인 차이를 최소화한 신뢰성 있는 평가가 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일방적인 감시에 치중하기 보다는 평가의 현장성 반영과 평가 참여자 범위 확대 그리고 상호 신뢰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IV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공공성 강화 및 내실화를 위한 정책방향

1.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장단기 방향 모색
2. 지역아동센터 운영 안정화와 기능 재정립
3. 종사자 임금 체계 마련과 인력 수준 제고
4. 지역아동센터 평가 체계 개편
5. 기타

IV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공공성 강화 및 내실화를 위한 정책 방향

□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및 내실화를 위한 필요 사항

- 방과후 돌봄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는 2015년 기준 운영주체 중 개인의 비율이 68.2%로 상당히 높으며 이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되던 시설을 법제화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형태는 공공성 약화, 질 보증 실패, 장기전망 부재 등에 취약한 구조임(이현주, 정익중, 2012). 이러한 민간의존으로 인해 정부에서 시설을 투자하기도 쉽지 않으며 내실화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 센터장 거의 대부분이 개인인 상황에서 공공성 담보 문제는 더욱 중요해짐. 따라서 이 연구는 센터장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면접조사에서는 종사자 인건비를 포함한 직무 수행의 어려움, 종사자 상근현황, 운영실태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구별 차별화된 모델을 구분하여 조사함으로써 이러한 지역아동센터의 다양한 측면들을 비교분석 하고자 함
-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운영주체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구립이든 그리고 센터 규모가 크든 작든 지역아동센터 공공성은 필요하고, 종사자처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사회적인 책무성과 회계 투명성이 문제가 있다는 전반적인 응답들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회계 투명성은 전산화를 강화해서 관리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센터운영에서 재정상황의 어려움을 많은 센터장들이 호소했는데 특히 인건비와 임대료가 큰 부

답이라고 응답함. 특히 기본급을 인상에 대한 요구는 30.4%로 나타남으로써 기본급인상보다는 호봉제를 실시해야한다는 답변이 63.2%로 더 높게 나타남

- 경력 인정이 제도적으로 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행정업무에 대한 큰 부담과 관련 인력충원이 필요하고 이는 결국 아동들이 이용하는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에 영향을 미침
- 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고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먼저 종사자 급여 인상을 포함하여 급여 관련 부분을 안정화시켜야 하며 행정업무를 분리하거나 감소시키고, 재정의 투명한 관리가 선행되어야 함

□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및 내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방향

-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서울시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 전반의 투명성, 공개성, 보편성과 참여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이 때 기존의 저소득층의 사회 통합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보편적 복지로서의 역할 재수정이 필요해 보임
- 다양한 특성의 아동에 대한 방과후 돌봄을 포괄하는 역할을 부여하여 접근성을 최대화하고 학교 방과후 활동과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을 결합한 방향으로 지역아동센터의 노선을 재수정할 필요가 있음

1.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장단기 방향 모색

-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확보와 내실화 강화 방안 마련의 목표: ‘아동’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고려한 ‘아동’에게 좋은 성장 환경 마련
- 지역사회 공공의 보편적 돌봄 기능 기반 조성¹⁾이 수반되어야 함. 이때의 정책 목표는 다음 **■ 그림 IV-1 ■**과 같음



■ 그림 IV-1 ■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및 내실화 정책 목표

□ 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 사항

- ① 운영 전반 사항을 매뉴얼화 혹은 시스템화 할 필요가 있음. 운영 관련 사항은 인력채용, 인력풀 관리, 종사자 처우, 관리, 프로그램 등을 모두 포함함. 그리고 이를 통한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돌봄의 질 향상을 도모함
 - ② 종사자 이직률 감소 노력을 위해 다각적인 접근을 취해야 함. 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의 사회적인 위치를 제고하고, 종사자 처우와 스트레스 그리고 관련 현상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
- 그리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아동 방과후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특히, 공간적인 환경과 프로그램 그리고 또래환경을 복합적으로 개선할 필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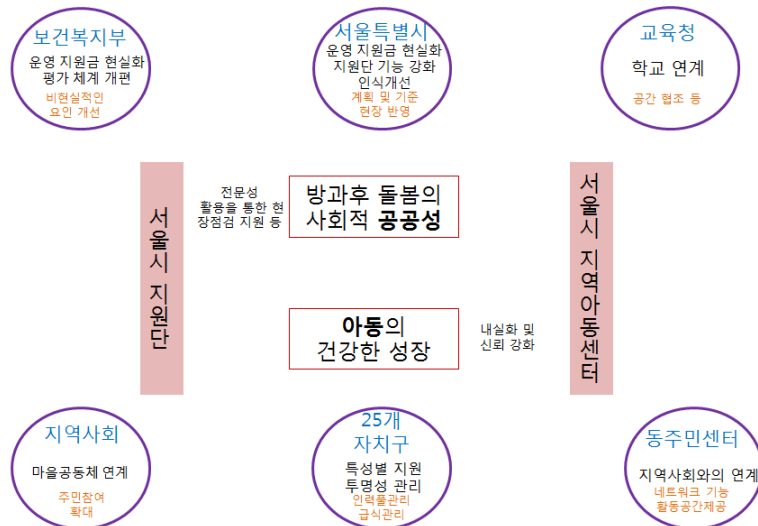
1) 일반 아동을 포함할 경우 저소득 계층 등 특별히 방과후 돌봄 수요가 더 높을 수 있거나 소외될 수 있는 아동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정 쿼터 혹은 제한이 필요할 수 있음

요가 있음

- ③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지도점검 체계의 현장중심 개편이 필요함. 현재 공무원 1인
에 대한 의존을 보완하기 위해 평가단 구성을 고려함
- 이와 함께 지도점검 단계 이전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강화함. 전문성을 지닌
서울시지원단을 확장하여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함

□ 정책 목표: 아동을 위한 우수한 질의 지역아동센터 기능 정립과 지역
아동센터의 공급측면과 수요측면 전체를 망라하는 전반적인 공공성
확립

- 이러한 공공성을 강화를 위해서는 내실화가 함께 진행되어야만 함
- 이를 바탕으로 ■그림 IV-2■와 ■그림 IV-3■은 각각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공공
성 강화 및 내실화 달성을 위한 단기, 장기 방향 설정을 제시함
- 장기적으로는 운영 주체와 관리 주체의 공적 기관 편입을 고려하되 단기적으로는
현재 추진 주체들의 역할을 적절히 강화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실행되어야 함



■그림 IV-2■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및 내실화를 위한 단기 방향

□ 부처간 긴밀한 연계 필요

-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 그리고 교육청의 긴밀하게 연계가 필요함
- 평가체계를 현장중심으로 개편하고 학교 공간 활용 등의 연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사회 아동 돌봄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서울시지원단의 역할 역시 점차 확장해야 함. 지원단 규모 확장과 함께 지원단의 전문성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컨설팅, 종사자 교육 등의 기능, 공무원 현장 지도점검 관련 지원, 센터의 신뢰 및 상호 자체 규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음

□ 운영비 현실화와 인건비 분리 필요

- 타 사회복지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운영비 현실화 역시 중요함

□ 장기적으로 구립형 지역아동센터 확대 등 운영에 공공의 개입 확산 필요

- 구립 운영 확대는 운영 안정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이 때 기존의 개인 혹은 법인 시설들이 겪을 문제에 대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
- 장기적으로는 자치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구립형 지역아동센터를 확대하고 주민센터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모델을 확산시킴으로써 지역기반 방과후 돌봄이라는 역할 수행의 공적 개입을 강화해야 함
- 한편, 지역아동센터는 지역마다 그 특성이 다르며 아동들의 수요에 대한 성격이 상이하기에 자치구별로 특성별 운영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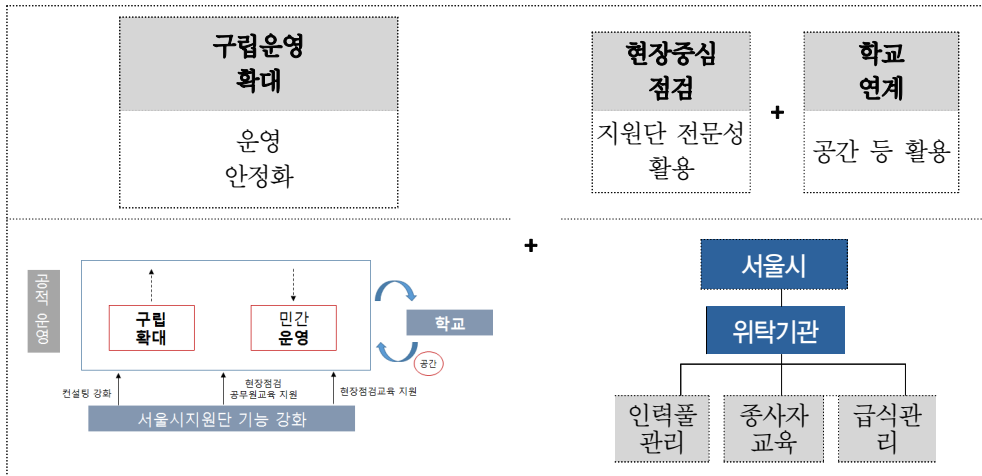


그림 IV-3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및 내실화를 위한 장기 방향

□ 인력풀, 급식, 종사자 교육에 대한 자치구 차원의 제도화된 관리 필요

- 자치구에서는 상근종사자를 포함한 전체적인 인력풀과 급식관리 및 지원 기능 강화해야 함. 이때 서울시 차원에서 인력풀, 종사자 교육, 급식 관리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주도하는 방안이 도출될 필요가 있음. 급식비의 경우는 센터 운영과는 별도 운영으로 아동 급식지원사업 결식지원에서 지원됨.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출석인원을 통해서 명수에 따라 액수를 지급하고 있으나 투명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음
- 지자체 차원의 운영 지원 체계 마련은 지자체 차원에서 인력풀, 종사자 교육, 급식 등의 관리를 시스템화하여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마련에 비중을 두어야 함. 그 대안 중 하나로 현재 시범사업 중인 강동구 공공급식 공급 관련 모델²⁾을 참고할 수 있음

2) 서울시 먹거리 마스터 플랜에서는 서울시는 시민 누구도 경제적 형편이나 사회·지역·문화적인 문제로 굶거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접근하는 데 곤란을 겪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에 최근 1호 협약을 맺은 강동구-완주군에 이어 오는 2019년까지 25개 자치구마다 직거래할 농촌을 선정하고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세움. 해당 계획 하에 2017년 강동구 공공급식 시범사업이 추진 중이며 지역아동센터 역시 대상으로 포함됨. 공공급식 시설에서는 서울시 기준에 따라 공공급식센터를 통해 (친환경)식재료 구입 시 일정액을 보조(지원)해 줌. 지역아동센터 및 복지시설은 급식인원 및 급식수(1식~3식)에 따라 지원 금액을 산정하고 지원조건은 월 급식비 지출액의 70% 이상을 공공급식센터에서 구매하는 것이며 센터의 역할은 친환경식재료 구매비율이 40% 이상이 되도록 공급 품목 구성함

*** 17년 강동구 공공급식 시범사업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지원 대상: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7,338개소 299천명)

- 강동구 공공급식 시설 현황(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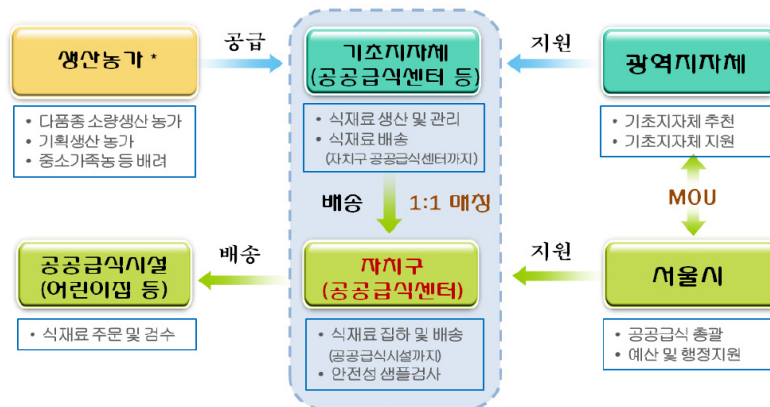
구분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합계
개소 수(명)	291 (11,690)	20 (446)	87 (3,076)	398 (15,199)

※ 강동구 시범사업 급식 목표 : 5,000명

○ '17년 예산: 5,025백만 원

- 강동구 시범사업 예산: 약 1,850백만 원 (1,000백만 원은 시설 건립비)

■ 추진체계



- 아동에게 매우 중요한 급식 관련 공공성은 이처럼 식재료 공급 등을 공적인 루트를 통하거나 유통망 혹은 현금지급이 아닌 연계방식으로 전환하는 제도 마련을 고려할 수 있음

2. 지역아동센터 운영 안정화와 기능 재정립

□ 방과후 돌봄의 효율화와 연계성 강화 등의 재정립 필요

- 한국의 공적 돌봄시스템은 다양한 부서 및 주체에 의해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역할 분담 및 조정기구가 부재하며, 서비스 간 차별성과 연계가 부족하여 서비스 중복 지원뿐만 아니라 여전히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존재(김광혁, 2014)
-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방과후 돌봄 공백을 장기적으로 해소해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운영안정화가 필요함. 운영에 있어서 구립 운영을 확대하거나, 공간 문제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 지원금의 임대료 용도 사용 허용 기준 완화, 임대 가능 장소 연계나 후원 등이 필요함. 임대장소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보호장치 역시 지원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종사자 처우와 채용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화

- 종사자 급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여 센터 간 격차를 줄이고 상근 종사자에 대한 인력풀을 자치구 혹은 지정 센터에서 관리하면서 이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종사자 사이의 형평성과 채용상의 투명성 그리고 종사자 전문성 향상까지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더해 급식체계를 재편하여 지자체 공급망을 연계해 주거나 혹은 지자체 직접 공급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투명성을 강화해야 함
- 급식체계 재정립의 경우 정부와 센터 간의 신뢰 회복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매우 중요함

□ 지역아동센터의 기능 세분화

- 지역기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거점기능을 하는 센터나 기관이 필요하며, 학교와 주민센터를 연계하여 특성화하는 센터들을 늘리고, 일반아동 포괄한 보편적 방과후 돌봄을 점차 확대해 나아가야 함. 초등돌봄교실 확대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이

용 아동이 축소되고 저소득 가정 자녀들 위주로 재편됨에 따라 발생하는 낙인효과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서혜전·김진숙·최윤옥, 2014)는 점에서도 이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임

□ 센터 수요 파악(자치구 차원)과 연령대별 학습기능 강화

-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수요를 자치구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학교와 연계하여 특히 공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음과 동시에 가족(양육자)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연결망을 공고히 해야 할 것임
- 운영의 지역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기반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협의체를 활성화하여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의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특성을 제도적이면서도 체계적인 공적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음. 해외 방과후 돌봄이 학교 등 공공의 개입이 강화되는 추세인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음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방향	
인	가
▶ 누구나 진입 가능(신고제)에서	⇒ 진입장벽 다소 강화(허가제 고려)로
공	급
▶ 수요공급 균형 관리 부재에서	⇒ 지역 특성별 수요공급 관리 및 공공운영 모델 확대
연	계
▶ 개별 운영모델에서	⇒ 드림스타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의 협력 및 지역사회 연계 강화로

□ 정부와 센터의 신뢰 강화를 위한 노력

- 지역아동센터의 기능 재정립을 위해 필요한 또 다른 사항은 정부와 센터의 신뢰 강화를 위한 노력임. 이를 위해서는 센터장들의 책임의식과 사명감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음. 물론 공공성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공공의

역할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함. 제도적으로는 일정 수준의 센터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신고제로 되어 있는 설립 기준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진입장벽을 다소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센터장의 현장 경험에 대한 자격이나 아동 돌봄에 대한 태도 등의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운영 제도를 제도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음. 또한, 현행 운영 모델을 지속하면서도 규제 및 제한사항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함
- 특히 현행 민간 신고제로 운영되는 센터 진입을 허가제로 전환하여 일정 수준이상으로 진입 장벽을 높이는 방안 고려하면서 센터장의 현장 경력을 포함한 자격 조건을 강화하는 것이 질 담보의 방편이 될 수 있음

□ 새로운 모델 도입 및 확산을 적극적으로 고려

- 현재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운영모델들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적용 및 확산할 필요가 있음. 대표적으로 일부 자치구³⁾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립형, 주민센터형과 함께 학교연계형을 고안해 볼 만함. 이때 구립형은 공공에서 직접 운영하는 모델이며 주민센터 연계형과 학교 연계형은 기존의 개인 운영을 유지하는 모델임

구분	공공운영 모델 (직영 모델)	민간운영 모델 (공공연계 강화)	
	구립형	주민센터 연계형	학교 연계형
특징	지역 특성에 맞는 적절한 위치와 기능을 고려하여 자치구에서 직접운영	마을공동체와 주민센터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연계	학교라는 공간과 지역사회 접근성을 활용한 연계
장점	가장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자치구 내 아이들의 돌봄 요구를 수용할 수 있기에 보편적 돌봄 실현에 적합함	마을과 주민들 속에서 아이들이 함께 성장해 나아갈 수 있으며 마을의 자원 활용 가능	공간 활용과 방과후 돌봄의 효율성 측면에서 큰 장점을 지님
단점	기존의 시설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함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에 그렇지 않은 지역은 도입이 쉽지 않음	학교 방과후 돌봄기능과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3) 구립형 모델은 [부록5] 참조

3. 종사자 임금 체계 마련과 인력 수준 제고

□ 종사자 임금 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

- 본 연구의 조사 결과 종사자들의 급여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없는 현실과 충분하지 않은 예산으로 인해 인건비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 지역아동센터 공공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됨
- 이로 인해 불안정한 운영 예산과 종사자들의 불안한 처우는 결국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충분하지 않은 예산 지원과 이로 인한 인건비 확보의 어려움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인건비가 운영비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현장에서는 인식하고 있음
- 인건비와 운영비가 정확하게 분리되어야 종사자 처우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지역아동센터가 질적으로 도약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종사자의 처우 개선은 매우 중요함. 즉, 종사자 처우 문제는 결국 아동들이 직접 마주하는 돌봄 담당자가 아동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과도 직결됨

□ 적절한 임금 수준과 경력 인정이 가능한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 특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은 여타 사회복지사들에 비해 낮은 수준임. 사회복지기관 간의 급여 체계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역아동센터 내에서도 센터 종사자들 간의 일관된 급여 체계가 필요함. 센터장과 생활복지사 간의 급여 차이의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각 센터 간 동일 업무, 동일 임금의 원칙이 어느 정도 지켜져야 함. 이는 종사자들의 불만 및 이직률 감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 표 IV-1 ■ 소관 부처별 임금실태(전국, 2013)

(단위: 원, 명)

구분		평균	응답자수
보건복지부 시설 (지역아동센터 포함)	평균 년 보수 총 액	25,973,229.7	10,246
	년 기본급 총액	18,722,739.9	9,651
	년 수당 총액	7,572,157.3	9,480
	년 성과급 총액	124,747.5	8,522
보건복지부 시설 (지역아동센터 제외)	평균 년 보수 총 액	26,389,277.0	9,849
	년 기본급 총액	18,921,389.4	9,305
	년 수당 총액	7,775,241.4	9,152
	년 성과급 총액	127,214.5	8,222
지역아동센터	평균 년 보수 총 액	15,651,694.6	397
	년 기본급 총액	13,380,447.4	346
	년 수당 총액	1,905,615.1	328
	년 성과급 총액	57,136.7	300
여성가족부 시설	평균 년 보수 총 액	21,769,446.9	556
	년 기본급 총액	16,858,355.4	537
	년 수당 총액	4,969,500.3	506
	년 성과급 총액	68,643.7	439

출처: 김유경 외(2014:188)

- ■ 표 IV-1 ■ 의 소관부처별 임금실태 평균 금액 산정에서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하면 모든 항목의 평균이 하락함
- ■ 표 IV-2 ■ 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임금 수준에 비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은 최하위 수준임. 정규직은 18,912,105원, 비정규직은 18,713,750원으로 20,000,000원~36,000,000원 정도 급여수준을 보이는 여타 시설들의 종사자 급여에 비해 최하위 수준임. 전체 이용시설 정규직 급여 평균이 31,770,113원이며 비정규직 급여 평균이 22,007,985원인 것과 비교해 봐도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지역아동센터 급여 수준은 사회복지시설 중에 최하 수준임

표 IV-2 이용시설 임금실태(노동부, 2016)

(단위: 원, 명)

	시설분류	정규직연간급여	응답	비정규직연간급여	응답
서울시	사회복지관	32,833,960	630	22,004,206	81
	노인복지관	32,544,731	123	16,986,716	31
	재가노인지원센터	28,359,918	74	14,449,409	23
	시니어클럽	32,315,250	8	13,743,429	7
	50플러스센터	25,814,127	6	20,000,000	1
	장애인주간보호시설	30,863,627	169	26,951,599	1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6,135,850	154	24,501,728	19
	장애인복지관	32,573,794	413	23,716,125	35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27,145,333	30	30,150,000	2
	수화통역센터	31,343,965	48	27,399,819	11
	장애인체육시설	36,265,013	28	18,462,709	14
	장애인의료재활시설	23,290,000	5	-	0
	노숙인종합지원센터	34,708,324	15	-	0
	쪽방상담소	33,426,628	5	-	0
	노숙인일시보호시설	33,718,286	12	20,185,075	2
	소계	32,545,003	1720	21,139,579	237
중앙부처 소관부서	지역자활센터	31,746,306	53	22,135,482	19
	지역아동센터	18,912,105	323	18,713,750	3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3,770,699	27	21,034,167	42
	소계	20,923,705	403	20,460,744	93
서울시 준용	가정폭력보호시설	28,954,887	17	29,234,067	3
	성폭력피해보호시설	27,931,850	12	24,734,550	4
	성매매피해지원시설	26,666,598	25	27,082,400	1
	소계	27,668,152	54	26,715,350	8
계		31,770,113	3325	22,007,985	390

출처: 서울시복지재단(2016:151)

- 종사자들의 처우 및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사회복지영역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 표 IV-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함

표 IV-3 사회복지영역 보수수준 및 급여유형 관련법령

구분	법률번호	관련조항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법률 제11442호, 2012.5.23., 일부개정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33호, 2014.12.9., 일부개정	제4조(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과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종사자들의 급여 수준과 급여 체계 제도화

□ 예산항목에서 인건비를 별도로 분리함으로써 운영 안정화 도모

- 이 과정에서 호봉제 등 종사자들의 경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급여체계를 개편해야 함. 이는 종사자들의 이직률을 낮추고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아동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종사자의 사기 진작에도 중요한 요소임

문제점		개선 방향
인력수		적정 상근인력 수 재산정: 구간 재설정 및 직무분석
인건비	수준	인건비 수준 현실화 ⁴⁾ : 사회복지사 급여 규정 등 형평성 고려
	회계 항목	인건비를 별도로 분리 ➡ 운영비는 재산정하여 추가 지원
경력 산정		호봉제 도입 필요 ⁵⁾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간 **형평성** + 사회복지기관 간 **형평성** 보장이 필요

4) 부록 3: 사회복지사 임금체계 현황 참고

5) 그 외에도 연봉제, 직능급(근속중심), 직무급(연공호봉제를 유지하면서 직무수당을 지급) 등의 임금 체계가 있으나 사회복지사 급여 규정 일반을 고려하면 호봉제가 적절함

-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호봉제를 적용할 뿐만 아니라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하여 지원하고 있음. 이때 사회복지사 등은 4급 8호봉이며 운영비의 경우 인건비로 전용 가능함. 시설 규모별로 5등급 차등 지원하며, 규모별 운영비 기준액은 다음 Ⅱ표 IV-4 Ⅱ와 같음⁶⁾

Ⅱ 표 IV-4 Ⅱ 종합사회복지관 규모별 운영비 기준액

(연간 / 단위: 천원)

구분	1,500㎡ 미만	1,500㎡ ~2,000㎡미만	2,000㎡~ 2,500㎡ 미만	2,500㎡~ 3,000㎡미만	3,000㎡ 이상
지원액	95,000	102,000	109,000	116,000	123,000

출처: 서울시(2016)

6) 종사자 처우개선 중에서 급여체계 관련한 개선 사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예를 살펴볼 수 있다. 제주도는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과 생활복지사의 급여를 여타 사회복지시설 보수지급 기준표에 맞추면서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은 사회복지시설 사무국장1호봉 수준으로 약 2천8백 여만원, 생활복지사는 4급 1호봉인 약 2천백 여만원 정도로 체계화 했다. 이 기준으로 인건비를 서울시와 비교하면, 이용아동 29인이하 시설로 상근종사자가 2명인 센터일 경우 운영비는 동일하게 제주와 서울 모두 약 4백4십 여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이 중에서 10%를 프로그램비로 사용해야 한다. 제주도는 센터장과 생활복지사 월급이 사회복지시설 기준표에 따라 고정되었기에 센터간 그리고 센터 내에서도 형평성이나 투명성 등에서 큰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된다. 인건비는 운영비 약 4백4십 여만원에서 지급되어야 하지만 제주도는 운영비 지원액 중에서 인당 약 150만원으로 인건비를 고정시키고 나머지 차액은 제주도 지방비에서 지원하고 있다. 프로그램 등 아동들을 위한 운영비가 100만원 이상 보장된다. 반면 서울시의 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약 4백4십 여만원에 대한 지출예시를 들어보면, 월급, 4대보험 그리고 퇴직적립금 등 지출되는데 센터장과 생활복지사 각각 165만원씩 지급한다고 가정해도 이미 약 330 여만원이 지급되고 4대보험과 퇴직적립금이 추가 지출되면 제주도 390만원과 비슷한 수준의 지출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지원이 없으면 아동을 위한 운영비로 사용가능한 금액이 제주도의 절반도 남지 않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 역시 인건비를 먼저 책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기준을 제도화 한 후에, 아동 돌봄을 위한 프로그램비 등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근본적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먼저,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하여 예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체계를 마련하고, 급여 수준을 통일하며 지역아동센터 간의 형평성과 타 사회복지시설과의 형평성을 갖춘 급여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경력 인정이 되는 호봉제 실시가 요구된다. 이는 지역아동센터 이직률, 아동에 대한 안정적 돌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실제로 본 연구의 조사결과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들의 높은 이직률에 대한 원인은 경력 인정·급여·수직적관계·네트워크부족·사회적인식과 자존심·업무강도(인력부족 등)·채용비리 등이 복합적으로 얹혀 있는 상황이었다.

□ 상근 인력 수준 기준에 대한 재편 필요

- 현재 설정되어 있는 아동수 대비 상근인력수를 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 아동 20인 이상, 30인 이상 등 아동의 증가에 비해 상근종사자 인건비가 보장되지 않으며 무엇보다 학교 등의 방과후 돌봄과는 직무 성격이 상이한 만큼 이를 고려하여 직무분석을 통한 적절한 상근종사자 수에 대한 재산정을 고려해야 함

표 IV-5 아동복지법 시행령 상 필수 인력 규정

(단위: 명)

구분	센터장	생활복지사	영양사
아동 30명 이상	1	2 (50명 초과 시 1명 추가)	1 (아동5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아동 30명 미만 10명 이상	1	1	-
아동10인 미만	1	-	-

주: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11, 부칙 제4조에 따라 아동 10인 미만 시설 배치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기존 시설은 인정되나 '12. 8. 5. 부터 10인 미만 시설은 신규설치 신고할 수 없음. 기존('12. 8. 4. 이전) 10인 미만 시설은 10인 이상으로 변경가능 기존 시설(10인 이상)에서 10인 미만 시설로 변경 불가.

출처: 보건복지부(2017:16)

표 IV-6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전담인력 규정

전담인력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1명	25명 이하	29명 이하
2명	추가실 발생 시 (시간제 교사)	30명 이상
기타 인력	- 단체활동 지도강사 - 돌봄 보조인력	- 아동복지교사&프로그램 강사 - 자원봉사자&일자리지원사업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2017)

보건복지부(2017).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표 IV-7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상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구분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만 1세 미만	3명당 1명	100명 이상인 경우 1명	100명 이상인 경우 1명	40명 이상- 80명 이하 1명, 80명 초과 시마다 1명씩 증원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	5명당 1명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	7명당 1명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	15명당 1명			
만 4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	20명 당 1명			
취학아동	20명당 1명			
장애아	3명당 1명			

자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제10조 관련)

출처: <http://www.law.go.kr/법령/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00487,20170317>

- 지역아동센터는 소규모 운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행정, 돌봄,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 학교에 비해 집중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많은 경우도 존재하기에 표 IV-5, 표 IV-6, 표 IV-7의 돌봄 인력 규정을 기준으로 하되 인력 산정에는 질적인 부분도 고려하여야 함⁷⁾

7)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아동복지법,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등을 근거로 운영된다. 이에 처우 관련 사항을 명시하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에 대한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 동법 시행령의 준수뿐만 아니라, 서울시 조례 개정을 통해 좀 더 적극적인 처우개선이 가능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2014년 제정)' 제7조에서는 3년에 한 번 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종합계획 수립내용에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를 위해 포함되어야 할 종사자 처우 개선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4. 지역아동센터 평가 체계 개편

□ 평가 체계의 비효율성 개선의 필요성

- 본 연구의 조사 결과 현행 평가 체계의 서류 중심성이 돌봄 현장에서 문제시 되고 있었음. 이러한 서류 평가는 평가를 위한 평가를 낳게 되고 아동 돌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아동복지법

[시행 2017.5.30.] [법률 제14224호, 2016.5.29., 타법개정]

제59조(비용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2. 보호대상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 보호에 따른 비용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 감독, 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4.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4의2. 제26조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5.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필요한 비용
6. 제38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비용
7.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8. 제58조에 따른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비용

동법 시행령 제54조(비용보조)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9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용료를 받는 아동전용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비용으로 한정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의 평가 결과 등 해당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실적을 고려하여 보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8.] [서울특별시 조례 제6016호, 2015.10.8., 타법개정]

제7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사업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3.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시행 2014.3.20.] [서울특별시 조례 제5681호, 2014.3.20., 제정]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평가 관련 법, 행정체계 정비의 필요성

- 법령과 행정체계를 정비하여 방과후 아동 돌봄에 대한 종합체계를 마련해야 함. 특히 현재 3개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방과후 돌봄 관련 사업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있음(권윤희, 2006)
- 그리고 이는 지역아동센터 평가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평가와 각종 관리감독에 대해 불필요하거나 중복적인 사항은 삭제하고 현장중심의 평가체제로 개편해 나아갈 필요가 있음

□ 평가 인력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필요

- 평가 혹은 점검을 실시하는 인력에 대한 부분 역시 개선되어야 함. 현재 공무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점검의 경우 담당 공무원에 따라 점검 내용과 강도가 상이하고 순환 근무하는 공무원의 특성상 전문성을 가지고 제대로 점검을 해내기 쉽지 않은 상황임
- 따라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원단 등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통한 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가 현장점검 업무를 지원해줄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인력 양성과 지원 및 배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이는 점검을 하는 입장에서 도 점검을 받는 입장에서든 매우 중요한 사항임

□ 정성평가 강화 필요

- 서류 중심이 아닌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점검을 위해서는 정성평가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평가단 풀을 구축해야 하며 현장을 잘 아는 생활복지사와 아동 위주의 질적평가⁸⁾ 체계 도입은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만함. 특히 소규모로 운영되는 센터의 특성상 더더욱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장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운영 투명성 달성과 내실 있는 센터 정립에 필요한 요소임

8) [부록 6] 의 지역아동센터 회의자료와 회의록은 위원회를 통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내용을 보여주며 이는 여러 관계자 혹은 주체들이 참여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질적으로 평가하고 점검할 수 있는 한 방안이 되어 줄 수 있음

현장 중심 평가	전문 평가단 구성	교육 지원 강화
서류 중심 평가 지양 아동 돌봄 현장 반영	정량평가 + 정성평가	평가담당공무원 교육 강화

□ 방과후 돌봄의 주축으로써의 지역아동센터 기능 재정립

- 전통적으로 가정과 지역사회의 뒤편이었던 방과후 아동의 돌봄은 특히 2008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공적 영역의 사업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학교 및 돌봄교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이며(김광혁, 2014) 그 중에서도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기반의 대표적인 돌봄 기관임
- 서울형 지역아동센터 구축은 이상의 정책대안을 기반으로 함과 동시에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아동센터 기능에 있어서 자치구별 다양성을 살리고 아동들이 자라나는 골목골목에 지역아동센터가 뿌리내릴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결국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의 구심점 역할을 함과 동시에 지역 기반 돌봄의 실패줄로 거듭나야 할 것임. 그리고 이는 서울시 방과후 돌봄 공공성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추후 연구에서는 전문가 설문조사, FGI 등을 통해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내부자와 외부자의 시각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5. 기타

□ 재정투명성 확보

-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아동복지법,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등이 관련되어 있는 만큼 위와 같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에 대한 합리적이고 제도적인 일관된 기준 마련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그 외에도 장기적이고 거시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재정투명성 확보임
- 이를 위해 재정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재정정보시스템이나 정보공개 혹은 재정분석제도, 재정 사업성과 관리제도 등이 도입돼 왔음. 특히 금융기관, 예·결산 심의 운영위원회 활용과 함께 영수증 발급 의무화, 회계 교육 및 전문 회계 인력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 노력을 해왔음
- 예산의 공공성은 예산 전 과정에서 특정 이해집단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예산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기획, 편성, 심의, 집행, 결산하는 것을 의미함. 이런 예산 공공성을 위해서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 예산의 심의 및 결산의 책임성, 전문가 및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예산의 공공성 확립과 지속가능한 유지가 가능하게 됨(정창수, 2017).

□ 정보공개

- 투명성과 참여성 확보와 함께 재정과 관련된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정보공개와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임(정창수, 2017). 정보공개는 정보공개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체계적인 관리가 수반되어야 함
- 파편화 된 자료는 정보화되기 힘들며 따라서 공개된 자료가 정보로 기능하려면 해당 정보와 자료들은 체계적으로 분류되고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 특히, 예산 자료와 결산자료가 연계되어 공개되는 것이 중요함. 예산과 결산자료를 통합한 데이터베이스가 마련되어야 전문가들의 예산, 결산 검증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

- 특히 보조금 지급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 예산, 기금, 지자체 보조금 수혜자 데이터베이스가 통합적으로 공개되는 것이 예산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요함
- 이에 더해 지방재정과 관련된 경우 참여예산제도 등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대의민주주의 약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해서는 아동인지예산과 주민참여예산의 결합을 고려해볼 수 있음. 현재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여성비율은 성인지예산 관련 지표로 포함되어 있음. 이를 확대하여 지역아동센터 예산 전반의 개선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

□ 참여성 강화

- 참여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모니터링단에 대한 교육 지원이 필요함. 시민의 이해와 소통하지 않고, 시민의 이해와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서비스 제공은 그 제공 주체가 비록 비영리기관 또는 공적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시민의 이해를 전제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음(윤홍식, 2012). 지역아동센터의 재정 운영 및 예산 공공성 강화는 이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임

투명성: 형평성 보장 / 매뉴얼화

- 공개채용 / 자치구 인력풀, 급식 관리
- 급식 체계 개편
- 보수/인력 체계 개편 등 종사자 처우개선: 시설장-생활복지사 /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간 / 센터별 생활복지사 간 편차 축소 : 경력인정 등으로 이직률 감소와 전문성강화
- * 지역아동센터의 자정 노력과 신뢰 강화(결산 과정에서 자체적 투명성 강화 노력)
- 재정투명성 확보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
-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 예산의 심의 및 결산의 책임성, 전문가 및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
- 정보공개와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 예산 자료와 결산자료 연계 공개
- 예산과 결산자료를 통합한 데이터베이스 마련
- 보조금 지급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 예산, 기금, 지자체 보조금 수혜자 데이터베이스 통합 공개가 중요

보편성: 포괄성 보장 / 제도화

- 구립형 등 공공연계 운영모델 적용(일반아동 포괄)
- 인식개선
- 평등하고 공정한 근무환경 조성

참여성

- 주민참여예산(예산참여): 지방재정과 관련된 경우 참여예산제도 등 직접민주주의 요소 강화
- 아동인지예산과 주민참여예산의 결합: 주민참여예산에 아동인지예산 혹은 아동영향평가 적용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여성비율은 성인지예산 관련 지표로 포함)
- 운영위원회(정성평가 활용)
- 현장점검단 구성(평가 참여)

■ 그림 IV-4 ■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및 내실화 구성 요인

□ 적절한 휴게 보장

- 또한, 종사자의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휴게시간 및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연차휴가를 보장하고 대체인력에 대한 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함
- 현재 지원되고 있는 다양한 보조 인력들에 대한 인력풀에 대한 관리도 자치구에서 강화해야 할 것임. 현장에서는 이들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질 보장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으며, 따라서 필요한 인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양과 질을 지자체 차원에서 공급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센터나 기관을 선정하여 인력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무엇보다도 상근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돌봄 관련 교육과 같은 관련 교육들에 대해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들 역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임

□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

- 이상의 내용을 보편성, 회계의 투명성, 정보의 공개성, 참여성, 사회적 책무성 등 공공성의 제 측면에서 정리하면, 우선적으로는 채용, 자치구 인력풀관리, 급식관리 보수체계 전반적으로 투명성과 형평성 그리고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함
- 구립운영모델이나 지역사회 지원 연계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현장점검이나 예산 등에 주민참여 혹은 아동인지적인 영향평가를 고려해볼 수 있음
- 생활복지사들에게는 종사자들에 대한 호칭을 비롯하여 사회적인 인식과 대우 그리고 수평적인 센터 내의 관계, 종사자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등이 아동 돌봄 업무를 지속시키는 추동력이 되기도 하고 업무를 중단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함
- 따라서 평등하고 공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정책결정자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
- 그 외에도 체계적인 매뉴얼을 보급하여 프로그램의 보편성과 참여성을 확보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종사자 교육을 강화해야 함. 이는 종사자의 전문성 및 종사자 처우 개선과 함께 맞물린 사안인 만큼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함

- 한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지원 역시 중요함.
그 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홍보 강화가 그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음
- 마을 혹은 공간을 살리기 위한 혁신을 염두에 두고 마을공동체의 중심에서 마을의 놀이터나 주변 마을을 살리는 중심에 지역아동센터를 위치시키는 것도 지역 연계에 효과적일 수 있음. 이를 위해 대부분 골목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위치를 잘 보일 수 있는 표식을 마련하는 등의 작은 지원으로 지역 곳곳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음을 지역 주민이 인식 가능함. 이는 센터 아동들의 자부심, 지역아동센터의 위상,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영향력 등 많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됨



그림 IV-5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홍보 광고

- 지역사회 기반의 방과후 돌봄에 대한 모델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 중앙부처간, 중앙 및 지방정부 간, 지역사회 내 방과후 단체가 긴밀하게 연계되는 것이 핵심임
- 따라서 일정 부분은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비영리단체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운영되는 유사사업과 방과 후 활동기관들을 연계 혹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방과후활동지원센터’ 혹은 ‘협의회’ 형태 등의 지원체제가 필요함(김민호, 2006)
- 기존에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협력’, ‘통합과 협력 혼합형’으로 나아나기를 가장 많이 원했고 정부 역시 연계와 협력이라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지역돌봄협의체를

잘 운영하도록 했으나 실제로는 새로운 아동 발굴·배치 및 정보공유 등 낮은 수준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었음(서혜전·김진숙·최윤옥, 2014). 이에 대한 현실적인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때임

>>> 참고문헌

- 권윤희, 2006, “방과후 아동 보육 제도 연구”, 「방과후아동지도연구」 2006(3), pp.23-49.
- 길은배, 2016, “청소년 방과후돌봄 운영 공간의 시설·설비 기준 개선 방안 연구”, 「청소년 복지연구」 18(3), pp.99-122.
- 김광혁, 2014, “방과후돌봄 서비스 범정부 통합지원(안)의 결정과정 및 내용 분석”, 「사회과학논총」 29(1), pp.131-150.
- 김동노, 2014, “일반논문: 개인주의, 공동체주의, 그리고 한국사회의 공공성”, 「사회 이론」 45(단일호), pp.77-110.
- 김미숙, 2006, “방과후 아동보육서비스 전달체계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26(2), pp.3-36.
- 김민호, 2006, 지역사회 기반 ‘방과후 활동’ 모형 탐색, 「한국초등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6(2), pp. 15~47.
- 김선훈, 2015, “초등학교 돌봄서비스의 목적 논의: 공공성과 아동 자기결정의 자유에 근거하여”, 「한국초등교육」 26(4), pp.515-535.
- 김세훈, 2008, “공공성에 대한 사회학적 이해”.
- 김수동, 2007, “우리나라 방과후 학교의 활성화 방안: 외국의 방과후 교육활동이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일본교육학연구」 12(1), pp.89-109.
- 김수동, 2008, “외국의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정책의 최근 동향 분석 한국 일본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국일본교육학연구」 13(1), pp.103-125.
- 김수동, 2013, “일본의 방과후 아동교실 운영에서 지역교육력 활용 사례의 특징 및 시사”, 「열린교육연구」 21(2), pp.131-153.
- 김수동, 2015, “일본의 방과후 아동교실 정책과 운영사례 분석”, 「한국일본교육학연구」 19(2), pp.87-109.
- 김수동·김정주, 2004, “국내외 방과 후 교육활동 사례 수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양희, 1995, “보육시설 종사자 조직체계 및 배치기준 합리화 방안-영양사, 간호사, 취사부를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2, pp.59-79.
- 김영란·황정임, 2011, 「맞벌이가구 자녀돌봄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 모델개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유경·김미숙·박경수·윤덕찬·정희선·김가희, 201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재인·이향란, 2004, “외국의 방과후 아동보육제도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김재인·이향란, 2005, “스웨덴과 일본의 방과후 아동보육제도 비교연구”, 『비교교육연구』 15(2), pp.111-148.
- 김정수·김세훈·현진권·이준형·양현미·이기호, 2009, 「공공성: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접근」, 서울:미메시스, pp.16-57.
- 김정원·김유정, 2006, “방과후 프로그램의 실태와 부모와 교사의 요구에 관한 연구”, 『한국 아동권리학회』 10(1), pp.49-72.
- 김정율·권일남, 2009, “청소년 육성 및 안전망으로서의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모델연구 [강서푸른이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6(4), pp.73-99.
- 김지경·김곤희, 2013,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공백 유무 및 일수의 결정요인”,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4(1), pp.51-70.
- 김치영·김선미, 2014, “지역아동센터 발달과정과 발전방향 연구”, 『아동교육』 23(4).
- 김호순·강동균·이필만, 2014,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을 위한 통합 운영모형에 따른 전달체계 개발”, 『청소년학연구』 21(1), pp.395-415.
- 김홍원·진미경·김연석·김새봄·최은아, 2008, 「방과후학교 성과분석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노병일·김현채, 2005, “지역사회중심의 방과후 아동보호를 이용하는 부모의 욕구와 만족도에 대한 연구”, 『지역사회학』 7(1), pp.167-191.
- 노성향·조선하·박지희, 2007,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보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류무순, 2013,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 청주시 지역의 아동을 중심으로」,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연규, 2013, 「복지국가 아동 돌봄 서비스 공공성 강화의 사회경제적 조건」, 『한국가족복지학』, 39(단일호), pp.177-204.
- 박미정, 2011, “포괄적 보육서비스 실천을 위한 지역사회자원 연계 활성화 방안-보육시설종사자 인식을 중심으로」, 『아시아아동복지연구』 9(3), pp.87-102.
- 박신규·조아영, 2012,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운영개선방안 연구」, 전북발전연구원.
- 박애리·변은지·김유나·황영은·고연정, 2012, 「서울시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방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백선희, 2011,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백완기, 2007, “논단: 한국사회와 행정; 한국행정과 공공성”,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8(2), pp.1-22.
- 보건복지부, 2012, 『2012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
- 보건복지부, 2014, 『2014년 지역아동센터 운영매뉴얼』.
- 보건복지부, 2015, 『전국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보고서』.
- 보건복지부, 2017, 『2017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

- 보건복지부, 2017, 『2017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 서울시, 2016, 『2016년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지원 계획』.
- 서울시, 2016, 『서울시 아동복지사업안내』.
- 서울시, 2017, 『2017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계획』.
- 서울시, 2017, 『지역아동센터관련 지자체 자체사업 현황』.
- 서울특별시교육청, 2017, 『2017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 서영숙·박진옥·서혜전, 2009, “방과후 아동지도”, 『아동학회지』 30(6), pp.281-295.
- 서울시복지재단, 201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방안 연구』.
- 서혜전·김진숙·최윤옥, 2014, “방과후돌봄서비스 협력의 실태와 협력 모델 제안에 대한 연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014(7).
- 성효순, 2016, 『아동복지정책의 변동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혜림·조영희·정영금·고선강·김유경, 2010,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자녀돌봄 요구 및 정책 개발 연구』, 여성가족부.
- 송혜림·조영희·라휘문·김유경, 2011, 『조손가정 지원사업 평가지표 개발 및 성과분석』,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신진옥, 2007,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담론전략”, 『시민과 세계』 11, pp.18-39.
- 안현미·김송이, 2011, “한국의 보육공공성과 ‘제3의 보육체계’: 서울형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69, pp.107-137.
- 양성욱·노연희, 2012,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서비스 주체에 따른 공공성의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3(1), pp.31-57.
- 유희정·김은설·유은영, 2006,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 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 윤승희, 2012, “돌봄을 통해 본 복지국가 유형화 연구: 돌봄의 제도와 문화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6(단일호), pp.31-59.
- 윤향미·조문석·오재록, 2013, “방과후 돌봄서비스사업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7(1), pp.181-204.
- 윤홍식, 2012, “사회서비스 정책과 공공성: 공공성을 둘러싼 논란과 적용”, 『참여연대: 보편적 복지확대를 위한 공공성 강화방안 토론회』, pp.7-39.
- 은재호, 2008, “공공성 개념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3), pp.213-239.
- 이민희, 2013, “독일의 방과후학교 정책사례와 시사점”, 『글로벌청소년학연구』 3, pp.5-24.
- 이동수, 2009,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소진요인이 이직의도와 조직시민행동에 미친 영향”,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6(2), pp.129-149.
- 이봉주·김진숙·안재진·유조안·유민상·최창용·이주연·김윤지·박호준, 2016,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이성한, 2012, “일본 방과후 정책에 관한 고찰: 방과후 아동교실, 방과후 아동클럽, 방과후

- 아동플랜을 중심으로”, 『한국일본교육학연구』 16(2), pp.1-20.
- 이충권, 2012, “취학 아동 보호의 공공성 확대 방안”, 『참여연대: 보편적 복지확대를 위한 공공성 강화방안 토론회(토론문)』, pp.160-163.
- 이태수, 2012, “취학 아동 보호의 공공성 확대 방안”, 『참여연대: 보편적 복지확대를 위한 공공성 강화방안 토론회』, pp.130-148.
- 이향란, 2006, “스웨덴과 미국의 방과후 아동보육제도 비교연구”, 『방과후아동지도연구』 3(2), pp.17-35.
- 이현주·정익중(2012).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복지혼합과 공공의 역할 재구축”. 『한국사회정책』 19(1), 65-94.
- 임의영, 2003, “기획논문: 공공성: 공공성의 개념, 위기, 활성화 조건”, 『정부학연구』 9(1), pp.23-52.
- 임의영, 2009, “공공성의 개념구조와 유형”,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pp. 1215-1232.
- 임의영, 2010, “공공성의 유형화”, 『한국행정학보』 44(2), pp.1-21.
- 장수정, 2010, “또 하나의 돌봄 책임의 사회화: 학교 그 이후의 시간”, 『월간 복지동향』 137, pp.22-24.
- 장지연, 2010, “돌봄노동의 사회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한국행정학회』 2010(13), pp.1-27.
- 장지연, 2011, “돌봄노동의 사회화 유형과 여성노동권”, 『페미니즘 연구』 11(2), pp.1-47.
- 정은수·임효연, 2017, “아동 돌봄의 사회화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컨텐츠학회논문지』 17(3), pp.431-443.
- 정창수, 2017, 『예산 공공성 강화 위한 구체적 11가지 방안, 예산 투명성 강화 방안 및 예산 감시 제도 개선 토론회』.
- 조미숙, 2006, “방과후 교육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스웨덴, 독일, 미국, 일본”, 『인하교육연구』.
- 조성숙·정은아·최윤옥, 2015, 『지역아동센터 대구지원단 연구조사보고서』, 지역아동센터대구지원단.
- 조영희, 2012, “아동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 현황과 가족정책적 과제”,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139-155.
- 채구묵, 2003,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 개선 과제 및 전략”, 『사회복지정책』 16(단일호), pp.79-106.
- 채구묵, 201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조건 실태, 개선 방안 및 전략”, 『비판사회정책』 33, pp.45-97.
- 최태연, 2008, “서양철학에서 본 공공성”, 『기독교철학연구』 9, pp.25-44.
- 홍성태, 2008, “시민적 공공성과 한국 사회의 발전”,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3, pp.72-97.
- 홍성태, 2012, “공론장, 의사소통, 토의정치: 공공성의 사회적 구성과 정치과정의 동학”, 『한국사회』 13(1), pp.159-195.

- 황선준, 2013, “스웨덴의 방과 후 활동과 시사점”, 『스칸디나비아연구』 14, pp.245-272.
- Haque, M. S., 2001, “The diminishing publicness of public service under the current mode of governan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1(1), pp.65-82.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00487,20170317\)](http://www.law.go.kr/법령/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00487,20170317))
- 독일통신원, “독일의 초·중·고등학생 돌봄 프로그램 현황”, 2013년 8월 25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http://edpolicy.kedi.re.kr/EpnicGlobal/Epnic/EpnicGlobal01Viw.php?Ac_Group=4&Ac_Num0=15839
- 스웨덴 국립교육청, “학교형태”<https://www.skolverket.se/skolformer>
- 일본통신원, “일본의 초·중·고등학생 돌봄 프로그램 현황”, 2013년 8월 25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http://edpolicy.kedi.re.kr/EpnicGlobal/Epnic/EpnicGlobal01Viw.php?Ac_Group=4&Ac_Num0=15842
-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방과후 아동 종합플랜”.
<http://www.mhlw.go.jp/english/policy/children/children-childrearing/dl/150407-02.pdf>
- 주독일한국교육원 홈페이지, “온종일 학교 정책”.
<http://www.keid.de/board.php?board=keidb204&command=body&no=430>

Abstract

Research on Plans to Reinforce and Strengthen Publicness of Child Care Community Center of Seoul

Eeh-Eun Song⁹⁾

Child Community Center of Seoul, currently providing community based after-school care services has 422 offices. Started off private, Child Community Center entered public domain in 2004 and expanded in great quantities. However qualitatively, there are more things to be done. Substantial growth and publicness of Child Community Centers are of crucial importance to the quality of after-school care services. In order for us to establish the public role with regard to the future prospects of child care, more discussions on the publicness of after-school care services by Child Community Centers. As such, this research seek to comprehend the current condition of operation and possible degradation factors of Child Community Center of Seoul. Based on information gathered, it proposes the ways to strengthen publicness and to seek substantiality of Child Community Center of Seoul. Among many related issues, we address the ones pressed for time or importance.

As for research, previous literatures and surveys, data from the City Hall of Seoul and autonomous Gus in Seoul, and administrative data from other cities and provinces are gathered and analyzed. Also we interviewed and surveyed the heads of 422 Child Community Centers in Seoul. Focus Group Interview on the heads and welfare workers and interviews on civil servants at autonomous provinces and the City Hall of Seoul followed suit. Throughout the process, from the survey

9) Family Team, Family Policy Office of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questionnaire development to FGIs, constant feedback from professionals in related fields were gathered and reflected.

Issues in need of immediate attention and improvement among the possible degradation factors on the publicness of Child Community Center operations can be grouped into three. First, labor conditions of workers at community centers need to be improved.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involve numerous matters such as establishing wage system, specifying budgets, assuring recess times and spaces, recalculating proper employment size, and dealing with unnecessary administrative tasks. This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actualization of operational expenses. Second group of issues are related to the overall transparency in operations of Child Community Centers in sectors such as meal services, hiring, accounting and etc. Third, community centers can benefit greatly from reorganizing evaluation and assessment system, securing spaces for community based universal care, activating connections, and raising awareness on the matter.

In order for mentioned improvements to realize, we suggested Child Community Centers to become more institutionalized and manualized while promoting and achieving fair and equal relationships among and between social welfare facilities and community center workers. We propose to make entry barriers higher, and to apply and diffuse public management models. Utilizing public meal services and publicly managed manpower pools by way of operating centers at autonomous provincial level could well be an alternative to existing issues on labor forces and meal services.

부 록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및 내실화 방안 마련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성평등 희망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 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 교육, 교류 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서울시 출연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종사자실태를 조사하여 서울시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통계법 제 33조에 의거하여 익명이 보장되며 신분상의 노출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귀하의 의견은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및 내실화 방안 마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사내용은 연구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을 거듭 강조하며, 잠시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3월

조사주관기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가족팀

협조 및 지원: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정책담당관

깨끗하고 투명한 일 처리로 청렴재단, 청렴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A. 일반적 사항

연령	만 ()세	
성별	① 여성 ② 남성	
최종 학력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전문대학교 졸업(중퇴포함) ③ 대학교 졸업(중퇴포함) ④ 대학원 석사 졸업 ⑤ 대학원 박사 졸업	
최종 학위 전공	① 사회복지 ② 아동 ③ 아동복지 ④ 기타()	
자격증 (복수응답)	① 사회복지사(급) ② 보육교사(급) ③ 교원자격증()교사()급 ④ 영양사 ⑤ 기타()	
특성별 운영 (중복체크)	2016년	① 거점형 ② 특수목적형 ③ 토요일형 ④ 해당없음
	2017년	① 특수목적형 ② 토요일형 ③ 해당없음
운영 기간	① 2년 이상 ② 1년 이상~2년 미만 ③ 1년 미만 신고시설	
	신고년도: ()년도 / 운영기간: ()년()개월	
소속기관 소재지	서울시 ()구	
기관 유형	① 공립형 ② 일반형	
운영 주체	①개인 ②정부기관 ③사회복지법인 ④재단법인 ⑤사단법인 ⑥종교단체 ⑦시민단체 ⑧주민자치위원회, 아파트운영회 등 ⑨지자체직영 ⑩기타()	
이용아동수	① 10명 이상~20명 미만 ② 20명 이상~30명 미만 ③ 30명 이상~40명 미만 ④40명 이상~50명 이상	
특별시간 이용 아동수(월평균)	① 야간보호 이용 ()명 ② 토요일 이용 ()명 ③ 공휴일 이용 ()명	
상근종사자수	① 2인 ② 3인 ③ 4인	
정부 기타지원인력 및 자원봉사자 수(월평균)	① 아동복지교사 ()명 ② 공익근무요원 ()명 ③ 일자리지원사업 ()명 ④ 자원봉사자 ()명	
근무경력	지역아동센터장 총 근무경력 ()년 ()개월 지역아동센터 총 근무경력 ()년 ()개월 현재의 지역아동센터 근무경력 ()년 ()개월 사회복지 관련 기관 근무경력 ()년 ()개월	
본인소득	월평균 실수령액 ()원	
가구 총 소득	월평균 실수령액 ()원	

B. 공공성과 내실화

※ 1번부터 3번 문항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과 내실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항목입니다.

문1)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문1-1번 문항으로) ② 아니다 (☞문2번 문항으로)

문1-1)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내실화가 공공성 강화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그렇다

문2)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부터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 - () - () - () - ()

- ① 보편성 ② 회계의 투명성 ③ 정보의 공개성 ④ 참여성 ⑤ 사회적 책무성

문3) 다음의 항목이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공공성을 평가하는데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보편성	A. 표준적인 프로그램 운영 여부	①	②	③	④	⑤
	B. 시간연장, 토요일, 공휴일, 장애아동 대상 등 맞춤형 돌봄 제공 여부	①	②	③	④	⑤
	C. 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제공	①	②	③	④	⑤
	D. 정기적인 기관 자체 평가 실시 여부	①	②	③	④	⑤
회계의 투명성	A. 운영위원회의 예결산 심의 여부	①	②	③	④	⑤
	B. 이용료 통장 별도 구비 여부	①	②	③	④	⑤
	C. 전산화된 프로그램을 통한 세입세출 관리	①	②	③	④	⑤
	D. 지출 시 전용카드, 계좌이체, 현금영수증으로만 모두 결제	①	②	③	④	⑤
	E. 센터장이나 담당자의 관련 교육 참여 여부	①	②	③	④	⑤
정보의 공개성	A. 이용(상담, 프로그램, 식단 등)과 관련된 정보를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	①	②	③	④	⑤
	B. 지도점검 및 평가 결과 공개 여부	①	②	③	④	⑤
	C. 관련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	①	②	③	④	⑤
	D. 인터넷을 통한 정원, 인력, 이용료 등에 내용 공개 정도	①	②	③	④	⑤

문항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참여성	A. 운영위원회 구성 및 정기적인 운영 여부	①	②	③	④	⑤
	B. 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여부	①	②	③	④	⑤
	C. 의사결정과정에 종사자 참여 여부	①	②	③	④	⑤
	D. 지역사회 전문인력의 운영 지원 여부	①	②	③	④	⑤
사회적 책무성	A.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근로계약, 4대보험, 퇴직금 적립 등)	①	②	③	④	⑤
	B. 지역 내 타 지역아동센터와의 협력 정도	①	②	③	④	⑤
	C. 학교와의 연계 정도	①	②	③	④	⑤
	D. 일반 아동까지 포괄하는 보편적인 돌봄 역할 수행 정도	①	②	③	④	⑤
	E. 저소득 계층, 취약 계층 아동에 대한 돌봄 역할 수행 정도	①	②	③	④	⑤

C. 재정 운영

※ 4번부터 5번 문항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질문항목입니다.

문4) 지역아동센터 운영상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5번 문항으로) (문4-1번 문항으로)

문4-1) 지역아동센터 운영상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① 재정상황 ② 인력부족 ③ 공간열악 ④ 프로그램부실 ⑤ 기타()
 (문4-2번 문항으로) (문5번 문항으로)

문4-2) 추가 재정지원이 필요한 항목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① 종사자인건비 ② 프로그램비 ③ 급식비 ④ 임대료 ⑤ 기타운영비

문5)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있어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정부: 1순위() 2순위() / 서울시: 1순위() 2순위() / 자치구: 1순위() 2순위()

- ① 충분한 예산지원 ②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③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및 위상 강화
 ④ 종사자 처우 개선 ⑤ 매우 그렇다

※ 6번부터 8번 문항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예산에 대한 질문 항목입니다

문6) 2016년 지역아동센터 총예산은 얼마입니까 ()만원

문7) 현행 예산 항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문7-3번 문항으로)

(문7-1번 문항으로)

문7-1) 어떤 항목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종사자 인건비 항목 분리 ② 후원금의 임대료 사용 상한 규정 완화
③ 급식비 지원금 사용 규제(문7-2번 문항으로) ④ 프로그램비 하한 규정 완화

문7-2) 급식비 항목에 대해 어떠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인당 적정 단가 조정 ② 친환경급식 제공 여부에 따른 추가 지원
③ 급식비 지원과 장기결석종결 신청 아동 출석 연계 투명성 강화 ④ 타 항목과 통합 운영 ⑤ 기타()

문7-3) 인건비, 프로그램비, 급식비 등 예산 관련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주시시오

[제언]

※ 8번부터 11번 문항은 지역아동센터 예산 차등지원 및 지출점검에 대한 질문 항목입니다

문8)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국가 지원 예산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센터의 유연한 예산 사용(신축적인 사용)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 | |
|----|---|---|---|---|---|---|---|---|---|------------|
| 통제 | | | | | | | | | | 유연
(신축) |
| ← | | | | |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

※ 10번부터 12번 문항은 지역아동센터 결산 등 평가 대한 질문 항목입니다

문10) 지역아동센터의 실제 운영이 사업계획서·예산서와 연계성 있게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11) 다음의 사항이 매년(혹은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까

문항	그렇다	아니다
A. 지도점검	① (☞문11-1번, 문11-2번 문항으로)	② (☞문12번 문항으로)
B. 평가	① (☞문11-1번, 문11-2번 문항으로)	② (☞문12번 문항으로)
C. 결산(정산)	① (☞문11-1번, 문11-2번 문항으로)	② (☞문12번 문항으로)
D. 감사	① (☞문11-1번, 문11-2번 문항으로)	② (☞문12번 문항으로)

문11-1) 다음의 사항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문항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A. 지도점검	①	②	③	④	⑤
B. 평가	①	②	③	④	⑤
C. 결산(정산)	①	②	③	④	⑤
D. 감사	①	②	③	④	⑤

문11-2) 다음의 사항이 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과 내실 있는 운영에 도움이 됩니까

문항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A. 지도점검	①	②	③	④	⑤
B. 평가	①	②	③	④	⑤
C. 결산(정산)	①	②	③	④	⑤
D. 감사	①	②	③	④	⑤

문11-3)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음의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A. 현행 시스템을 유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B. 정기적인 평가를 강화한다	①	②	③	④	⑤
C.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D. 민간평가단 제도를 도입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12) 운영위원회를 반기별 1회 이상(운영지침 규정) 개최하십니까

- ① 그렇다 (☞문12-1번 문항으로) ② 아니다 (☞문12-3번 문항으로)

문12-1) 운영위원회에서 다음의 사항을 논의하십니까

문항	그렇다	아니다
A. 시설 운영 전반	①	②
B.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①	②
C. 예산과 결산의 투명한 처리	①	②
D. 종사자 처우 및 고충	①	②
E.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①	②
F. 지역사회, 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①	②

문12-2) 위의 논의 사항들을 회의록에 모두 기록하십니까

- ① 그렇다 (☞문12-4번 문항으로) ② 아니다 (☞문12-3번 문항으로)

문12-3)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언]

문12-4) 운영위원회 회의 진행에 있어서 개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회의록 작성을 보다 충실하게 해야한다
② 논의 안건을 다양화해야 한다
③ 논의 안건을 보다 현실에 맞게 구성해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예산 및 결산 등 재정 사항을 더 충실히 논의해야 한다
⑥ 내실있는 센터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논의 내용이 보다 발전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현재 매우 잘 운영되고 있다

※ 13번부터 14번 문항은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및 평가 결과의 환류에 대한 질문 항목입니다

문13) 예산, 결산(지도점검 및 평가)의 환류(피드백)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14) 현행 지도점검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수입과 지출의 결과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함 ②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성과 평가가 필요함

C. 종사자

※ 15번부터 17번 문항은 전반적인 인력 현황에 대한 질문 항목입니다

문15) 현재 업무 대비 인력 수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16) 종사자들은 모두 8시간 이상 상근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문17) 아동복지교사 파견은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됩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⑥ 해당없음

※ 18번부터 22번 문항은 종사자 전문성 및 고용안정성과 관련된 질문 항목입니다

문18) 종사자(생활복지사) 업무 대비 급여 수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19)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 ① 정기 의무교육 강화 ② 포괄적인 경력인정 ③ 자격제한 강화 ④ 새로운 자격검증제도 도입 ⑤ 행정자원전문인력 배치

문20) 종사자의 근무 지속성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 ① 사회적 위상 강화 ② 포괄적인 경력인정 ③ 급여 인상 ④ 교육연수 등 자기개발 기회 제공 ⑤ 업무강도 완화

문21)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아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문22번 문항으로)

(☞문21-1번 문항으로)

문21-1) 이를 위해 어떤 영역의 제도 마련(혹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급여 ② 다양한 교육기회 ③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통합적인 인력 풀 제도 운영

(☞문21-2번 문항으로)

(☞문22번 문항으로)

문21-2) 급여 제도는 어떻게 개선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기본급 인상 ② 수당 인상 ③ 수당 항목 다양화 ④ 호봉제 도입 ⑤ 성과연봉제 도입

문22)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직업 안정성 확보를 위해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기술해주세요

[제언]

D. 프로그램

문23) 프로그램 제공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 | |
|---------------------|--------------------------|
| ① 재정적 어려움 | ② 전문성 부족 |
| ③ 담당자의 과도한 업무 | ④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지침 부족 |
| ⑤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 부족 | ⑥ 공교육 기관과의 프로그램 중복 |
| ⑦ 교육자료 부족 | ⑧ 센터 내의 프로그램 진행·체험 공간 부족 |
| ⑨ 이동 수단 부족 | ⑩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연계 자원 부족 |
| ⑪ 학부모의 인식차이 및 협조 부족 | ⑫ 아동의 관심 및 의욕 부족 |
| ⑬ 센터에 대한 인식 부족 및 편견 | ⑭ 장애 아동 보호 및 관리 ⑮ 기타() |

문24)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정부: 1순위() 2순위() / 서울시: 1순위() 2순위() / 자치구: 1순위() 2순위()

- | | |
|-----------------|---------------------------|
| ① 예산지원 | ② 표준 운영매뉴얼 개발·보급 |
| ③ 운영지침과 평가기준 일치 | ④ 종사자 연수 및 훈련 강화 |
| ⑤ 우수 사례발굴과 정보공유 | ⑥ 지역아동센터 인식 개선 노력 ⑦ 기타() |

문25)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얼마나 필요한지 표시해주시시오

	전혀 필요 하지 않음	필요 하지 않음	보 통 임	필 요 함	매 우 필 요 함
① 현실성 있는 재정확보 및 지원					
② 외부 인적자원 확보 및 활용					
③ 중앙정부의 매뉴얼화된 지침 필요					
④ 자치구의 재량적인 지원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가능성					
⑤ 공교육 기관과의 프로그램 중복 해소(정보 공유)					
⑥ 센터 간 우수 프로그램 공유					
⑦ 센터 간 연합활동의 활성화					
⑧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종사자의 역량강화					
⑨ 지역사회 인적·물적 연계자원 확대를 위한 체계구축					
⑩ 센터 운영지침과 평가기준의 일관성 확보					
⑪ 센터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편견 해소					
⑫ 장애아동 전담센터 설치·운영					
⑬ 기타()					

※ 26번부터 29번 문항은 지역사회 연계활동과 관련된 질문 항목입니다

문26)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연계활동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문27)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수행된 지역사회 연계 활동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지속적이지 않음	지속적이지 않음	보통임	지속적임	매우 지속적임
① 홍보					
② 인적연계(자원봉사자, 인적결연 후원, 후원자관리 등)					
③ 학교 외의 기관연계(지역조사와 탐방, 전문가연계, 복지단체 연계 등)					
④ 학교연계					

문28)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정부: 1순위() 2순위() / 서울시: 1순위() 2순위() / 자치구: 1순위() 2순위()

- ①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운영지침 제시
 ②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허브기관(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③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공동사업 개발 및 지원
 ④ 지역아동센터의 관심 증대와 인식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
 ⑤ 지역아동센터 지원(후원)기관에 대한 혜택 증대
 ⑥ 기타()

문29)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및 내실화 방안 마련을 위해 제안하실 내용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시시오

[제언]

****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휴대폰 번호 : _____ - _____ - _____

부록 2 2017년 서울시 자치구 세부사업 현황

시군구	사업명	집행체계	
		수령자	지급방식
서울시 (본청)	센터 행사비 지원	자치구	반기별
	종사자처우개선비 지원	자치구	분기별
	센터 운영비 보조	자치구	분기별
	공립형센터 기본운영비 50% 추가지원	자치구	분기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자치구	연간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센터	분기별
	지역아동센터 급식인력인건비	센터	분기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종사자	매월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센터	매월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현장체험 지원	센터	연간
용산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센터	매월
성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센터	매월
광진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종사자	매월
	지역아동센터 기타운영비	센터	매월
	지역아동센터 행사, 캠프비 지원	센터	반기별
동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종사자	매월
	지역아동센터 교재교구비	센터	반기별
중랑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종사자	매월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센터	연간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센터	연간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영어프로그램 '잉어뽕'	센터	연간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센터	매월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센터	매월
도봉구	지역아동센터 교재교구비 지원	센터	연간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원	센터	연간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비 지원	종사자	매월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	센터	연간
	지역아동센터 교사 연수	센터	연간
	지역아동센터 체육한마당	센터	연간

시군구	사업명	집행체계	
		수령자	지급방식
노원구	구립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센터	매월
	민간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센터	매월
	기능보강사업비	센터	연간
	독서돌봄교사 인건비 지원	센터	매월
은평구	신나는 애프터 사업	센터	연간
	종사자 처우수당 지급	종사자	매월
서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수당	종사자	매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구비) 지원	센터	매월
마포구	지역아동센터 위문금 지급	센터	반기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종사자	매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센터	매월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종사자	매월
	지역아동센터 교재교구비 지원	센터	연간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급식비 지원	센터	매월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 지원 -주민참여예산사업	센터	연간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종사자	매월
	지역아동센터 합창단 지원	센터	분기별
구로구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센터	매월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종사자	매월
	사회복지사업보조	센터	반기별
	구로혁신교육지구 온마을 따듯한 돌봄 학교	센터	분기별
금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보조금 지원	센터	분기별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	센터	반기별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구 운영비	센터	연간
동작구	부족교사인건비 및 프로그램비 운영비 지원	센터	매월
	시간연장 운영비 지원	센터	매월
	센터 연합체육대회 운영비	센터	연간
관악구	종사자 처우개선비	종사자	매월
	구비분 추가운영비	센터	매월
	토요운영비	센터	분기별
	종사자 힐링캠프 지원	센터	연간
	버스임차비	센터	연간

시군구	사업명	집행체계	
		수령자	지급방식
서초구	지역아동센터 급식조리사비	종사자	매월
	지역아동센터 복지개발비	종사자	매월
강남구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센터	매월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센터	매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종사자	매월
	지역아동센터 문예행사비	센터	반기별
강동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종사자	매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센터	분기별
	지역아동센터 토요일운영비	센터	분기별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센터	반기별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센터	매월

부록 3 2017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¹⁰⁾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		2,317	1,959	1,728	1,556	1,548	1,523
2		2,367	2,003	1,765	1,577	1,558	1,533
3		2,419	2,057	1,818	1,626	1,584	1,543
4		2,471	2,108	1,856	1,662	1,633	1,553
5		2,517	2,157	1,907	1,711	1,677	1,563
6		2,639	2,268	2,020	1,825	1,782	1,665
7		2,707	2,338	2,092	1,890	1,849	1,721
8		2,782	2,410	2,151	1,948	1,916	1,783
9		2,848	2,483	2,222	2,018	1,987	1,847
10		2,926	2,555	2,283	2,076	2,045	1,923
11		2,997	2,624	2,362	2,153	2,115	1,982
12		3,044	2,663	2,392	2,186	2,155	2,024
13		3,082	2,700	2,438	2,229	2,194	2,057
14		3,128	2,748	2,475	2,264	2,232	2,103
15		3,169	2,787	2,515	2,303	2,274	2,139
16	3,437	3,211	2,825	2,554	2,345	2,314	2,181
17	3,475	3,250	2,868	2,593	2,382	2,348	2,222
18	3,514	3,296	2,908	2,633	2,418	2,387	2,264
19	3,561	3,334	2,954	2,676	2,461	2,429	2,303
20	3,600	3,379	2,991	2,715	2,500	2,470	2,341
21	3,644	3,417	3,035	2,757	2,540	2,511	2,384
22	3,689	3,463	3,079	2,799	2,583	2,552	2,427
23	3,737	3,505	3,123	2,838	2,622	2,592	2,469
24	3,776	3,552	3,164	2,881	2,665	2,635	2,515
25	3,822	3,600	3,211	2,915	2,701	2,673	2,554
26	3,866	3,645	3,255	2,961	2,742	2,717	2,600
27	3,913	3,691	3,298	3,004	2,784	2,759	2,643
28	3,959	3,736	3,345	3,054	2,840	2,802	2,687
29	4,006	3,782	3,386	3,097	2,882	2,846	2,730
30	4,048	3,827	3,432	3,143	2,923	2,888	2,772
31		3,872	3,476	3,189	2,970	2,931	2,815

10) 2017년도 임금 지급기준 및 처우개선 정책 설명회(2017.01.06.)

부록 4 재정 지원 근거

1)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7.2.4.] [법률 제13999호, 2016.2.3., 타법개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6.]

[제43조에서 이동 <2012.1.26.>]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7.4.18.] [대통령령 제27993호, 2017.4.18., 일부개정]

제54조(비용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9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용료를 받는 아동전용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 비용으로 한정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의 평가 결과 등 해당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실적을 고려하여 보조할 수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3.28.] [법률 제14476호, 2016.12.27., 타법개정]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2) 서울시

아동복지법 [시행 2016.9.23.] [법률 제14085호, 2016.3.22., 일부개정]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2. 보호대상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 보호에 따른 비용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 감독, 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4. 삭제 <2016.3.22.>

4의2. 제26조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5.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필요한 비용

6. 제38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비용

7.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8. 제58조에 따른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비용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7.4.18.] [대통령령 제27993호, 2017.4.18., 일부개정] 제54조(비용 보조) (위 내용과 동일)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8.] [서울특별시조례 제6016호, 2015.10.8., 타법개정]

제7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사업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3.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부록5 ○○구 구립형 지역아동센터

1) 구립지역아동센터 개념

- 구청장이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방과후 돌봄시설로서 건물의 소유 또는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는 시설
- 우선 돌봄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 복지시설

2) 독서돌봄마을학교 개념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등 우선 돌봄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지역아동센터기능을 포함하여, 중위소득층·맞벌이가정의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동네에서 안전하게 성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하고 선택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과후 마을학교

3) ○○구 구립운영 사례: 【구립 ○○○○ 지역아동센터】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기능을 포함하여, 중위소득층·맞벌이가정의 아동에게 동네에서 안전하게 성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과 연계하여 다양하고 선택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과후 마을학교

구분	집 중 돌 봄	독 서 돌 봄
개념	- 지역아동센터(종일 돌봄) - 전인적 발달 지원	- 마을학교(시간선택제 돌봄) - 도서관 프로그램 제공
대상	- 일상생활지도, 학습지원, 급식지원이 필요한 우선돌봄 아동	- 일상생활지도 및 학습지도가 되지만, 방과후 단시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아동
운영 시간	- 학기중: 월~금요일 13:00~19:00 - 방학중: 월~금요일 10:00~17:00 ※ 여건에 따라 토요일 운영 실시	- 학기중 : 화~금요일 14:00~19:00 - 방학중 : 화~금요일 13:00~18:00
이용료	무료(우선순위 대상자)	월 20,000원

구분	집 중 돌 봄	독 서 돌 봄
우선 순위	- 전국 평균소득가구 100%이하 가구 중,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	- 맞벌이가정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 (소득기준 없음)
	※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	
정(현)원	29명(20명)	20명(20명)

4) ○○구 구립지역아동센터의 특성

구분	도서관결합형 (유형1)	통합돌봄형 (유형2)	지역사회연계형 (유형3)
설치 현황	- 동 작은도서관 결합형 •○○1동 주민센터 •○○34동 주민센터	- 복지관 방과후 교실 결합형 •○○ 종합사회복지관 •○○ 종합사회복지관 •○○1 종합사회복지관	- 지역커뮤니티센터 결합형 •○○○○, ○○○○○ •○○○○○, ○○○○ •○○○, ○○○○○의 ○
운영 내용	- 돌봄서비스 - 작은 도서관 기능 및 역할 •○○1동: 도서상호대차 •○○34동: 도서대출	- 돌봄서비스 - 다양한 프로그램 - 도서대출 기능 없음	- 돌봄서비스 - 도서대출 - 북카페/판매/소모임 - 교육/ 공연/행사
정원	- 집중돌봄: 20명 - 독서돌봄: 20명	- 집중돌봄: 30~40명 - 독서돌봄: 20~40명	- 집중돌봄: 20~40명 - 독서돌봄: 20~40명 - 자율독서: 제한 없음
실무 인력	- 집중돌봄교사: 2인 - 독서돌봄교사: 1인	- 집중돌봄교사: 3인 - 독서돌봄교사: 1인	- 집중돌봄교사: 2~3인 - 독서돌봄교사: 1인 - 사서: 1~2인
재 원	국 시비	- 지역아동센터 운영 보조금	- 지역아동센터 운영 보조금
	구비	- 구립지역아동센터 운영비 - 독서돌봄교사 인건비	- 구립지역아동센터 운영비 - 독서돌봄교사 인건비
규모	99㎡(30평)~132㎡(40평)	133㎡(41평)~231㎡(70평)	232㎡(71평) 이상

5) ○○구 구립운영 현황

시설명	운영 모델	소재지	운영 방법	집중 돌봄		독서 돌봄		비고
				종사 자	정원	종사 자	정원	
구립○○1동	유형1	○○1동	구립	2	19	1	26	※ 독서돌봄교 사 인건비 월 1,050천원 ※ 독서돌봄 이 용료 월 2만 원 이내
구립○○3,4동		○○3,4동	구립	3	35	1	25	
구립○○	유형2	○○2동	구립	3	35	1	25	
구립○○		○○1동	구립	3	32	1	20	
구립○○1		○○3동	구립	3	35	0	0	
구립○○○○	유형3	○○8동	구립	2	29	1	28	
구립○○○○○○		○○2동	구립	2	19	0	0	
구립○○○○○		○○1동	구립	3	35	1	17	
구립○○○		○○1동	구립	3	40	0	0	
구립○○○○○○의○		○○3동	구립	2	29	0	0	
공립○○○		○○본동	공립	4	35	1 (겸직)	16	

부록 6 지역아동센터 회의자료 및 회의록 예시

1)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회의자료(예시)

[2017년 제○차 운영위원회]

- 일 시 : 2017년 ○월 ○(요일) 오전 10:00
- 장 소 : ○○지역아동센터 회의실
- 운영위원 :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 사회복지전문가)
○○○(○○○본부장 / 후원자 대표)
○○○(○○○지역아동센터 학부모 대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 배 석 : ○○○(○○○지역아동센터 팀장)
- 인사 및 운영위원회 위촉
○○○(○○○지역아동센터 ○○○ 조모/학부모 대표)
- 전회의록 낭독
- 2016년 보고
 - ▶ 2016년 사업보고
 - ▶ 2016년 결산
- 2017년 계획
 - ▶ 2017년 사업계획
 - ▶ 2017년 예산
- 안전심의
 - ▶ 운영위원회 규정 수정 <첨부자료1 참조>
- 기타토의
 - ▶ 차기회의 일정 등
- 첨부자료
 - 1. 2017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 중 운영위원회
 - 2.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규정
 - 3. 2017년 ○○지역아동센터 사업계획
 - 4. ○○지역아동센터 중장기 사업계획서

※ 위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는 예시이므로 지역아동센터 실정에 맞게 변경 사용 가능

2)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록(예시)

[2017년 제O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17년 ○월 ○○일(요일) 오전10시

장소 : ○○지역아동센터

참석 : ○○○(사회복지전문가), ○○○ 위원(후원자 대표), ○○○ 위원(학부모 대표),
○○○ 위원(○○○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배석 : ○○○(○○○지역아동센터 팀장)

회의 결과 :

1. ○○○ 위원장의 인사로 회의를 시작하다.
1. 회의에 앞서 ○○○ 위원의 자격상실(○○○ 아동 중단/운영규정 제6조의 2)로 인해 궐위된 학부모 대표 운영위원회 ○○○ 위원(○○○·○○○ 조모)을 위촉하니 박수로 축하하다.
1. 위원장이 순서에 따라 진행하니 전회록을 문서로 받기로 하다.
1. 2016년 사업 및 결산 보고는 2016년 4차 운영위원회의 기보고 된 내용이므로 참고 자료로 받기로 하다.
1.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2016년 대비 2017년 예산감액(▼360만원)은 이용아동 수 감소로 인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대로 받기로 하다.
1. 안전심의에 있어 성남동지역 운영위원의 참여를 위해 규정 제2조 6의 해당지역담당 공무원을 ○○○동 지역인사로 수정하고 7의 해당지역아동센터 교사대표를 지역아동센터 교사로 수정하여 의결하다.
1. 운영위원회 추천에 있어 지역주민으로는○○○사무기기 대표 ○○○을, 교사로는 ○○○ 사회복지사를 추천하니 지역주민의 운영위원 참여를 전제(7명 구성기준)로 교사 운영위원 참여를 의결하다.
1. 기타토의에 있어 ○○○주거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이용아동 감소에 대한 상황을 ○○○시설장이 보고하니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하다.
1. 차기회의 일정은 ○월 ○○일(수) 오전10시 ○○○지역아동센터에서 모이기로 하고 운영위원회 마치고.

2017년 ○월 ○○일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장 ○○○ (인)

부운영위원장 ○○○ (인)

운영위원 ○○○ (인)

운영위원 ○○○ (인)

※ 위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는 예시이므로 지역아동센터 실정에 맞게 변경 사용 가능

2017 정책연구-03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및 내실화 방안 마련 연구

발행인 강경희
연구자 송이은
발행일 2017년 7월
인쇄처 (주)행복드림
발행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IS B N 979-11-87956-28-0
주 소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전 화 02-810-5101(대)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함께해요 청림실천, 신뢰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www.seoulwomen.or.kr

